4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Ⅰ. 조사 개요 ····· 1

1. 조사 배경 ····· 1
2. 조사 목적 ····· 1
3. 기대 효과 ····· 2
4. 조사 개요 ····· 3
5. 조사 진행 일정 ····· 4

Ⅱ. 조사설계 ····· 6

1. 표본 설계 ····· 6
2. 표본 구성 ····· 14
3. 가중치 산출 ····· 22
4.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 29

Ⅲ. 조사내용 ····· 34

1. 조사표 구조 ····· 34
2. 가구용 조사표 내용 ····· 35
3. 가구원용 조사표 내용 ····· 38
4. 4차년도 추가 내용 ····· 41

Ⅳ. 실사 진행 과정 ····· 45

1. 실사 준비 과정 ····· 45
2. 실사 품질 제고 방안 ····· 49
3. 실사 진행 과정 ····· 50

Ⅴ. 재정패널 표본 특성 ····· 55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 55
2. 표본 가구의 구성 ····· 61
3. 표본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 68
4.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73

Ⅵ. 가구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 7
1. 주택 현황 ····· 77
2. 자동차 보유 현황 ····· 89
3. 가구 소득 현황 ····· 94
4. 가계 지출 현황 ····· 100
5.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 105
6. 복지현황 ····· 111
7. 기타 환급금 및 보조금 ····· 115
8. 가구 자산 및 부채 ····· 119

Ⅶ. 가구원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 12
1. 조사시점 5월 기준 경제활동상태 ····· 132
2. 연간 소득(개인) ····· 142
3. 연간 연금보험 지출 ····· 153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157
5. 소득 공제 내역 ····· 162
6.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 168

Ⅷ. 소득근거자료 제출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 14
1. 인구학적 특성 ····· 174

2. 소득 및 경제상태 특성 ····· 178
3. 소득분위별 소득근거자료 제출 특성 ····· 183

Ⅸ. 주요 항목 동태적 이동성 분석 ····· 185
1. 종사상지위 ····· 185
2. 거주 주택 ····· 189
3. 정부지원현금 ····· 193
4. 소득 및 자산 이동성 분석 ····· 195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대표성을 띤 통계의 생산과 분석은 정책형성과 학문적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여 왔다. 특히 패널조사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횡단면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등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가 존재하며 이러한 패널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형성과 평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시 정책효과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즉,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불합리성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2. 조사 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기획된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조세

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조세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기대효과

재정패널 조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면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기준년도 분석에서 패널 데이터로 인해 시간흐름에 따른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조세와 재정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관련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조세, 재정관련 통계의 경우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주기가 단기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국가통계에 준하는 패널 데이터가 종단면적으로 다양하게 생산됨으로써 조세, 재정관련 통계 인프라가 재편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연구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조세, 재정분야의 경우 연구의 특성상 상당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필수적인데 재정패널을 통해 데이터의 부재로 그동안 연구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학문과 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4.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4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1차년도에 구축된 전국(제주도 제외) 5,014가구와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 추출한 620 가구[1]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표본가구의 가구원이 결혼, 취업 등의 사유로 분가하였을 경우 분가한 가구원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표의 구성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개인) 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 조사표는 가구의 현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 소득이나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차년도 조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이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부가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더라도 20~39세의 기혼 여성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구원 설문지를 조사했다.

다. 실사 수행기관

2011년 2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외부 조사기관을 선정[2]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었다. 공모 결과 마케팅·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research international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1) 만약 1차년도 표본 가구가 거절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차년도에 사용한 표본 추출틀을 활용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표본 추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주로 이용했으며, 2005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 리스트를 추가적인 표집틀로 활용했다.

2) 1차년도 선정시기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2차년도 선정시기는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 사이 3차년도 선정시기는 2010년 2월부터 4월 사이 이다.

라. 조사기간 및 조사 기준시점

4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2011년 5월~8월 사이에 진행됐다. 조사표에서 측정하는 기준 시점은 2010년이며,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을 측정하는 질문은 2010년 1월~12월간의 1년을 기준으로 조사했고, 저량(stock)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단, 가구원 조사표의 경제활동 상태는 조사 시작 시점인 201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 조사방법

재정패널 조사는 조사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응답자가 심야에 귀가해 만나기가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조사 방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조사 도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5. 조사 진행 일정

4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의 현장 실사는 5월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됐다. 당초 8월 초까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철이 겹치면서 일부 패널과의 약속이 연기되고,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재컨택을 지속하면서 계획보다 지연되었다.

<표 Ⅰ-1> 재정패널 조사 진행 일정

항목	진행 일정	
	3차년도	4차년도
조사 용역 수행 기관 선정	3월	3월
조사 설계 및 협의	3월~4월	3월~4월
면접원 교육	4월 26일~4월 27일	4월 27일~4월 29일
현장 실사 진행	**5월~8월**	**5월~8월**
검증 및 통계 처리	7월~9월	7월~9월
중간보고회 개최	9월 3일	8월 9일
1차 데이터 제출	10월 8일	10월 7일
최종 실사보고서 제출	10월 29일	11월 4일
최종보고회 개최	12월 2일~12월 3일	12월 14일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27일	12월 29일
2차 데이터 제출	12월 27일	12월 29일
자료 신뢰도 보고서 제출	11년 1월	12년 1월 예정

Ⅱ. 조사 설계

1. 표본설계

가. 표본크기

재정패널 조사의 목표 유효표본 크기는 약 5,000가구 이다. 표본수를 늘리면 표본오차는 감소하나, 일정한 표본크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차의 감소폭이 현저히 줄어든다. 대신 표본수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경우 무리한 조사 진행 등으로 인해 실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비표본오차는 응답자의 거짓 응답, 무응답이나 면접원의 선택편향, 지침 위반, 불성실한 태도 등 실사 진행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조사 목적과 여건을 감안해 적절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패널 조사는 5000 가구 표본이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그 이상으로 표본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5000가구 표본을 충실히 조사해서 비표본오차를 줄이는 것이 조사 품질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패널 조사의 전체 표본 크기는 1차년도에 구축된 5,014개 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한 620개 가구의 합인 5,634가구이다. 여기서 추가표본의 존재는 다른 패널에서 찾아 보기 힘든 재정패널조사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재정패널 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횡단적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또한,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세 납부 유형별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재정패널 조사는 2차년도 조사에서도 일정한 표본크기(5,000가구) 이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표본의 탈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1차적 과제였지만, 조사가 불가능한 표본에 대해서는 추가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매년 추가표본을 추출한다면, 가중치 보정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종단적 분석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차년도 조사부터는 추가표본을 추출하지 않

고 기존에 구축된 표본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나. 추가표본 개요

패널조사 표본의 주요 특징은 추적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횡단면 조사에서 발생하는 개체무응답의 경우 주로 가중치의 보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나, 종단면 조사에서는 탈락 가구가 체계적으로 발생할 경우 모수추정에 있어 편의(bias)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에서는 탈락한 최초 추출 표본가구를 대신하여 횡단면 분석시 일정 크기의 유효표본수를 맞추기 위하여 2차년도 조사에서 추가표본을 추출하였다.

탈락한 가구를 대신하여 2차년도에 추가 추출한 가구가 탈락한 가구를 완벽히 대표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3]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차년도 조사완료 후 외부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원표본의 기준을 1차년도 조사에서 추출된 표본①과 2차년도 조사의 추가표본을 포함한 표본②로 나누어 2개의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즉, 3개년도(2008년~201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개년도(2009년~2010년) 종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선택에 맡기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패널조사 자료에 각기 다른 종단면 가중치가 존재할 경우,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탈락했던 원가구가 다시 조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패널 표본 내에 원가구와 이를 대신한 추가표본가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지만, 이미 추가된 표본가구에 가중치가 계산되어 있으므로 원가구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4차년도 조사완료 후 외부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이전과 다른 방식의 추가표본에 대한 처리를 통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용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 기존의 '대체표본'이라는 표현에서 '추가표본'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의 새로운 원표본의 정의는 기존 1차년도에서 추출된 가

3) 송헌재(2012), 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특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72호)97-133

구 뿐만이 아니라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된 표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우선 1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에서는 620개 추가표본가구를 무응답 가구로 처리하고 최초표본 5,014개 가구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차년도 이후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기준으로 계속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전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에 다음 연도에서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응답 보정과 레이킹 보정이 이루어져 산출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의 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 II-1> 재정패널조사 표본 재정의

구분	용어 정의	
	3차년도 이전	4차년도 이후
1차년도 추출표본: 5014가구	원표본	최초표본
2차년도 추가 추출표본: 620가구	대체표본	추가표본
원표본	원표본 (5014가구)	최초표본 + 추가표본 (5634가구)

다. 모집단

재정패널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가구의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참고로 재정패널 조사의 1차년도 최초표본가구와 2차년도 추가표본가구를 추출하기 위한 모집단 자료(sampling frame)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통계청에서 외부 통계작성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90% 자료를 이용했다. 한편, 재정패널 조사의 시작시점(2008년)과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작성 시점(2005년)간에 3년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모집단의 특성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했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2005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단지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추가적인 표집틀로 활용했다.

라. 표본설계 개요

1차년도에 표집된 전국 5,014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로 조사된 620가구, 그리고 표본가구에서 분가한 분가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에 성공한 표본은 4차년도 재정패널조사의 표본으로 재표집된다.

1) 1차년도 표본설계

1차년도 재정패널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축아파트 입주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을 설계했다.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는데, 이 때 조사구는 전수조사구 90%를 활용했다. 그리고 추출된 조사구에서의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는 2005년 조사 당시에 없었던 지역으로 센서스 조사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05년 11월 이후 입주아파트를 우선 60~80가구 정도씩 묶어 일종의 가상적인 조사구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가구추출률과 비슷한 추출률이 유지되도록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추출했다.

또한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을 감안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실제 분포보다 많이 표집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을 선정했고,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과대표집(over sampling)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사구에서 추출하는 가구수는 5개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신축아파트 조사구와 과대표집 조사구도 역시 한 개의 조사구에서 다섯 가구를 추출했다. 그러므로 가구 표본 5,010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 조사구 수는 1,002개로 설계했다.

이러한 표본설계에 입각해 1차년도에 최종 표집된 표본의 구성표는 다음 표와 같았다. 총 1,002개의 조사구에서 5,014가구가 표집되었다.

<표 II-2> 1차년도 조사 추출표본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신축아파트조사구		합계
지역특성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전국	2,108	1,797	620	174	275	40	5,014
서울	556	429			90		1075
부산	225	130	10		20		385
대구	150	95	10	10	15	5	285
인천	116	105	10		15		246
광주	95	80			10		185
대전	95	76			10		181
울산	55	55	10	10	10		140
경기	326	371	75	44	45	15	876
강원	60	60	35	10	10		175
충북	55	61	35	10	5	5	171
충남	50	50	70	20	10	5	205
전북	85	75	75	10	10		255
전남	65	55	115	10	10		255
경북	80	70	110	20	5	5	290
경남	95	85	65	30	10	5	290

2) 2차년도 추가표본 추출 과정

원 표본가구가 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몇 차례 방문을 해도 가구원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는 개체 무응답(Unit non-response)이라 볼 수 있는데, 개체무응답의 빈도가 높을 경우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패널조사에서는 표본의 탈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조사거절 가구나 접촉불가능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방문시간과 요일을 조정하여 4회 이상 재방문함으로써 조사 불능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조사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한 표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조사 차수(wave)별 표본수

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물론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본의 탈락율은 2차 조사에서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조사부터는 안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패널조사는 종단적 분석이 중요한 연구목적이므로 기존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에만 집중해 왔으며, 원 표본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표본의 대체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패널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세 납부 유형별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2차년도 탈락 표본에 대해서는 추가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 때 표본의 추가 방식은 확률추출법에 의거한다. 탈락한 표본(n)이 속해 있던 조사구 내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 n-1 순서로 체계적인 대체를 실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1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대체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했다.

<표 II-3> 2차년도 조사 추가추출표본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신축아파트조사구		합계
지역특성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전국	294	216	37	19	48	6	620
서울	102	78			25		205
부산	28	13			3		44
대구	15	7	2	1	4		29
인천	18	18	2		2		40
광주	8	6					14
대전	15	5					20
울산	7	5		1			13
경기	56	42	8	7	9	3	125
강원	5	2	2	1			10
충북	9	8	7	2	1	2	29
충남	3	5	6		2		16
전북	7	6	3		2		18
전남	3	3	1				7
경북	9	8	3	4			24
경남	9	10	3	3		1	26

3) 재정패널조사 원 표본 구성

재정패널조사는 4차년도 조사완료 후 가중치 부여 방법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된 표본을 원표본으로 포함하여 새롭게 구성하기로 결정 하였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추출된 최초표본과 2차년도에 추가 추출된 추가표본을 합하여 원표본으로 재정의하였다.

<표 II-4> 재정패널조사 원 표본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신축아파트조사구		합계
지역특성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전국	2,402	2,013	657	193	323	46	5,634
서울	658	507			115		1,280
부산	253	143	10		23		429
대구	165	102	12	11	19	5	314
인천	134	123	12		17		286
광주	103	86			10		199
대전	110	81			10		201
울산	62	60	10	11	10		153
경기	382	413	83	51	54	18	1,001
강원	65	62	37	11	10		185
충북	64	69	42	12	6	7	200
충남	53	55	76	20	12	5	221
전북	92	81	78	10	12		273
전남	68	58	116	10	10		262
경북	89	78	113	24	5	5	314
경남	104	95	68	33	10	6	316

4) 분가가구 추적 조사

1차, 2차년도 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가구원이 결혼이나 경제적 이유로 3차년도 조사시점에 분가해 나갔을 경우에는 분가한 가구원을 찾아서 조사를 진행했다. 분가하는 가구의 대부분은 결혼, 직장 등의 사유로 분가하는 젊은 가구원이 많으며 이들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가 가구를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 패널가구의 노쇠화가 진행되고 신규 생성가구는 조사에서 누락되므로 전체 모집단 특성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다만, 군입대나 이민, 가출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구원은 신규 가구를 생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적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대졸자 이하의 자녀가 학업목적으로 분가했을 경우에는 원 가구에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가구원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표본 구성

가. 전체 표본가구 구성

<표 II-5> 1~4차년도 표본가구 구성 개요

구분	원 표본가구	분가가구 추적	6월 이전 분가가구	7월 이후 분가가구*	합계
4차	4,615	134	29	65	4,843
3차	4,747	67	16	54	4,884
2차	5,016	-	23	57	5,096
1차	5,014	-	-	-	5,014

주1: 조사년도의 7월 이후 분가가구는 그 다음 연도 조사시점부터 정식 유효표본으로 인정됨
2: 2차년도부터 추가표본 포함된 표본수임

4차년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4,843가구가 표집되었다. 4차년도 최종 표본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II-6> 4차년도 최종 표본가구 구성

시도 (4차년도 거주지 기준)	원 표본가구	2, 3차년도 분가가구 추적	2010년 6월 이전 분가가구	2010년 7월 이후 분가가구*	합계
전국	4,615	134	29	65	4,843
서울	915	19	7	13	954
부산	357	12	2	4	375
대구	272	8	4	3	287
인천	213	7	0	1	221
광주	170	12	1	2	185

시도 (4차년도 거주지 기준)	원 표본가구	2, 3차년도 분가가구 추적	2010년 6월 이전 분가가구	2010년 7월 이후 분가가구*	합계
대전	196	0	2	0	198
울산	122	5	2	4	133
경기	830	18	2	9	859
강원	158	3	2	2	165
충북	162	2	1	0	165
충남	184	4	2	2	192
전북	240	13	0	12	265
전남	244	11	0	3	258
경북	266	6	2	4	278
경남	282	14	2	6	304
제주	4	0	0	0	4

주1: 2010년 7월 이후 분가가구는 2012년 조사 시점부터 정식 유효표본으로 인정됨

나. 원 표본가구 유지율

1차년도에 구축된 최초표본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 추출된 가구로 구성된 원 패널가구 5,634가구 중 4차년도에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유지된 가구는 모두 4,615가구로 패널 유지율은 81.9% 이다. 소득과 자산, 세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점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할당된 표본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비교적 양호한 유지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패널 유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97.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원표본 탈락율이 지방과 도 지역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 원 표본가구 유지율 A : 분모에 사망과 이민 포함

시도	지역별 원 표본 가구수	4차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원 표본가구 유지율
전국	5,634	4,615	81.9%
서울	1,280	915	71.5%
부산	429	357	83.2%
대구	314	272	86.6%
인천	286	214	74.8%
광주	199	170	85.4%
대전	201	196	97.5%
울산	153	122	79.7%
경기	1,001	829	82.8%
강원	185	158	85.4%
충북	200	162	81.0%
충남	221	184	83.3%
전북	273	240	87.9%
전남	262	244	93.1%
경북	314	267	85.0%
경남	316	281	88.9%

주1: 원표본 유지율은 1차년도 추출표본과 2차년도 추가추출표본의 조사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역별 성공 표본수는 4차년도 실제 거주지역과 차이가 있음

재정패널 조사의 4차년도 패널유지율(A) 81.9%는 국내외 유수 패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패널조사로 불리는 노동패널 4차년도 조사의 유지율 77.3%에 비해 약 4.6%p 정도 높은 유지율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사회조사 응답율이 저하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표 II-8>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 패널유지율 비교

단위(%)	재정패널	노동패널	미국PSID	독일GSEP	영국BHPS
2차년도	89.0(2009)	87.6(1999)	88.5(1969)	88(1985)	87.7(1991)
3차년도	84.3(2010)	80.9(2000)	86.3(1970)	84(1986)	81.5(1992)
4차년도	81.9(2011)	77.3(2001)	82(1972)	85(1987)	80(1993)

주1: 괄호 안은 조사가 진행된 연도(타 조사 유지율은 노동패널 4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인용)
2: PSID : Panel Study Income Dynamics
3: GSEP : German Socio-Economic Panel
4: BHPS :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널유지율을 계산할 때에는 '사망'과 '해외이민(해외거주)'과 같은 케이스는 조사 실패가 아니라 대상 가구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모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정확한 유지율 산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4]으로 패널유지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표 II-9> 패널유지율 계산방법

구분	계산법	실제 계산에 적용되는 분모수
패널유지율(A) 기존 유지율 계산법	표집된 원가구 전체를 분모로 함	5,634
패널유지율(B) 통상적인 유지율 계산법	원가구 중 소멸가구(이민과 사망)를 분모에서 제외	5,585

1차년도 조사 이후 4년간 해외이민(해외 장기거주)으로 파악된 가구가 23가구, 그리고 가구원 전원이 사망한 가구가 26가구로 가구 자체가 소멸된 사례수는 49건이다. 따라서 원 표본가구 5,634가구 중 패널유지율(B) 계산을 위한 분모는 5,585개 가구이다. 이를 기준으로 패널유지율을 계산해보면 전국 기준으로 82.6%로 집계된다.

4) 재정패널조사 지침에 따라 조사가 불가능한 사망가구 및 이민가구 등을 제외한 유효패널가구의 조사 성공율을 의미하며, 타패널 조사에서는 유효표본성공률, 유효패널유지율 등으로 정의한다.

<표 II-10> 원 표본가구 유지율 B : 분모에서 사망과 이민 제외

시도	지역별 원 표본 가구수	4차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원 표본가구 유지율
전국	5,585	4,615	82.6%
서울	1267	948	74.8%
부산	423	353	83.5%
대구	311	265	85.2%
인천	283	219	77.4%
광주	197	174	88.3%
대전	201	176	87.6%
울산	151	126	83.4%
경기	997	794	79.6%
강원	184	162	88.0
충북	196	169	86.2%
충남	219	194	88.6%
전북	271	239	88.2%
전남	260	241	92.7%
경북	311	273	87.8%
경남	314	282	89.8%

주1: 원표본 유지율은 1차년도 추출표본과 2차년도 추가추출표본의 조사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역별 성공 표본수는 4차년도 실제 거주지역과 차이가 있음

다. 분가 표본가구 유지율

1차년도 조사에서는 표집되지 않았으나 2차년도 조사 이후 분가에 의해 조사대상으로 표집된 분가가구의 유지율은 4차년도 기준으로 91.2%로 나타났다.

<표 II-11> 분가가구 유지율

시도	분가가구		
	추적해야 하는 분가가구	4차년도 조사성공	유지율A
전국	147	134	91.2%
서울	22	19	86.4%
부산	12	12	100.0%

대구	10	8	80.0%
인천	8	7	87.5%
광주	13	12	92.3%
대전	-	-	-
울산	5	5	100.0%
경기	19	18	94.7%
강원	3	3	100.0%
충북	2	2	100.0%
충남	5	4	80.0%
전북	14	13	92.9%
전남	11	11	100.0%
경북	8	6	75.0%
경남	15	14	93.3%
제주	-	0	-

라. 탈락가구 현황

1) 탈락 사유 구분

추적조사에서 탈락한 가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분하였다.

① 강력거절 : 표본가구가 조사 참여를 완강히 거절한 경우

② 추적실패(주소 불명) : 전화번호 결번 등으로 사전 컨택이 되지 않으며,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이사로 추정되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망/이민/입원 등 : 가구 응답자가 각각의 사유로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 장기 부재, 약속 반복 위반, 비정상적인 응답자 등

2) 원 표본가구 중 탈락·소멸 가구 현황

4차년도 조사 참여를 거부한 970 가구를 사유별로 보면, 강력거절로 인한 탈락이 597가구로 전체의 6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추적실패는 329가구로 33.9%였다. 사망과 이민 등으로 소멸된 가구는 총 49가구로 집계됐다. 1차년도 조사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탈락 및 소멸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시도별 원 표본가구 탈락 및 소멸가구 현황

시도	탈락 가구					소멸가구		
	강력 거절	추적 실패	병원 입원	기타	*소계*	사망	해외 이민	*소계*
전국	597	329	13	31	970	23	26	49
서울	195	109	3	12	319	1	12	13
부산	41	22	3	4	70	3	3	6
대구	37	9			46	1	2	3
인천	38	23	1	2	64	2	1	3
광주	17	6			23	2		2
대전	12	13			25			
울산	14	11			25		2	2
경기	116	78	3	6	203	2	2	4
강원	12	8		2	22	1		1
충북	18	7	1	1	27	1	3	4
충남	16	7		2	25	2		2
전북	23	9			32	2		2
전남	14	4		1	19	2		2
경북	22	15	1		38	3		3
경남	22	8	1	1	32	1	1	2

3) 분가가구 중 탈락·소멸가구 현황

분가가구 탈락 사유 역시 '강력 거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분가가구 탈락 사유 및 소멸가구 유형

시도	탈락 가구					소멸가구		
	강력 거절	추적 실패	병원 입원	기타	*소계*	사망	해외 이민	*소계*
분가 가구	6	3		4	13	1	2	3

마. 신규 분가가구 현황

3차년도 조사시점까지 분가가구가 총 147가구로 조사되었으며 4차년도 조사 결과 총 94개의 분가가구가 신규로 조사되었다. 이 중 2010년 6월 이전에 분가한 가구는 이미 분가 가구원이 새로운 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의 지난해 경제상황을 모두 조사하였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조사표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러한 가구는 29가구이며, 이 가구는 4차년도 재정패널 조사결과 분석 과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10년 7월 1일 이후 분가하여 형성된 가구는 분가 가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원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원의 경제상황은 원표본가구에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5차년도부터는 이 분가가구 또한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가구원으로 구성되므로, 차후년도 조사를 위해 분가가구를 찾아가 가구원 현황만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조사된 가구는 65가구이며, 이 가구는 5차년도 조사부터 정식 표본가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4차년도 분석과정에서 이들 가구의 데이터는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에서 새로 표집된 분가가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직장으로 인한 분가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혼인(30건), 학업(5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4> 분가 유형별 분가 성공 가구수

구분	직장	혼인	학업	기타	합계
전체	37	30	5	22	94
서울	11	4		5	20
부산	2	4			6
대구	2	1	1	3	7
인천				1	1
광주		2		1	3
대전		2			2
울산	1	4		1	6
경기	4	2	1	4	11
강원	3			1	4
충북			1		1
충남	2	1		1	4
전북	5	3	1	3	12
전남	1	2			3
경북	4	2			6
경남	2	3	1	2	8

3. 가중치 산출

가. 가중치 산출 목적

일반적으로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의 가중치는 ㉠ 설계 가중치,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또는 레이킹(raking ratio)에 의한 조정 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재정패널조사의 가중치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3단계 과정을 통해 작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사 자료의 추정과정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하면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패널조사와 같이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조사(panel survey)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차 웨이브(wave) 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원 패널가구의 가구원이 분가 등을 통해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게 되면, 이에 대한 추적조사 과정을 통해 신규 가구가 패널에 추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연구대상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널조사의 경우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한 표본 및 모집단 변동을 감안한 가중치 보정과정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패널조사에서는 웨이브가 진행되면서 조사 자료가 누적되면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cross-sectional) 분석을 위한 가중치과 함께 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면(longitudinal)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분리해 적용함으로써 패널자료를 활용해 대표성 있는 통계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 1차년도(2008년) 조사 가중치

1차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위해서는 표본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그리고 레이킹 조정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가중치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보정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재정패널의 구축을 위하여 사용된 표본설계 및 모집단 정보를 통해 작성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모수의 불편 추정량(근사 불편 추정량)을 구하는 것이 가중치 산출의 목적이다.

1) 표본설계

표본추출을 위한 표집틀(sampling frame)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와 2006~2008년 신규 아파트 자료를 병합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발생한 가구 모집단의 변화를 표집틀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규 아파트 자료의 구분 변수를 1차 층으로 정의하고 각 층으로부터 독립적인 표본을 추출함으로서 재정패널 표본을 구성하였다.[5)]

각 표집틀로부터 가구 추출을 위해서는 각 표집틀을 층화한 후 각 층내에서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층화 이단계 추출법이 사용되었다. 9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층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 읍면/동부, 일반/아파트가 사용되었으며 층내의 조사구 정렬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조사구내의 가구 연건평의 최빈값을 사용하였다. 신축아파트 자료의 경우, 근접 가구들을 묶어서 크기가 50~100인 일종의 조사구를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조사구의 층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을 사용하였고 정렬변수로는 시군구와 대표평수를 사용하였다.

각 표집틀에서 정의된 층의 조사구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실제로 빈곤지역과 부유지역을 구분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수의 패널을 확보하고자 해당 지역의 할당 조사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추출된 조사구로부터 평균적으로 5가구씩 추출하였다.

2) 표본설계 가중치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

1차년도 최초패널 5,014개 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된 620개 가구를 합하여, 총 5,634개 가구에 표본설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620개 가구는 2차년도에 조사 실

5) p.10. <표 Ⅱ-2> 1차년도 조사 추출표본 구성 참조.

패한 618개 최초패널 가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추가된 가구이다(실패한 가구에서 두 가구가 추가로 조사되어 차이 발생). 따라서 1차년도 가중치 산출에서는 620개 추가가구를 무응답 가구로 처리하고 5,014개 가구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조사된 h번째 층의 i번째 조사구의 j번째 가구의 표본설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위 식에서 N_h는 h층의 모집단 조사구수, n_h는 h층의 표본 조사구수, N_{hi}는 h층 조사구 i의 모집단 가구수, 그리고 n_{hi}는 h층 조사구 i의 표본 가구수를 나타낸다.

1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표본설계 가중치에 응답률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되어 진다. 응답률은 r_{hi}/n_{hi}로 계산되어 지며, r_{hi}는 h번째 층의 i번째 조사구의 응답 가구수이다. 조사된 h번째 층의 i번째 조사구의 j번째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na}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times \left(\frac{r_{hi}}{n_{hi}} \right)^{-1} = \frac{N_h}{n_h} \times \frac{N_{hi}}{r_{hi}}.$$

3) 레이킹(raking) 가중치 보정

산출된 무응답 보정 가구 가중치(w_{hij}^{na})는 다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가구 및 인구 추계 통계를 바탕으로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각 지역별(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가구주의 성(남/여), 연령(39 미만/40~49/50~59/60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4인 이상)이다.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된 가중치는

$$w_{hij}^{rak} = w_{hij}^{na} \exp\left(\underline{x}_{hij}^{'} \underline{\lambda} \right)$$

이다. 여기서 $\underline{x}_{hij}$는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을 지시변수들로 표현한 벡터이며 $\underline{\lambda}$는 $\sum w_{hij}^{rak} x_{hij} = t_x$의 해이며 t_x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각 레이킹 변수들의 추계 값을 나타낸다. 레이킹을 통한 가중치의 보정 결과 2008년 추계 자료

와의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는 관측치가 존재하여 가중치의 최댓값을 9,000으로 제한하였다. 가중치가 9,000을 초과하는 극단 관측치들의 경우 가중치를 9,000으로 조정하고, 레이킹 보정 가중치에서 9,00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벤치마킹범주(지역*가구주 성*가구주 연령*가구원수) 내의 관측치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다. 2차년도(2009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2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2개년도(2008년과 2009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에 2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위한 무응답 보정과 2009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서 계산되어 진다.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위해서는 2009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와 2008년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응답가구의 응답확률을 예측하였다. 2009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2008년에 작성된 각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를 w_{2008}이라 표기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예측 응답확률을 $\hat{p}_{2009}$라 할 때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중치는

$$w_{2009} = w_{2008} \times \hat{p}_{2009}^{-1}$$

로 표현된다. 실제 $\hat{p}_{2009}$의 예측을 위하여 적합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text{가구주성별}\beta_1 + \text{가구원수}\beta_2 + \text{가구주연령}\beta_3 + \text{지역}\beta_4 + \text{가구연간소득총액}\beta_5$$

이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2009년 추계 자료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1차년도에 사용된 레이킹 기법이 시용되었다. 2009년 레이킹을 위해서 지역과 가구주의 성,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2,500으로 제한하였다.

2)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최초가구, 추가가구)와 분가가구(2008년 6월 이전 분가)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09년 추계 자료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각 가구형태별 1단계 가중치 산출을 살펴보면, 먼저 2차년도에 조사된 기존가구(최초가구, 추가가구)의 경우,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패널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1단계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무응답 보정 방법은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는 2009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사용했으며, 2009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9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로는 원패널 가구의 경우 종단면과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2008년 자료가 없는 추가가구는 대응되는 최초패널가구(2차년도 조사실패 가구)의 2008년도 5개 변수(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연간소득총액)를 그대로 사용했다.

분가가구의 경우, 분가사유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원가구의 당해년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의 1/2을 부여하였고 기타 사유의 분가가구 경우, 원가구의 당해년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부여하였다. 또한 분가사유가 결혼인 35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12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를 조사 성공한 23가구에 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가사유가 결혼인 35가구를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내에서 2차년도 무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응답가구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기존가구와 분가가구의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라. 3차년도(2010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3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3개년도(2008년~201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3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가중치 산출에는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를 사용하였다. 3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2차년도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2010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으며, 2010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3개년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300으로 제한하였다.

2)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최초가구, 추가가구), 기존분가(2008년 6월 이전 분가) 그리고 신규분가(2008년 7월 ~

2009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0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기존가구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2010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0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0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다. 기존분가의 경우, 3차년도에 모든 가구가 응답하여 2차년도에 부여한 횡단면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1,700으로 제한하였다.

마. 4차년도(2011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4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4개년도(2008년~2011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4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4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4개년도(2008년~2011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1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

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5,000으로 제한하였다.

2)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최초가구, 추가가구), 기존분가(2009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09년 7월 ~ 2010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1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기존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1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1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1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주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4,000으로 제한하였다.

4.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가. 증빙서류 수집 목적

가구원 조사표에서는 연간 소득, 연금·보험 지출 및 소득,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 그러나 소득공제 내역은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는 것도 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운영했다.

나. 수집 대상 서류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연간 소득내역과 공제내역, 결정세액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본 조사에서는 2010년 소득 공제내역을 조사하므로 2011년 1~2월 경에 근무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 대상이 되었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2가지 서류를 수집하기로 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2011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 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 서류에 포함시켰다.

다. 4차년도 조사 서류 수집 현황

1) 귀속연도별 소득증빙서류 수집현황 개요

소득증빙자료 수집은 재정패널조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실시하는 부분이다. 조사의 목표 수집율은 가구 단위로 하여, 각 가구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여부에 실사의 중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인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개인의 수집율이 연구목적에 더 적합하다. 조사 연도별 소득증빙

서류 수집율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매년 조사에서 해당 귀속년도의 자료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의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과거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수집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대체적으로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의 사례수는 조사차수가 진행될수록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집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의 수집건수에 비해 종합소득신고 가구원의 수집건수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5> 가구원 기준 소득증빙자료 수집 현황

조사년도			해당차수 조사완료 시점 수집 현황				총계
			1차	2차	3차	4차	
최종수집현황	2007 귀속	제출가구원	683	27	2	0	712
		근로	611	25	2	0	638
		종합	74	2	0	0	76
	2008 귀속	제출가구원	-	1411	20	2	1430
		근로		1203	12	2	1217
		종합		207	7	0	213
	2009 귀속	제출가구원	-	-	1583	9	1592
		근로			1339	5	1344
		종합			245	4	249
	2010 귀속	제출가구원	-	-	-	1788	1788
		근로				1502	1502
		종합				288	288

주1: 음영은 해당차수의 귀속년도 수집건수로 변동 없는 구간
2: 음영 이외의 구간은 과년도 서류 수집으로 인하여 나타난 변동 구간이며, 2010년 귀속 자료의 경우 2012년 조사 당시 추가 수집 가능성이 있어 최종 데이터와 수치의 차이가 발생 가능함.
3: 가구원 1명이 근로와 종합 소득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출가구원의 총계는 근로와 종합소득 제출자 합계와 다를 수 있음.

2) 4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수집현황

4차년도 조사 준비 시점에서는 전체 가구의 약 35%에서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661가구에서 1,790건의 서류가 수집되어, 총 4,843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수집율은 34.3%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가구 중 65가구는 2010년 7월 이후 분가로 유효표본이 아니므로, 정확한 수집율은 4,778 가구 대비 34.8%로 보아야 한다. 조사 설계 시점의 목표보다 불과 0.2% 낮은 수집율로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6> 4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수집현황

구분	수량*
2010년도 귀속서류 수집 건수	1,790
제출 가구원 수	1,788
제출 가구 수	1,66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구원	1,502
종합소득 신고서 제출 가구원	288

주1: 서류 건수는 최종 수집된 서류의 수량을 의미하며, 가구와 가구원 수는 해당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기준으로 집계함.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있고, 한 가구원이 서류를 2장 제출한 경우도 있으므로 서류 제출 건수와 제출 가구수, 제출 가구원 수가 서로 다르게 됨.

그런데 모든 가구가 증빙서류 수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가 필요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소득자나 금융소득자 중에서도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만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수집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수집율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대상 가구의 절반을 웃도는 해당하는 61.0%의 가구에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은 59.0%가 서류를 제출한 반면,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은 33.0%만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수집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의 서류 제출 비율도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편이다.

<표 II-17> 4차년도 소득증빙서류 수집율

구분		해당 case	제출건수	수집율(%)	[참고] 3차년도 수집율*
가구	전체 유효표본 가구	4,778	1,661	34.8	30.7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725	1,661	61.0	53.5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	2,547	1,502	59.0	52.8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874	288	33.0	29.5

주1: case 숫자는 가중치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치임.
2: 3차년도 수집율은 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참고.

Ⅲ. 조사 내용

1. 조사표 구조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용과 가구원 개인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잘 알며 주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원 한 명이 응답해야 하며, 가구원용 조사표는 1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된다. 하지만, 특정 가구원이 다른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어도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패널 조사 4차년도 조사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항목 중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올해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표 Ⅲ-1> 조사표의 구조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표지] 가구 적격 여부 확인	[표지] 가구원 적격 여부 확인
가구 기본 현황	경제활동
주택, 종부세 환급금,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유 현황	연금/보험 소득
가계 지출 현황	2010년 연간 소득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보험 관련 지출 현황
복지현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산 및 부채 현황	소득세 유형 및 소득 공제 현황
근로장려금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환급세액	
유가보조금	

2. 가구용 조사표 내용

가. 가구 현황

가구의 일반 현황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가구원의 이름, 출생년월,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 변동 사유, 학력, 직업 등을 조사한다.

본 조사에서 가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가구원은 가족과 함께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이 생활한 사람으로 정의했고,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는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2010년 6월 이전 분가한 가구는 정식 표본가구로 인정하여 새로운 가구의 경제활동을 모두 조사하지만, 2010년 7월 1일 이후 분가한 가구원에 대해서는 2010년에 원 가구에서 6개월 이상 동거하였기 때문에 원 가구의 가구원으로 분류되지만, 차후년도를 대비하여 간단한 간이 조사만 진행했다.

나. 주택 및 자동차 보유 현황

주택 현황에서는 주택 형태, 거주 형태, 주택 가격, 전월세금, 면적, 거주 주택 외 추가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조사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주택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보유기간, 매매차익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또한 자동차 항목에서는 자동차 보유 현황과 자동차 보험료 납부액, 월평균 차량 유류비 항목을 측정했으며, 오토바이 항목의 측정 문항은 자동차와 동일하다.

다. 가계 지출 현황

3차년도와 달리 4차년도에는 가구에서 2010년 한 해동안 지출한 금액을 월평균 소비와 월평균 저축으로 나눠 대략적인 지출과 저축액을 먼저 조사했다. 그 다음 세부적으로 가구에서 지출한 주거비, 식료품 구입비, 주류비, 담배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가전제품 구입비, 통신장비 구입비, 가구 구입비, 의류 및 잡화 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비, 여행·스포츠 레저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혼인·장례·이사비, 기부금, 가사도우미 서비스비를 조사했다.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2010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했고, 특별한 상황에서 1회성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 비용은 2010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지출 총액을 측정했다.

라.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개인과 개인 간에 주고받는 금액에 관한 질문으로 가구원이나 친척, 지인 간에 오고 간 돈의 흐름을 조사했다. 그러나 함께 사는 부부간에 주고받는 금액은 가구 전체의 지출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구원간 주고받은 용돈과 학비를 제외하고 증여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주고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를 했다.

타가구와 주고받는 이전지출이나 소득은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용돈, 생활비, 학비 등을 정기성 총액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정기성 총액을 포함하여 생일이나 명절 등에 1년 동안 한 두 번씩 주고받은 금액은 모두 합쳐 연간 총액으로 조사하였다. 단 가구 내에서 6개월간 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잠정적 가구원이 될 2010년 7월 이후 출생 아기나 군대에서 제대한 가족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지출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밖에도 경조사 지출과 소득,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등도 이전지출·소득 항목에서 함께 조사했다.

마. 복지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고,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기간과 월평균 수급 금액, 연간 수급 총액을 조사했다. 4차년도에는 특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은 가구원을 조사했는데 2010년 수혜 가구원·비가구원, 2009년 수혜 가구원·비가구원으로 나눠 2년 동안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했고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액, 서비스 수혜 기간, 특별현금급여 수급액도 함께 조사했다. 이밖에도

자녀양육지원금의 수혜 내역을 조사했으며 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가구 설문지에서 조사했던 기초노령연금, 농어업 정부 보조금, 장애수당, 보훈수당, 기타 정부지원현금에 대해서는 수혜 받은 가구원만을 조사하고, 수급기간, 수급 금액 등 자세한 내역은 해당 가구원 설문지에서 조사되도록 했다.

바. 자산 및 부채 현황

재정패널 조사에서 자산과 부채는 명의를 기준으로 했다. 즉 해당 가구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저축이나 예금, 부동산, 부채 등은 모두 해당 가구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본인의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부채를 진 경우에도, 부채가 가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채 현황에 포함된다.

자산이나 부채는 조사 시점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2010년 12월 31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원금 외에 이자나 배당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자산(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에는 적립한 원금을 기준으로 했다.

금융자산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빌려준 돈,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했다.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서는 주택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주택 이외 건물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의 시가총액, 주택 이외 보유 부동산, 보유회원권, 농기계/가축, 선박/건설중장비, 기타 자산 등을 조사했다.

부채현황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대출, 돌려 주어야 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기타 보증금으로 구분했다. 이때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사. 환급금 및 정부보조금 현황

일상적인 소득과 지출 외에 정부로부터 환급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 연말정산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 유가보조금으로 구성했다.

3. 가구원용 조사표 내용

가. 조사 적격 가구원 선정

가구원용 조사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2010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된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100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보험소득, 기타 소득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라 할지라도 연금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이 유일한 소득원인 가구원은 이전소득이 존재하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전혀 없으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차년도에는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일하는 무급가종 종사자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가구원 설문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자녀양육비지원금이 가구의 유일한 소득일 경우에는 가구조사표에서만 작성할 수 하였다. 이는 과거 조사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가구의 가구주에게는 가구원 설문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나. 경제활동

2010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 시점(2011년 5월 1일 기준)의 소득활동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형태는 어떤 것인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구직 여부와 그 사유를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소득활동자의 직장 및 출퇴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연금・보험 소득

2010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나 민간연금・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는지 조사했다. 각 연금・보험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표 III-2> 연금·보험 소득

구분	종 류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민간연금·보험	퇴직연금,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자동차보험

라. 2010년 정부지원 현금 소득

정부지원 현금 소득은 가구 설문지에서 수혜 가구원만을 조사한 기초노령연금, 농어업정부보조금(쌀직불금 포함), 장애수당, 보훈수당, 기타수당을 수급기간, 연간 총금액으로 나눠 조사했고, 국가유공자 보훈연금도 포함해 조사했다. 단, 가구 설문지에서 조사한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자녀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기타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마. 2010년 연간 소득

연간 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매출 및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토지, 주택, 상가 및 사무실, 기타),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타가구에서 받은 용돈, 생활비, 학비 등/ 노인요양특별급여/ 그 외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단, 연금·보험 소득은 이미 앞 문항에서 조사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자 연간 소득에서는 제외해 조사했다.

바. 연금·보험관련 지출 현황

2010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이나 민간연금·보험에 납부한 금액을 조사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납부 금액,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고용 보험료 납부 금액과 함께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이나 보험에 연간 납부한 금액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연금과 보험은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인정하였다.

사.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구원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2010년 한 해 동안 소비·지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조사했다. 이때 개인용 법인카드는 제외했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나 대출을 받은 금액, 카드론 금액,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제외했다.

한편, 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영업용/사업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지출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구분해 가구가 직접 소비 지출한 금액만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 소득세 유형 및 소득공제 현황

가구원용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현황과 결정세액을 추가로 조사했다. 각각에 대해 조사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소득공제항목

구분	공제 항목	세액
근로소득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 장기 주식형 저축, 기타 공제	결정세액
종합소득자	연금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장기 주식형 저축, 표준 공제, 기타 공제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은 측정이 쉽지 않고,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의 결과를 토대로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2011년 5월 조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20-30대 (1972년~1991년 출생) 기혼 여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출상 장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영역을 신설했다. 결혼 햇수, 현재 자녀 수 및 이상적 자녀수, 자녀계획,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그 내용이며 응답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원이라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이 영역에는 응답 하도록 했다.

4. 4차년도 추가 내용

가. 가구 조사표

1) 2010년 말 기준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 상태

개별 가구원의 2010년 말 기준 혼인상태를 기혼(배우자 있음), 기혼(사별, 이혼), 미혼(결혼한적 없음)으로 나눠 조사했으며 2010년 기준 통상적 일주일 총 근로시간(잔업시간 포함), 2010년 기준 급여가 지급되는 일주일 총 잔업시간을 추가로 조사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선택문항에서는 '직업군인' 과 '미취학아동'이 포함되어 다소 수정이 이루어졌다.

2)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3차년도 까지 조사하였던 종합부동산세 문항은 4차년도 조사부터는 실시하지 않았다.

3) 단답식 월평균 소득 및 월평균 저축

2010년 월평균 경상소득에 대해 기존 구간에 대한 응답에서 단답식 응답 방식으로 수정하여 조사하였으며, 경상소득의 정의는 가구소득 중 정기적인 소득과 재

현가능성이 있는 소득으로 하였다. 2010년 한 해 월평균 저축 금액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다.

4) 악기구입비 및 가사도우미 서비스비

2010 한 해 악기를 구입한 가구에 한 해 지출 내역을 조사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출여부와 연간 총 금액에 대해 조사했다.

5) 사교육비 지출 최종 의사 결정자

공교육 또는 사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에 한 해, 사교육비 지출여부 관련 최종 의사 결정자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6) 가구원간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의 유형

가구원간의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의 유형에 대해서 3차년도 조사에서는 '목적'을 설문하였으나, 4차년도에서는 '재산 유형'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7) 증여

지난 해 일생동안의 상속을 조사한 바와 같이 올해는 일생동안의 증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올해부터 상속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금액유무와 액수를 조사하도록 했다.

8)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4차년도에는 가구 설문지 복지 현황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문항이 신설됐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은 2010년 가구원/비가구원, 2009년 가구원/비가구원을 조사해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기간, 본인부담액, 특별현금급여 수급액을 조사했고 비가구원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출생연도, 최종교육기관, 졸업여부, 연간소

득유무 등도 함께 조사되도록 했다.

9) 근로 장려금 수급 안내 여부

근로 장려금 지급 여부와 그 금액, 사용 용도 등을 물었던 지난 조사와 달리 근로장려금 신청여부, 수급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수급안내 받은 후 신청 여부, 신청 후 지급 여부 등 세부 항목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나. 가구원 조사표

1) 2011년 5월 경제활동 상태

2011년 5월 기준 경제활동 상태관련 문항에서 직장 및 출퇴근에 관한 내용(출퇴근 여부, 근무지 위치, 평균 출퇴근 시간, 출퇴근 교통 수단 등) 이 추가되었다.

2) 연금보험 및 소득

2010년 한 해 동안 받았던 사회보험금 및 정부현금보조금에 대한 '수급 개월수'가 포함되었다.

3) 정부지원현금

그 동안 가구 설문에서 조사하였던 보훈연금, 노령연금, 기타 정부보조금을 수급 가구원의 가구원 설문지에서 조사하였다.

4)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합만을 질의하던 형태에서 토지, 주택, 상가 및 사무실, 기

타로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다.

5) 건강보험 미납 사유

4차년도 건강보험 미납 사유에 대한 선택 문항이 응답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②차상위계층자(의료보호2종자)로 가입'에서 '②차상위 및 의료보호 대상자'로 일부 수정되었다.

6)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유를 조사하였다.

7) 출산장려정책

4차년도 가구원 조사표에서는 일회성 설문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영역이 신설되었다.

Ⅳ. 실사 진행 과정

1. 실사 준비 과정

가. 조사표 설계

4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2010년에 실시한 3차년도 조사표를 골격으로 하였다. 먼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사표 초안을 설계하여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고, TNS에서 조사 진행을 고려해 수정할 부분을 제안했다. 그런 다음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최종 조사표를 확정했다. 확정한 조사표는 관련 학계의 자문 교수로부터 최종 감수를 거쳤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응답자의 조사 친숙도가 다소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전년도에 간략화되었던 질문을 구체화하고, 전년도 조사 결과 나타난 응답자나 면접원의 조사표 수정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나. 조사원 선발 및 교육

2011년 재정패널 조사에 최초 투입된 조사원은 모두 88명이다. 전년도 재정패널 조사에 참여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사원 8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고, 타 패널조사 또는 고난이도의 조사 경험이 풍부하여 재정패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8명의 신규 조사원이 투입되었다.

<표 Ⅳ-1> 지역별 투입 면접원 수

지역별	관할 지역	2011년 투입 면접원	재정패널 유경험자	신규 충원
서울 본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37	35	2
부산 지사	부산, 울산, 경남	18	18	-
대구 지사	대구, 경북	11	9	2
광주 지사	광주, 전남, 전북	11	10	1
대전 지사	대전, 충남, 충북	11	8	3
총계		88명	80명	8명

조사원 교육은 기본적으로 거점 지역에서 1일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교육에 불참한 조사원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추가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차년도 조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사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지역별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TNS RI 사회조사본부의 연구원들이 직접 담당하였으며, 한국조세연구원의 담당 연구진이 전 교육 과정을 참관하며 조사 내용에 대한 질의에 직접 답변하였다.

지역별 교육은 4월 27일 대구 및 부산 권역, 4월 28일 대전 및 광주 권역, 4월 29일 서울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모든 지역 교육에서 교육진행자를 동일하게 지정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통일성을 꾀했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각 지역별 교육 과정에서 나온 의문사항이나 수정지침을 조사지침서 및 지역별 실사감독관을 통해 전달하였다.

<표 Ⅳ-2> 교 육 내 용

주 제	세부 내용
조사 목적 및 의의 공유	재정패널 조사의 목적과 의의, 중요성 등 조사배경에 대한 교육
	한국조세연구원 소개
설문구조의 이해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개념 이해, 조사 대상 가구 판별
	설문 문항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소득공제 관련 교육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등 새로 추가된 항목 교육
	지난 조사 오류 사례 검토
패널 유지 및 조사 대상 관련 교육	패널 유지율 제고에 대한 사명감 고취
	이사 가구 및 분가 가구 조사 요령
	조사대상가구 접촉요령, 면접 진행요령 등 면접조사기법

지역별 교육에 불참한 면접원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진행했다. 보충 교육은 5월 2일 TNS 본사에서 실시되었으며, 본 교육과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 가구 대상 안내편지 및 공문발송

조사 대상 가구에는 조사 시작 일주일 전인 5월 9일에 조사에 대한 안내편지 및 한국조세연구원의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안내편지와 공문에는 조사에 대한 의의 및 4차년도 조사 참여 독려, 소득 증빙서류 제공 준비와 그 혜택을 상기시켜 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라. 조사 도구 제작

재정패널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응답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사 도구를 제작해서 활용했다.

① 설문지 : 가구용 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 두 종류의 설문지 제작

② 조사원 신분증·명함 :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작. 신분증에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직인과 조사원의 사진을 인쇄하여 응답자가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③ 사전 안내편지 : 재정패널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
④ 비밀보장각서 : 조사가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확인을 조사원이 서명하여 응답자에게 제출
⑤ 정부기관 공문 : 한국조세연구원과 TNS 명의의 공문을 발급받아 응답자에게 열람토록 함.
⑥ 조사지침서 및 면접원 가이드 : 조사진행 지침과 용어에 대한 해설을 명기
⑦ 보기카드 : 조사 진행 시 참고 도구로 활용
⑧ 소득공제 서류 양식 : 응답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필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빈 양식을 인쇄 배포

마. 기타 조사 홍보 및 안내

1) 080 안내전화(수신자부담 무료전화) 설치 및 운영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사 대상 가구의 문의에 곧바로 응대하기 위해 수신자 부담 무료전화를 설치하고 상담전화는 TNS RI의 담당자가 직접 수신하여 응대했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안내

한국조세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pf.re.kr)와 TNS의 홈페이지(www.tnsglobal.co.kr)에 조사 안내문을 올려 조사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TNS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패널이 이사를 할 경우 그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패널 관리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사 품질 제고 방안

가. 재정패널 조사 유경험 조사원 위주 투입

4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 88명 중 90.9%에 해당하는 80명이 전년도 조사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사원들은 이미 재정패널 조사를 경험한 만큼 조사 내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조사원이 전년도에 자신이 담당했던 패널을 방문함으로서 응답자로 하여금 조사원에 대한 신뢰감과 친숙도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는 패널 유지율 제고 및 솔직한 응답을 바탕으로 한 측정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한 노력

패널조사의 특성상 높은 패널 유지율은 조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종단면적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 패널 유지율 제고가 본 조사의 실사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 4차년도 실사 준비 기간

패널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3차년도 실사 종료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패널 관리 활동을 진행했다. 응답 내용 확인을 위한 콜백 과정에서 조사 참여 감사 인사와 향후 조사 참여 당부 및 일부 이사 가구에 대한 주소 확인을 병행했다.

패널관리의 일환으로 2010년 말에 달력을 발송하였으며, 2011년 설 명절을 앞두고 연하장을 발송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패널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를 진행하여 추첨된 100명의 패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발송하였다. 4차년도 조사를 두 달여 앞두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조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응모 시 자신의 주소를 기입토록 하여 또 한 차례 주소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2) 4차년도 실사 진행 과정

실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를 강력히 거절하는 가구 리스트를 파악해 별도의 컨택요원을 투입해 조사 참여를 권유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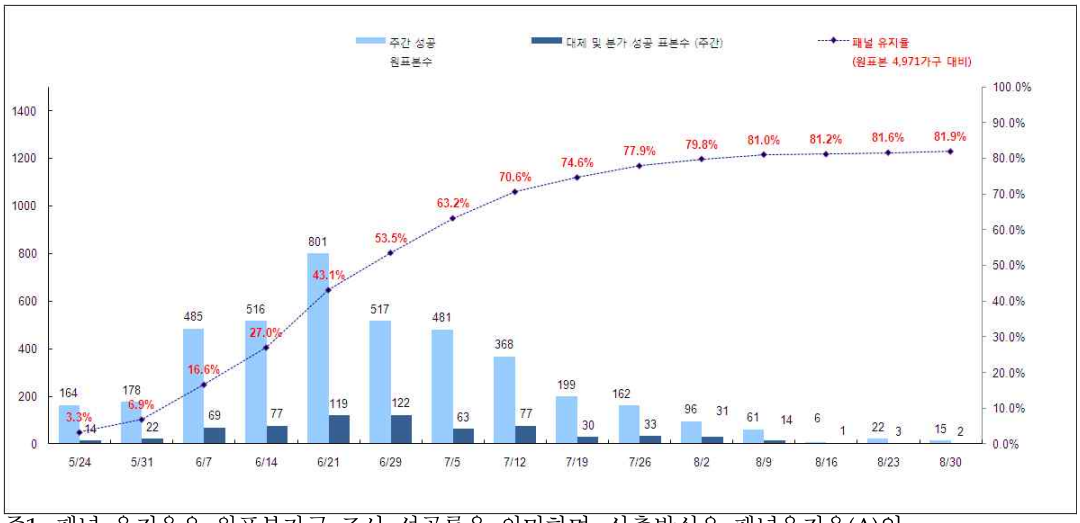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패널가구가 이사를 하고 직접 TNS RI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할 경우, 소정의 사례품을 지급하여 이사가구의 추적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자 했다.

3. 실사 진행 과정

가. 주별 진행 상황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는 5월 셋째 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됐다. 당초 8월 초까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철이 겹치면서 일부 패널과의 약속이 연기되고,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재컨택을 지속하면서 실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

[그림 Ⅳ-1] 4차년도 실사 진행 상황



주1: 패널 유지율은 원표본가구 조사 성공률을 의미하며, 산출방식은 패널유지율(A)임.

전반적인 실사 진행 상황을 보면, 실사에 돌입하고 3주차인 6월 첫째 주부터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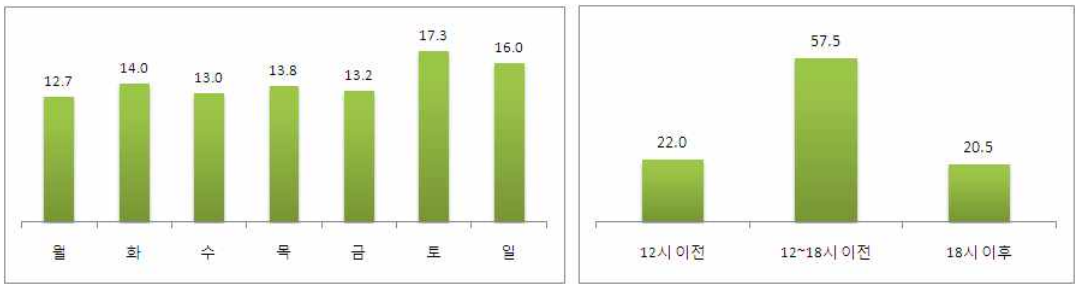
간 완성 표본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실사 시작 시점에는 우선 조사원이 전화를 통해 패널과의 사전접촉 및 면접약속을 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6월에 접어들면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7월 중순부터는 단순거절 가구에 대한 재설득이 주로 이뤄졌고, 표본가구의 사정으로 조사 시점이 뒤로 밀린 가구에 대한 조사가 주로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주간 진행 표본수가 급감했으나 패널유지율 제고를 위해 끝까지 실사를 마감하지 않았다.

나. 조사 진행 요일 및 시간대 분포

전반적으로 모든 요일이 고르게 분포되었지만,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조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 시간대의 경우 12시~18시 사이가 57.5%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른 아침 시간이나 심야 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 주로 낮 시간대에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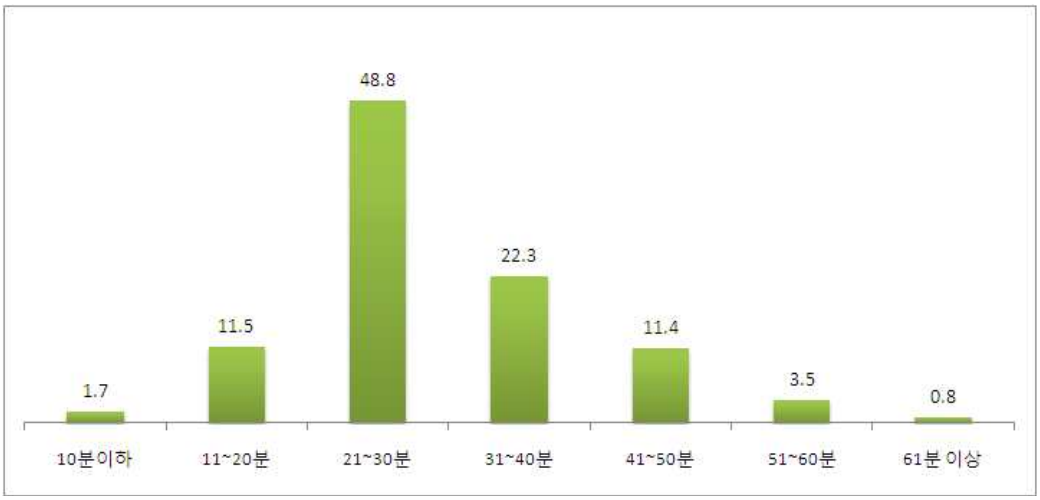
[그림 Ⅳ-2] 조사 요일 및 시간대(%)



다. 조사 소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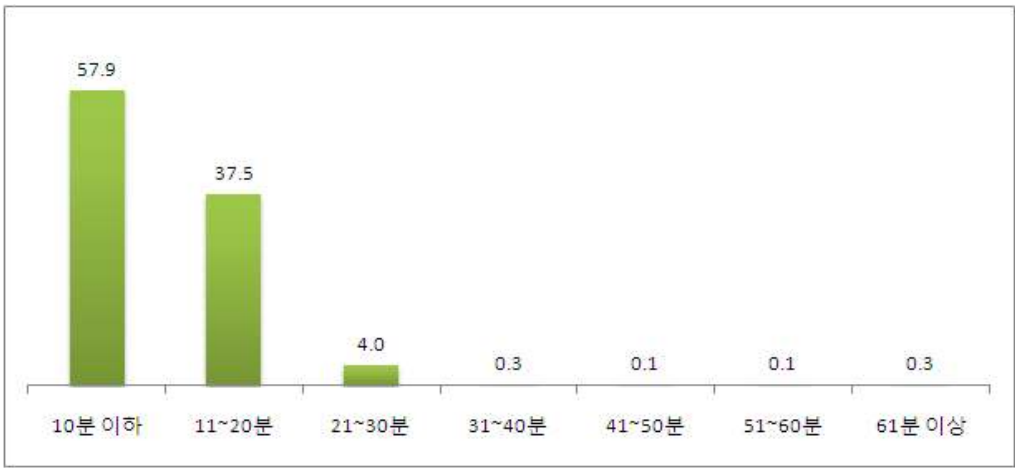
가구 조사표의 평균 조사 시간은 약 33.4분으로 지난 해 평균시간 33.8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시간대별로는 21~30분, 31~40분이 각각 48.8%와 22.3%로 가장 많았다. 다만 조사 소요 시간은 실사 관리 차원에서 조사하는 문항으로 엄밀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Ⅳ-3] 가구 조사표 소요시간(%)



가구원 조사표의 평균 조사 시간은 약 12.9분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납부나 종합소득 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많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조사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림 Ⅳ-4] 가구원 조사표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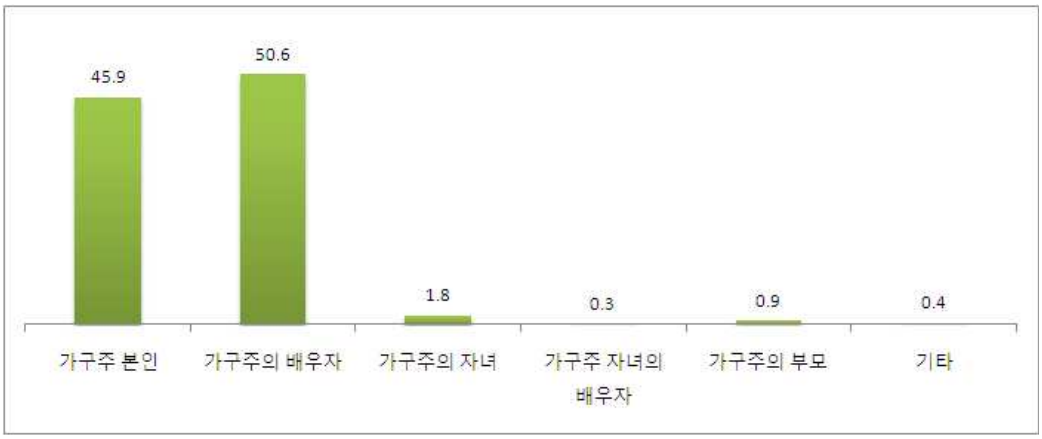
라. 조사 방법

가구 조사표는 응답자의 요청이나 가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설문지를 유치해서 조사한 경우가 총 1건이며, 나머지 모든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한 상태에서 직접 진행됐다. 유치조사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마. 가구 조사표 응답자 선정

가구 조사표는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한 경우가 전체 표본의 96.5%로 나타나, 지난해(96.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5] 가구 조사표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바. 가구원 조사표 응답자 선정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사람은 총 7,87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 설문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영역은 소득 및 소득활동 해당자가 아니어도 20-30대 기혼 여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구원이면 응답할 수 있으며, 무급 가족 종사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또한 가구원 설문지에 응

답해야 하므로 작년보다 가구원 설문지 응답자가 다소 늘어났다. 한편, 이 중에서는 실제 소득은 없으나 실사 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가구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인 소득 가구원 숫자와 조사 성공률은 데이터 클리닝 거치며 달라질 수 있다.

가구원 조사표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가 57.0%였으며, 소득자의 배우자 등 소득을 관리하는 타가구원이 응답한 사례가 43.0%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작년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는 가구원 소득활동 상황과 소득과 같은 실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리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을 관리하는 가구원이나 타가구원 명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가구원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조사원 간담회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조사표 상에는 대리 응답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소득자 본인의 동석 하에 조사가 진행되거나 애매한 질문을 전화를 통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타 가구원이 대신 응답했다고 표기됐다고 해서 조사 품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해당 가구원이 주로 심야에 귀가하거나, 본 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보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타가구원으로부터 대리응답을 받기도 했다.

Ⅴ. 재정패널 표본 특성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가. 표본가구 구분

4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표집된 표본가구 수는 4,843개로 1차년도 5,014가구, 2차년도 5,096가구에 비해 표본수가 100~200여개 감소했다. 이는 3차년도 조사부터는 추가표본을 추출하기 않고 추적조사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차년도 조사 대상이 4,884가구였던 것에 비해 40여 가구만 감소한 것은 4차년도에 접어들면서 조사가 안정되어 가고 있고, 조사원들 또한 숙련도와 친숙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 표집된 4,843개 가구는 표본의 특성에 따라 크게 7가지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유효 표본수가 달라지게 된다.

먼저 1차년도 조사에서 표집된 5,014 가구 중 1차~4차년도 연속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3,954개 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4개 년도에 걸치는 종단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표본집단이다. 그러나 2차년도에 추가표본으로 조사된 620가구 중 3차년도와 4차년도에 모두 추적 성공한 541가구는 3개년도(2차~4차)에 걸치는 종단적 분석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2차년도 또는 3차년도에 탈락했다가 4차년도에는 복귀한 가구가 있으며, 데이터가 결측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또한 분가가구 228개는 분가 시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진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목적에 따라 유효 표본수가 달라지게 되고, 가중치 자체도 다르게 된다.

<표 Ⅴ-1> 표본집단과 표본가구 구조

표본가구 구분	표본수	1차년도 조사	2차년도 조사	3차년도 조사	4차년도 조사
4년 연속 성공 최초표본가구	3,954	측정	측정	측정	측정
2008, 2010, 2011년 성공 최초표본가구	44	측정	결측	측정	측정
2008, 2009, 2011년 성공 최초표본가구	52	측정	측정	결측	측정
2008, 2011년 성공 최초표본가구	22	측정	결측	결측	측정
3년 연속 성공 추가 표본가구	541	해당 없음	측정	측정	측정
2009, 2011 성공 추가 표본가구	2	해당 없음	측정	결측	측정
3년 연속 성공 기존 분가가구(08년 6월 30일 이전)	65	해당 없음	측정	측정	측정
2009, 2011 성공 기존 분가가구(08년 6월 30일 이전)	3	해당 없음	측정	결측	측정
기존 분가가구(09년 6월 이전)	6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측정	측정
신규 분가가구(10년 6월 이전)	2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측정
신규 분가가구(10년 7월 이후)	6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나. 가중치 보정

현재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종단면·횡단면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가중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있으므로 가중치 적용 유무 및 유형에 따라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4년 연속 성공한 원표본 가구에게만 부여가 된다. 이 최종보고서는 4차년도 조사 결과에 초점을 맞춰 기술했기 때문에 횡단분석을 위해서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며, 연도별 분석의 경우 각 조사차수의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한다. 동태분석을 위한 이행행렬에는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한다.

대규모 사회조사에서는 조사 진행 과정의 에러로 인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에러는 응답자의 오해나 회피, 면접원의 오류, 인풋 과

정의 오류, 관리 과정의 오류에 의해 발생하며, 논리성 체크나 응답자 재조사와 같은 사후 확인 과정을 거쳐 교정되고 보완된다. 1차 데이터 제출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오류를 걸러내기 위한 클리닝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반영한 베타 버전 수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후에도 클리닝 작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본고에 수록한 내용 중 일부가 수정·보완될 수 있다.

다. 데이터 입력 과정

재정패널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는 조사표 입력부터 출력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인 서베이크래프트(Surveycraft)를 이용했다. 서베이크래프트(Surveycraft)는 사전 설계를 통해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조사표 항목에서 허용된 코드나 범위만을 입력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거주형태의 유형을 4가지의 코드로 부여했다면, 그 외의 코드는 입력자체가 불가능하다. 연금저축 공제액도 공제한도 이상은 입력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했다.

두 번째 문항 간 건너뛰기 구조(Skip pattern)가 정확히 지켜진다. 특정 항목에 대해 지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면, 지출 금액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방식이다.

만일 입력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오류가 발생한다면 조사표에 적힌 응답이 잘못됐거나 인풋 요원이 잘못 입력했거나 하는 경우이다. 조사표가 잘못됐다면 입력이 중단되고 해당 조사표는 다시 실사팀으로 되돌아간다. 인풋 요원의 실수였다면 정확한 값을 재입력해야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 건수는 발견 즉시 해결이 되므로 그 발생 빈도를 기록하기 어렵다.

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개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은 조사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중 잘못 혹은 의심스러운 자료나 표본을 탐지하여 그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조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모든 사회조사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패널조사에서는 데이터 에디팅 작업을 통해 미완성 응답패턴이나 조사 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차후년도 조사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수정 작업은 오히려 조사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와 실사관리자가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직접 담당할 필요가 있다.

재정패널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기반해 이루어 졌다.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 클리닝 지침은 주로 재정패널 조사 지침서의 내용에 기반했다.

① 타당성 : 질문에 맞는 응답인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응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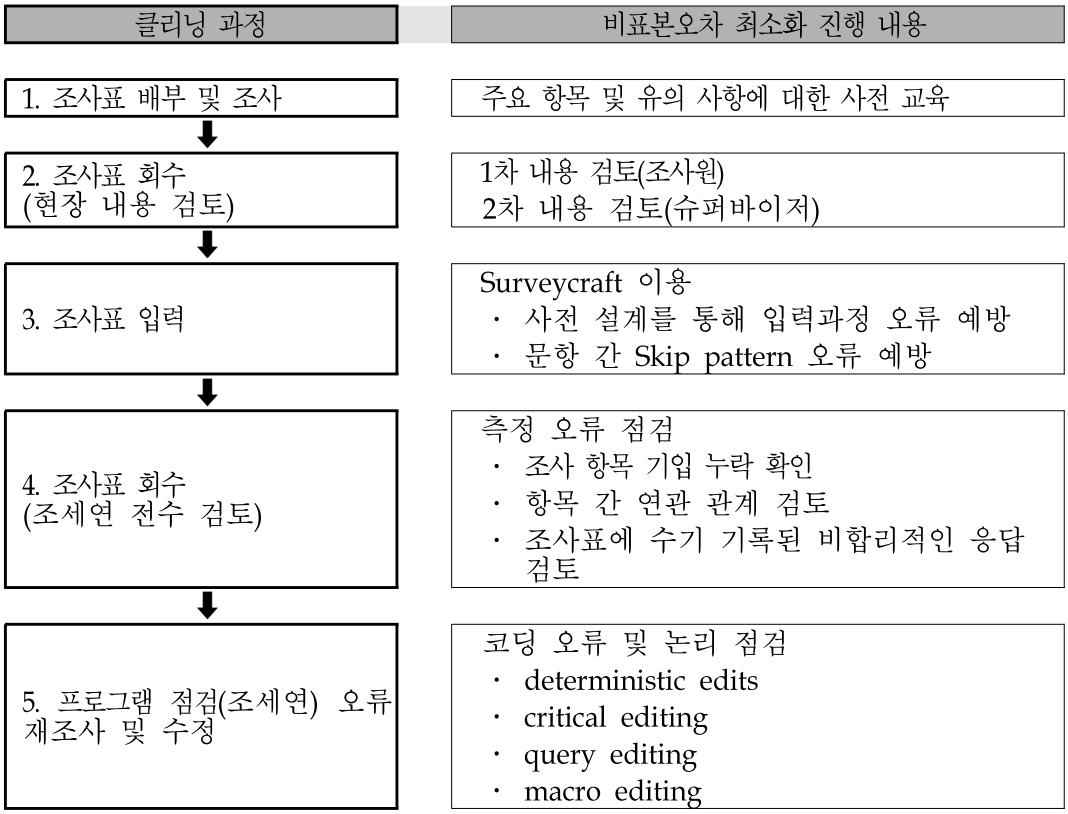
② 일치성 : 응답이 논리적, 수리적 관점에서 일치한가?

③ 응답분포 : 통상적인 분포를 벗어나는 특이한 값이 조사되었는가?

마. 클리닝관련 데이터 처리과정

재정패널의 클리닝관련 데이터 처리 과정은 조사표의 작성부터 시작하여 조사표 응답 및 에디팅, 데이터 입력 및 코딩, 조사표 검토, 프로그래밍에 의한 데이터 클리닝, 클리닝 내용 피드백의 절차를 거쳤다.

[그림 Ⅴ-1]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 클리닝 진행 과정



첫째, 재정패널 데이터의 1차적인 quality는 설문에 대한 조사원과 응답자의 이해 정도,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조사원과 응답자간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응답에 대한 에디팅 규칙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사원 지침서에 수록하였으며 거점 지역에서 1일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교육에 불참한 조사원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조사원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 조사원의 경험미숙과 훈련부족 및 자료수집 과정상의 문제점, 응답자로 인해 발생되는 응답오차를 줄이기 위함인데, 이러한 과정은 조사표 용어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조사표의 설계 및 데이터 수집도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때 수집되는 개선 데이터는 향후 조사에서 응답자 부담과 무응답률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현장에서 회수된 조사표는 각 지역 슈퍼바이저가 점검하여 비합리적인 응답을 검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료처리오차(tabulation errors)를 줄이기 위함이

며 이 단계에서의 에디팅은 조사표들을 다음 단계로 계속 넘겨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조사표를 수용, 거부, 재조사 등으로 분류하여, 수용할 조사표는 수용하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조사표는 처리를 중단하며, 추가 점검이 필요한 조사표는 추가로 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조사표 인풋 작업은 조사표를 컴퓨터에 데이터화 하여 입력하는 과정이며 부호화, 코딩, 자료입력 등의 과정에서 주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더블 펀칭을 시행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재정패널의 경우는 특수하게 설계된 코딩 소프트웨어로 자동 실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경우 항목 응답이 정해진 범위에 있는지 혹은 지정된 다른 값들과 불일치 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

셋째, 조사표 검증은 현장 실사 업체에서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정패널의 경우 아직 구축 단계이므로 조사 처리과정과 조사 자료의 이해 및 응답자 파악, 오차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설문 문항에 대한 연구진의 이해를 위해 인풋이 완료된 설문지는 전수 연구원으로 전달되어 항목별로 측정 오류를 점검하였다. 이러한 현장 에디팅(field edits) 작업에 연구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료 수집 수단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오류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조사원이 기입한 것을 해석하여 오류 패턴이 있을 경우 조사 지침서를 수정, 재교육할 필요가 있는지를 시기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타당성 에디팅(validity edits)과 간단한 일관성 에디팅을 하게 된다.

넷째, 프로그래밍에 의한 클리닝 작업은 현장 에디팅(field edits)과정을 통해 오류를 수정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나 입력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자동화 방법으로 점검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프로그래밍에 의한 클리닝 작업을 통해 조세연구원 및 tns 연구진이 발견한 문제 data에 대해서는 다시 실사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실사 관리자는 먼저 조사표의 응답을 확인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응답자에 대한 재조사(call back)를 진행했다. 연구진의 data cleaning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2> 데이터 클리닝 관련 검토내용

○ 지난해 가구원 정보와 일치 여부
○ 각 문항별 최대값, 최소값 확인 후 이상 유무 검토
○ 전반적인 지출 수준이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수준 이상치 검토
○ 금액의 단위와 월평균·년평균 기준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
○ 가구원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수준간 타당성 체크
○ 연관되어 있는 앞뒤 문항간 로직 체크 (부동산 소득과 보유 여부 등)
○ 연금, 소득공제액 등 산출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이상치 확인

연구진 검토과정에서 이상치로 판정했으나 조사표 확인 및 응답자 재조사 과정을 통해서도 일관된 답변이 나올 경우에 기본적으로 조사된 측정치를 신뢰했다. 소득이나 지출은 신고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가구 자산 역시 명의와 실소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는 이상치로 판정했으나 재확인 결과 유효 응답으로 인정된 사례도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응답자가 일부 소득·지출 내역을 누락했거나 내용을 부풀리거나 축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잘못된 측정치가 아닐 경우에는 표본가구의 응답을 기준으로 data를 처리했다.

2. 표본 가구의 구성

본 조사에서 가구의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일반가구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재정패널조사에서는 동거인 등의 혈연관계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2010년 응답가구는 총 4,778이며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응답한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가구주 본인 가구주의 자녀, 가구주의 부모,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 순이였다.

<표 Ⅴ-3> 2010 응답자 확인 및 가구주와의 관계

	응답자	가구주 본인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	가구주 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부모	기타
사례수	4,778	2,291	2,313	83	11	56	24
비율	100	48.0	48.4	1.7	0.2	1.2	0.5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가. 세대별 가구유형 구성[6)]

재정패널조사의 세대별 가구유형 구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세대 가구의 비중이 약 60% 전후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와 가구주와 동일 세대로 구성된 1세대 가구의 비중에서는 각 연도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세대 > 1세대 > 1인가구 > 3세대 > 4세대 비중의 분포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 세대별 가구유형 구성의 분포에서는 1인가구 16.9%, 1세대가구 17.0%, 2세대가구 61.0%, 3세대가구 5.1%, 4세대이상 0.09%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가 1세대 가구의 비중보다 높은 인구주택총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로, 가구원 정의에서 6개월 동거의 기준과 가구주 정의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Ⅴ-4> 세대별 가구유형 구성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인가구	16.8	17.1	16.7	16.9
1세대	18.7	17.1	16.5	17.0
2세대	58.8	60.2	61.3	61.0
3세대	5.6	5.6	5.5	5.1
4세대이상	0.07	0.06	0.04	0.09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6) 가구의 세대별 가구유형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라, 가구주를 기준으로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으로 추정하였다.

나. 형태별 가구유형 구성

2010년 재정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형태별 가구유형 구성을 살펴보면, 핵가족[7] 가구의 비중이 약 70%로 나타나 가장 많은 형태의 가구유형이었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족의 형태별 분포에서의 핵가족의 비중인 82.3%보다는 약 12.0%p 작았으나, 핵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였다. 핵가족 가구를 구성하는 형태 중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비중이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인가구의 경우 16.9%로 부부단독 가구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형태별 가구유형의 분포는 큰 변화는 없었다.

<표 Ⅴ-5> 형태별 가구유형 구성

단위(%)		핵가족가구			1인가구	비핵가구
		부부단독	부모+ 미혼자녀	한부모+ 미혼자녀		
2007년	70.2	17.3	46.7	6.2	16.8	13.0
2008년	70.2	16.0	47.5	6.8	17.1	12.7
2009년	70.7	15.6	48.2	6.8	16.7	12.6
2010년	70.3	16.2	47.7	6.5	16.9	12.8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다. 종사상 지위별 가구유형 구성

종사상 지위별 가구유형의 구성은 가구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2007년에 비해 2010년도에는 임금근로가구의 비율이 약 3.7%p 증가하였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1.2%p 감소하였다.

재정패널조사에서 종사상 지위별 가구의 분포는 임금근로가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직가구 순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직가구에는 전업

7) 인구주택총조사의 핵가족은 '부부', '부부+ 자녀', '부+ 자녀', '모+ 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한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부+ 자녀', '모+ 자녀'를 '한부모+ 자녀'로 재정의하여 추정하였다.

주부, 무직자,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Ⅴ-6> 종사상 지위별 가구유형 구성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근로가구	44.0	45.8	47.4	47.7
일용근로가구	8.8	8.0	7.7	7.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23.0	21.9	22.4	21.8
고용원이 둔 사업주	4.8	4.8	4.6	4.9
무급가족종사 가구	0.4	0.7	0.5	0.5
무직가구	19.0	18.7	17.4	17.5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라. 가구원 수 및 자녀수

4차년도 유효표본 가구 4,778개에 속한 가구원으로 인정된 수는 총 14,443여명으로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는 약 3명(가중치 미적용)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가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한다. 가구원은 가족과 함께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이 생활한 사람으로 정의했고, 다른 가구에 사는 기러기 아빠,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및 친척은 가구원에 포함 시켰으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와 원양어선이나 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이 밖의 경우에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함께 살게 된 가족은 간단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했으나 가구원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2010년 조사 당시 가구원에 포함되었으나 결혼이나 직장 등으로 분가한 가족은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했으나 가구원이 아닌 것으로 처리했다.

1) 표본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연도별 가구원수의 분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까지 4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비해 2010년에는 1인 가구의 구성비가 약 0.1%p 증가하였고, 2인 가구는 약 1.16%p 감소, 3인 가구는 약 1.9%p 증가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인 가구는 약 0.7%p 감소하였으며 구성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패널조사의 전체 평균 가구원수는 2007년 2.91명에서 2010년 2.90명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표 Ⅴ-7> 표본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명	16.8	17.1	16.7	16.9
2명	23.4	22.2	21.6	22.2
3명	23.6	24.7	26.0	25.5
4명	27.1	27.0	26.5	26.4
5명	6.9	6.9	7.1	7.1
6명 이상	2.2	2.1	2.1	1.9
전체평균(명)	2.91 명	2.91 명	2.92 명	2.90 명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표본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가구원수 분포

소득 5분위별 평균 가구원수의 분포에서는 상위 소득 계층일수록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가구내에 취업한 가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1명인 가구가 50%이상의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2명인 가구의 비중(약 27%)도 상당히 높아, 취업한 가구원이 많은 경우에 가구의 소득분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8)]

8) 2010년 기준으로 취업한 평균 가구원 수는 1분위 0.82명, 2분위 1.22명, 3분위 1.34명, 4분위 1.52명, 5분위 1.69명으로 상위소득일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표 Ⅴ-8> 표본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가구원수 분포

단위(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분위	2.17	2.25	2.30	2.23
2분위	2.91	2.84	2.83	2.79
3분위	3.09	3.02	3.13	3.09
4분위	3.23	3.22	3.13	3.18
5분위	3.13	3.22	3.23	3.25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경상소득 기준 소득분위이며 균등화지수 반영함

3) 표본가구의 자녀수 분포

자녀수의 구성에는 미혼인 자녀와 기혼인 자녀가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자녀수의 분포는 자녀수가 0명인 가구가 38.6%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명인 가구는 30.0%, 1명인 가구는 25.8%로, 대부분이 2명이하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자녀수는 약 1.03명으로 과거 연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패널조사의 표본가구의 경우, 자녀수의 변동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Ⅴ-9> 표본가구의 자녀수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명	39.9	38.8	37.7	38.6
1명	24.0	25.2	26.2	25.7
2명	30.4	30.4	30.6	30.0
3명 이상	5.6	5.6	5.6	5.8
전체평균(명)	1.02 명	1.03 명	1.04 명	1.03 명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4) 표본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자녀수 분포

소득분위별 평균 자녀수의 분포를 보면, 2010년 평균 자녀수는 1분위 0.56명, 2분위 0.95명, 3분위 1.18명, 4분위 1.22명, 5분위 1.25명으로 상위소득분위의 가구일수록 하위분위의 가구보다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분위의 자녀수는 1분위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 비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Ⅴ-10> 표본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자녀수 분포

단위(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분위	0.51	0.58	0.63	0.56
2분위	1.00	0.96	0.94	0.95
3분위	1.14	1.12	1.20	1.18
4분위	1.28	1.26	1.20	1.22
5분위	1.16	1.25	1.25	1.25
5q/1q	2.27 배	2.16 배	1.98 배	2.23 배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경상소득 기준 소득분위이며 균등화지수 반영함

마. 이사 가구 여부

2010년 조사 이후 이사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 가구의 84.2%가 이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11> 이사가구 여부

이사	이사안함
15.8 %	84.2 %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바. 가계부 작성 여부

2010년 한해동안 정기적으로 각부를 쓰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가구중 약 9가구가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Ⅴ-12> 가계부 작성 여부

작성	미작성
9.3 %	90.7 %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사. 작년과 비교한 가계 경제 상황

귀 가구의 경제상황이 2010년 이맘때와 비교해 어떠한가에 대해, 과반이 변화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좋아졌다는 응답은 7.8%(매우:0,3%, 약간: 7.5%)로 나빠졌다는 응답 26.6%(매우: 4.2%%, 약간: 22.4%)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Ⅴ-13> 작년과 비교한 가계 경제 상황(%)

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변화없음	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
0.3	7.5	65.5	22.4	4.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경상소득 기준 소득분위이며 균등화지수 반영함

3. 표본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재정패널조사에서 가구주는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뜻한다. 참고로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한다. 인구주택총조사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비혈연 가구원이 가구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재정패널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가.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분포

2010년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가 약 77.8%로 절대 다수였으며, 연령대는 3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이하의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약 3.8%에 그쳤다.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50대와 60세 이상 가구주는 2009년도 보다 2010년도에 각각 약 0.8%p, 약 0.5%p 정도로 증가하였다. 20대 이하, 30대, 40대는 각각 0.8%p, 0.2%p, 0.4%p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대가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의 흐름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가구주의 변동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Ⅴ-14>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성별	남성	77.9	77.9	77.8	77.8
	여성	22.1	22.1	22.2	22.2
연령대	20대이하	7.7	6.4	4.6	3.8
	30대	24.2	24.3	25.6	25.3
	40대	26.5	26.4	25.7	25.3
	50대	19.3	20.1	20.5	21.3
	60세 이상	22.4	22.9	23.8	24.3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나. 가구주의 최종학력 분포

가구주의 최종학력은 졸업까지 완료한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재학이나, 수료 등은 바로 아래 단계의 교육수준으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 가구주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대학(전문대, 4년제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약 3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의 비중이 35.3%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자는 2007년에 비해 2010년에 2.2%p 로 최종학력 분포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학 졸업자는 약 3.8%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Ⅴ-15> 가구주의 최종학력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미취학 (안받음)	7.6	6.2	6.1	5.5
초등학교	10.6	10.2	9.8	9.5
중학교	10.2	9.7	10.1	9.8
고등학교	35.8	37.1	35.6	35.3
전문대/ 4년제대학교	32.3	33.2	34.7	36.1
대학원석사	2.9	3.0	3.1	3.2
대학원박사	0.5	0.7	0.6	0.7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분포

재정패널조사에서는 먼저 직업을 질문하고 작년 12월 말 기준 직업이 무직·퇴직·전업주부·학생이 아닌 경우에만 종사상 지위를 질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10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분포에서는 임금근로자가 47.7%, 일용근로자가 7.6%로 두 근로자 유형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의 비율이 21.8%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비해 약 3.7%p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직자, 주부, 학생 등의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Ⅴ-16>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 근로자	44.0	45.8	47.4	47.7
일용 근로자	8.8	8.0	7.7	7.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3.0	21.9	22.4	21.8
고용원을 둔 사업주	4.8	4.8	4.6	4.9
무급 가족 종사자	0.4	0.7	0.5	0.5
무직 (주부, 학생 포함)	19.0	18.7	17.4	17.5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라. 가구주의 개인소득분위별 분포

가구주의 개인소득분위별 분포는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소득활동자들의 소득순위를 부여하고, 그 중 가구주들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각 소득분위별로 속해 있는 분포를 추정한 것이다. 2010년 가구주의 소득지위 분포는 5분위 27.1%, 4분위 23.7% 3분위 19.2%, 2분위 18.0%, 1분위 12.0%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모든 연도에서 비슷한 결과였으며, 재정패널조사에서 정한 가구주의 정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5분위배율의 결과에서는 2009년에 1.87 배로 낮아지다가 2010년에 다시 2.25 배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Ⅴ-17> 가구주의 개인소득분위별 분포

단위(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분위	13.4	13.8	14.3	12.0
2분위	17.6	17.4	16.9	18.0
3분위	19.6	19.2	18.9	19.2
4분위	23.8	23.2	23.2	23.7
5분위	25.7	26.4	26.7	27.1
5q/1q	1.92 배	1.92 배	1.87 배	2.25 배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경상소득 기준 소득분위이며 균등화지수 반영함

마. 가구주 변경 여부 및 사유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가구주가 변경된 가구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였으며, 한 해 동안 가구주가 변경된 가구는 각각 2.9%, 3.2%, 2.2%로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가구주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기타를 제외한 변경사유에서는 2008년과 2010년에는 경제적사유가 가장 큰 사유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2009년에는 가구원 전출입으로 인한 가구주 변경이 많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18> 가구주의 변경여부 및 사유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변경되지 않음	97.1	96.8	97.8
변경됨	2.9	3.2	2.2
경제적 사유	18.8	17.3	30.4
사망	6.1	8.2	21.9
가구원 전출입	11.8	18.4	22.3
기타	61.0	56.1	25.4
모름/무응답	2.3	-	-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4.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표본가구의 가구원 특성은 각 연도별 비교를 위하여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가.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분포

가구원의 성별 분포에서 남녀의 비중은 여성의 경우 약 51% 정도로 남성보다 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분포에서는 20대 이하의 가구원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20대 이하의 연령대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30대, 40대, 50대, 60대는 1%p 이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Ⅴ-19>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성별	남성	48.5	48.6	48.2	48.2
	여성	51.5	51.4	51.8	51.8
연령대	20대이하	39.6	39.0	38.6	37.8
	30대	18.0	18.0	18.2	18.2
	40대	16.9	16.6	16.2	16.1
	50대	11.1	11.7	12.1	12.8
	60세 이상	14.4	14.8	14.9	15.3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나. 가구원의 최종학력 분포

전체 가구원의 최종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에 고등학교 최종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29.8% 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뒤로 대학 졸업 25.2%, 미취학

21.3% 로 높았다. 특히, 2007년에 비해 2010년에 대학졸업자의 비율은 2.4%p 증가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최종학력을 구성함에 있어서 해당교육기관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 한 단계 아래의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미취학의 경우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Ⅴ-20> 가구원의 최종학력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미취학 (안받음)	23.4	21.6	22.3	21.3
초등학교	11.7	11.6	11.3	11.3
중학교	10.7	10.4	10.7	10.5
고등학교	29.7	31.3	29.9	29.8
전문대/ 4년제 대학교	22.8	23.2	24.0	25.2
대학원석사	1.5	1.6	1.7	1.8
대학원박사	0.2	0.3	0.3	0.4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다.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분포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무직을 제외한 종사상지위의 분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07년에 비해 2010년에는 약 2.9%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직/주부/학생 등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7.4%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분포는 임금근로자 25.1%, 일용근로자 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6%, 고용원을 둔 사업주 2.0%, 무급가족종사자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21> 가구원의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 근로자	22.3	23.8	24.4	25.1
일용 근로자	4.5	4.0	4.0	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4	9.3	9.5	9.6
고용원을 둔 사업주	1.9	2.0	1.9	2.0
무급 가족 종사자	1.9	2.0	1.7	1.7
무직 (주부, 학생 포함)	59.9	59.0	56.7	57.2
해당없음, 모름/무응답	0.01	0.04	1.9	0.6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라. 취업 가구원 수

1) 취업 가구원 수 분포

2010년 가구 내에 취업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가 55.7%로 가장 많았고, 2명인 가구는 31.6%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는 1.36명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2007년에 비해 약 0.13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취업자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통계 분석 목적에 따라 무급가족 종사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Ⅴ-22> 취업 가구원수의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명	8.7	8.6	6.9	7.4
1명	63.5	61.1	56.2	55.7
2명	24.3	26.0	31.9	31.6
3명	3.2	3.9	4.3	4.6
4명 이상	0.4	0.5	0.7	0.8
전체평균(명)	1.23 명	1.27 명	1.36 명	1.36 명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가구소득분위별 평균 취업 가구원수 분포

가구소득분위별로 평균 취업 가구원수를 비교하여 봤을 때, 상위소득분위에 있는 가구일수록 취업한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연도별 결과에서 같은 모습을 보였다. 소득 5분위배율에서는 2007년 이후 취업가구원수의 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Ⅴ-23> 가구소득분위별 평균 취업 가구원수 분포

단위(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분위	0.67	0.72	0.88	0.82
2분위	1.09	1.12	1.28	1.22
3분위	1.20	1.28	1.39	1.34
4분위	1.43	1.42	1.47	1.52
5분위	1.55	1.59	1.59	1.69
5q/1q	2.31 배	2.21 배	1.81 배	2.06 배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경상소득 기준 소득분위이며 균등화지수 반영함

Ⅵ. 가구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현황과 주택·자동차 현황, 연간 소비 지출, 자산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 지출 금액은 지출의 특성에 따라 월평균 금액과 연간 금액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은 조사시점 기준 작년 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기초분석보고서에 인용한 수치는 조사년도만을 위한 분석에서는 횡단면 가중치, 연도별 분포에는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했으며, 평균값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결측된 사례는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분석했다.

1. 주택 현황

가. 주택 거주 형태

1) 주택 거주 형태 분포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주택 형태보다 주택 점유 형태나 주택 시가 총액·전월세 보증금을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에서는 단독주택을 1인 소유의 독립된 주택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분류했다. 참고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일반 단독주택과 함께 다가구주택과 영업겸용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정의한다.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건물로 연면적이 660m^2(200평)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점포 용도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부분이 같거나 더 많으면 단독주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연도별 주택 거주 형태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아파트의 비중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단독주택이 31.9%, 연립주택이 14.5%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원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거주형태가 2007년에 비해 2010년에 약 3%p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1> 주택 거주 형태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독주택	%	33.1	31.9	31.4	31.9
	규모(m^2)	76.4	79.1	79.9	78.6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	43.6	44.7	45.4	46.6
	연립주택 %	14.1	15.1	14.8	14.5
	오피스텔 %	3.7	3.6	2.7	2.2
	규모(m^2)	71.0	71.8	74.4	72.8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	2.9	2.9	3.1	2.9
기타	%	2.6	1.8	2.6	1.9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2010년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거주 형태

2010년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거주 형태에서는 1분위 53.4%, 2분위 37.5%, 3분위 27.6%, 4분위 21.3%, 5분위 17.6%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단독주택의 형태에 주거를 주로 하며, 1분위 27.5%, 2분위 35.7%, 3분위 48.4%, 4분위 54.6%, 5분위 67.6%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아파트의 주거 형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의 경우, 1분위 13.6%, 2분위 16.6%, 3분위 16.0%, 5분위 10.6%로 중간 소득분위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 Ⅵ-2> 2010년 가구 소득분위별 주택 거주 형태

단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단독주택	53.4	37.5	27.6	21.3	17.6
아파트	27.5	35.7	48.4	54.6	67.6
연립주택	13.6	16.6	16.4	15.6	10.6
오피스텔 (원룸)	1.1	3.7	3.0	3.3	1.8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2.8	4.1	3.4	2.4	1.3
기타	1.5	2.5	1.3	2.8	1.1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경상소득 기준 소득분위이며 균등화지수 반영함

3) 2010년 종사상지위 가구 유형별 주택 거주 형태

2010년 종사상지위 가구 유형별 주택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가구는 아파트 58.9%로 주된 주택 거주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 19.4%, 연립주택 15.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용근로자 가구는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약 3%p정도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연립주택은 20.0%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는 단독주택이 46.9%로 가장 많은 거주 형태로 나타났다. 고용원을 둔 사업주 가구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 가구나 무직인 가구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주된 거주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추정된 소득분위별 거주주택 형태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종사상지위별 소득수준과 거주주택 형태의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Ⅵ-3> 2010년 종사사지위 가구유형별 주택 거주 형태

단위(%)	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무직 (주부, 학생포함)
단독주택	19.4	34.1	46.9	19.7	41.8	47.4
아파트	58.9	31.1	32.8	58.6	30.6	34.3
연립주택	15.3	20.0	12.4	11.5	10.4	13.9
오피스텔 (원룸)	2.9	8.1	0.8	1.9	6.5	1.6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1.2	3.5	5.7	6.9	10.7	2.0
기타	2.2	3.2	1.4	1.5	0	0.8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나. 주택 점유 형태

1) 거주주택 점유형태 분포

거주주택 점유형태 분포를 살펴보면, 본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자가 > 전세 > 보증부 월세 > 기타 > 무보증 월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이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점유형태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전세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이다. 2010년 거주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55.8%, 전세 2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보증부 월세는 13.1%, 무보증 월세는 1.5%로 나타났다.

<표 Ⅵ-4> 거주주택 점유형태 분포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가	57.8	57.1	55.7	55.9
전세	22.6	23.2	23.8	23.4
보증부 월세	13.4	13.2	12.6	13.1
무보증 월세	2.2	3.2	2.0	1.5
기타	4.1	3.3	6.0	6.1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2010년 가구소득분위별 거주주택 점유형태

2010년 가구소득분위별 거주주택 점유형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자가의 형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분위의 가구가 2분위의 가구보다 자가의 점유형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퇴직 등의 이유로 부동산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본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 자가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위 소득분위 가구의 경우, 월세의 점유형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5> 2010년 가구 소득분위별 거주주택 점유형태

단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가	51.1	50.0	55.0	56.4	61.3
전세	17.0	21.2	26.3	26.0	30.0
보증부 월세	16.6	19.1	12.8	11.8	4.5
무보증 월세	4.7	1.9	1.0	0.5	0.6
기타	10.6	7.9	4.9	5.4	3.7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경상소득 기준 소득분위이며 균등화지수 반영함

3) 2010년 종사상지위 가구유형별 거주주택 점유형태

2010년 종사상지위 가구유형별 거주주택 점유형태에서는 자가의 점유형태가 모든 종사상지위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와 고용원을 둔 사업주에서 각각 65.8%, 60.9%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자가의 점유형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는 자가, 전세, 월세 형태의 점유형태에서 각각 37.2%, 20.5%, 28.9%로 고르게 나타났다.

<표 Ⅵ-6> 2010년 종사상지위 가구유형별 거주주택 점유형태

단위(%)	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무직 (주부, 학생포함)
자가	50.6	37.2	65.8	60.9	71.8	58.0
전세	30.8	20.5	18.8	23.9	7.4	14.4
보증부 월세	11.7	28.9	10.0	12.9	10.9	13.3
무보증 월세	0.8	5.6	1.6	0.5	3.3	3.2
기타	6.2	7.7	3.9	1.8	6.7	11.1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다. 거주주택 가격 및 전월세 비용

거주주택의 가격 및 전월세 비용은 거주주택의 자가, 전월세 보증금, 월세 비용을 나누어 살펴 보았다. 또한 각 항목의 보유 해당가구의 평균과 전체 평균을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전체 평균 금액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가구는 0으로 처리하여 추정하였으므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2010년 재정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시가 평균금액은 전체 가구의 55.7%로, 약 2억 517만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약 6천 281만원으로 36.5%가 해당자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2007년 이후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서 2010년에 약 700만원 정도의 증가폭을 보여 전월세 보증금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세 비용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표 Ⅵ-7> 거주주택 가격 및 전월세 비용 분포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가 주택 시가 총액	전체 평균금액	10996.0	10713.5	10754.6	11434.2
	해당 평균금액	19935.8	18856.5	19425.9	20517.2
	비율	55.2	56.8	55.4	55.7
전월세 보증금	전체 평균금액	1819.0	1879.5	2028.6	2293.1
	해당 평균금액	5070.0	5176.0	5578.3	6281.7
	비율	35.9	36.3	36.4	36.5
월세 비용 (월간)	전체 평균금액	4.3	4.21	4.13	3.9
	해당 평균금액	26.35	26.25	27.9	26.5
	비율	16.4	16.0	14.8	14.7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비율은 전체 가구수에서 해당금액이 있는 가구수의 비율임

라.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

1)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 분포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 관련 조사는 2차년도부터 조사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채수는 3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 졌다. 2010년 분포를 살펴보면,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이 있는 가구는 15.1%로 나타났으며, 보유 가구에서 1채는 90.1%, 2채 7.7%, 3채 1.4%, 4채 0.5%, 5채는 0.3%로 대부분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이후로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의 보유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Ⅵ-8>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 분포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없음		84.8	84.4	84.9
있음		15.2	15.7	15.1
	전체	-	100.0	100.0
	1채	-	92.4	90.1
	2채	-	5.7	7.7
	3채	-	1.4	1.4
	4채	-	0.3	0.5
	5채이상	-	0.3	0.3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 주요 관리 형태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 주요 관리 형태를 살펴보면, 2010년 주로 전세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증부 월세는 18.3%, 무상임대 15.8%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로 2009년에 전세의 관리형태는 약 2%p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 2.5%p 감소하였다. 보증부 월세의 관리 형태 비율은 매년 증가한 반면, 무상임대의 관리 형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 관리 형태는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Ⅵ-9> 거주주택 이외의 보유주택 주요 관리 형태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세	55.3	57.8	55.2
보증부 월세	11.8	14.6	18.3
무보증 월세	2.8	2.8	1.2
무상 임대	19.1	17.2	15.8
빈집	11.0	7.7	8.2
모름/무응답	0.0	0.0	1.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마. 거주주택 주거 환경 만족도

거주주택의 주거 환경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의견(매우: 7.0%, 약간, 46.8%)이 과반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Ⅵ-10> 거주주택 주거 환경 만족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7.0	46.8	36.1	9.1	0.9

주1: 횡단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바. 주택 구입 및 매각

한 해 동안 주택 구입 및 매각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정패널조사에서 주택의 매각 또는 매입을 한 가구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 구입의 경우, 2007년에 구입을 했던 가구의 비율은 4.0%였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6%로 약 1.4%p 감소하였다. 구입 평균 금액은 2010년에 약 2억 3천201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매각을 한 가구는 2010년에 2.3%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2007년에 비해 평균 보유기간이 약 5년 정도 긴 주택을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과 최초 매입금액의 평균 차액은 749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에 비해서는 높은 차익이었으나 2009년에 비해서는 낮은 차익으로 나타났다.

<표 Ⅵ-11> 주택의 구입 및 매각

단위(%, 만원, 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주택 구입	없음		96.0	95.5	96.4	97.4
	있음		4.0	4.5	3.6	2.6
		구입금액	18132.8 만원	19177.7 만원	19935.3 만원	23201.9 만원
주택 매각	없음		97.9	97.5	97.7	97.7
	있음		2.1	2.5	2.3	2.3
		매각금액	15389.9 만원	199885.4 만원	19008.2 만원	20056.9 만원
		보유기간	6.9 년	6.7 년	9.5 년	11.9 년
		최초매입	9381.9 만원	13075.2 만원	12000.9 만원	12827.1 만원
		차액	6128.2 만원	6592.9 만원	7885.6 만원	7492.3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차액은 매각금액에서 최초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평균임

사. 종부세 납부 및 환급

종부세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조사는 2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2차년도 조사에서 종부세 납부금액에 대한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2010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한 가구가 전체의 약 0.8%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납부 금액은 약 8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Ⅵ-12> 종부세 납부 및 환급

단위(%, 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종부세 납부	없음			96.2	98.2	99.2
	있음			3.8	1.8	0.8
		납부금액		-	-	85.3 만원
종부세 환급	없음			66.9	76.5	-
	있음			33.1	23.5	-
		환급금액		194.6 만원	163.3 만원	-
		사용 용도	①	71.8	71.5	-
			②	17.0	11.3	-
			③	-	7.4	-
			④	11.2	9.7	-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1차년도 조사는 종부세 납부 및 환급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음
3: 2, 3차년도 조사에서는 종부세 납부금액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음
4: 4차년도 조사는 종부세 환급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음
5. ① 소비지출 ② 저축 ③ 가계부채 상환 (카드빚 등) ④기타

2. 자동차 보유 현황

가. 자동차 보유 현황

1) 자동차 보유 현황

자동차 보유 현황은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보유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자가용의 경우, 전체적으로 1대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2010년도에 50.7%로 가장 높았다. 2대는 10.3%, 3대 이상은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1대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영업용의 경우, 전체 가구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5% 내외로 상당히 낮았다. 2007년에 비해 2010년에는 영업용 차량이 1대인 가구는 약 1%p 감소하였다.

<표 Ⅵ-13> 자동차 보유 현황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가용	없음	42.7	40.7	38.7	38.0
	1대	50.0	50.2	51.3	50.7
	2대	7.0	8.7	9.3	10.3
	3대 이상	0.4	0.4	0.7	1.1
영업용	없음	94.8	95.4	95.3	95.8
	1대	5.0	4.3	4.4	3.8
	2대	0.2	0.3	0.2	0.4
	3대	0.01	0.00	0.00	0.0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보유 자동차 브랜드명 점유율을 살펴보면 과반이 현대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기아 24.0%, GM대우 11.1%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외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10%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4> 보유 자동차 브랜드명

브랜드명	비율(%)	브랜드명	비율(%)
현대	50.3	포드	0.1
gm대우	11.1	크라이슬러	0.2
기아	24.0	bmw	0.2
쌍용	5.7	벤츠	0.1
르노삼성	7.2	폭스바겐	0.1
토요타(렉서스)	0.4	아우디	0.0
혼다	0.2	푸조	0.2
닛산	0.0	기타	0.2

주1. 횡당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보유자동차의 연식의 경우 평균 2004년, 구입연도 2006년, 구입가격 약 1600만원, 배기량 약 2000cc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5> 보유 자동차 연식/구입년도/구입가격/배기량

연식 (단위: 년)	구입연도 (단위: 년)	구입가격 (단위:만원)	배기량 (단위: cc)
2003.6	2005.5	1633.0	1973.2

주1. 횡당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자동차 유지 비용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및 유류비의 지출을 살펴보면, 2010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한 가구의 비율은 64.1%이며, 납부금액은 평균 74.2 만원으로 조사 되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은 2007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자가용 보유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유류비에서는 보유차량이 있지만 유류비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유류비 종류별 지출금액에서 하나의 가구에서 여러 종류의 유류비 지출이 있을 경우, 각각의 해당 유류비에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유류비 지출이 있는 전체 가구 중 휘발유 지출이 있는 가구는 2010년도에 62.0%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종류의 유류비 지출 비중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16> 자동차 유지 비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동차 보험료 (연간)	없음		39.7	38.3	36.3	35.9
	있음		60.3	61.8	63.7	64.1
		납부금액	70.0 만원	69.4 만원	69.2 만원	74.2 만원
자동차 유류비 (월간)	없음		42.8	37.3	35.4	35.3
	있음		57.2	62.7	64.6	64.7
		휘발유	25.5 만원	25.4 만원	24.6 만원	26.1 만원
		경유	27.8 만원	32.6 만원	32.1 만원	35.7 만원
		LPG	19.8 만원	23.3 만원	27.3 만원	27.8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1차년도 조사에서는 유류비의 세부구분을 하여 설문조사하지 않았으나 설문지상에 세부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변수를 구성하였음

나. 오토바이 보유 현황

1) 오토바이 보유 현황

오토바이 보유 현황을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0년도에 자가용과 영업용 모두 전체적으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각각 전체의 95.6%, 99.7%로 절대 다수로 조사됐다. 그리고 자가용 오토바이의 경우 1대의 보유 비중이 2008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였다. 그 외에는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7> 오토바이 보유 현황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자가용	없음	96.2	96.0	95.6
	1대	3.7	4.0	4.3
	2대	0.03	0.02	0.1
	3대 이상	0.0	0.0	0.0
영업용	없음	99.4	99.7	99.7
	1대	0.5	0.3	0.3
	2대	0.10	0.04	0.06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1차년도 조사에서는 오토바이 보유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하지 않았음

보유한 오토바이의 브랜드의 경우 10대 중 7대가 대림(7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 효성 11.2%, 혼다 5.2% 순이였다. 그 외 브랜드는 2%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표 Ⅵ-18> 보유 오토바이 브랜드명

브랜드명	비율(%)	브랜드명	비율(%)
대림	77.0	야마하	0.3
효성	11.2	카와사키	0.3
혼다	5.2	두카이	0.1
스즈끼	1.5	기타	4.4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보유 오토바이 연식의 경우 평균 2002년, 구입연도는 2004년, 구입 가격은 평균 138만원, 배기량은 116cc 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Ⅵ-19> 보유 오토바이 연식/구입년도/구입가격/배기량

연식 (단위: 년)	구입연도 (단위: 년)	구입가격 (단위:만원)	배기량 (단위: cc)
2002.2	2004.0	138.0	115.9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오토바이 유지 비용

본 조사에서 오토바이 보유비율은 매우 낮게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유지비용에 해당되는 가구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오토바이 보험료를 납부한 가구의 평균 납부금액은 16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07년이후 납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평균 납부금액은 감소하였다.

유류비를 지출한 적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4.7%를 차지하였다. 유류비의 지출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구에서 휘발유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가구의 평균금액은 2008년도를 제외하고 경유보다는 적었다.

<표 Ⅵ-20> 오토바이 유지 비용

단위(%, 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오토바이 보험료 (연간)	없음		98.0	98.0	97.9
	있음		2.0	2.0	2.1
		납부금액	18.7 만원	18.3 만원	16.0 만원
오토바이 유류비 (월간)	없음		95.5	95.6	95.3
	있음		4.5	4.4	4.7
		휘발유	5.3 만원	5.0 만원	4.4 만원
		경유	3.8 만원	6.8 만원	5.2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1차년도 조사에서는 유류비의 세부구분을 하여 설문조사하지 않았지만 설문지상에 세부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변수를 구성하였음

3. 가구 소득 현황

재정패널조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거주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과대표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중치 보정 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소득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조사하고 있어 통계청 및 국제표준에 의한 소득의 구성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가구 소득 구성을 통하여, 월간 경상소득 응답구간과 세부항목의 합계인 경상소득의 분포를 비교하고, 연도별 소득 현황, 그리고 소득 유형별 소득분위 분포를 살펴본다.

가. 가구 소득 구성 비교표

재정패널조사의 소득 구성은 통계청과 OECD의 분류기준에 따라 1차소득(primaty income), 민간소득(private income), 경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구분하였으며, 통계청은 총소득을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퇴직금, 경조비 등)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단, OECD에서 정의하는 총소득은 통계청의 경상소득과 비슷한 개념을 갖는다.

<표 Ⅵ-21> 가구 소득 구성 비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재정패널조사</th><th colspan="2">통계청</th><th colspan="5">OECD</th></tr>
<tr><td rowspan="10">소득</td><td colspan="2">경조사소득, 퇴직금, 기타 소득</td><td colspan="2">경조사소득
폐품매각대금
기타</td><td>비경상소득</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근로소득</td><td colspan="2">근로소득</td><td rowspan="9">경상소득</td><td>wage and salary income</td><td rowspan="4">Primary Income</td><td rowspan="6">Market Income</td><td rowspan="9">Gross Income</td><td rowspan="9">Disposable Income
= 총소득
-사회보험료
분담금
- 조세</td></tr>
<tr><td colspan="2">사업소득</td><td colspan="2">사업 및
부업소득</td><td>Gross Self-employment Income</td></tr>
<tr><td colspan="2">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td><td colspan="2">재산소득</td><td>Realised Property Income</td></tr>
<tr><td colspan="2">연금소득, 퇴직연금 등</td><td rowspan="3">이전소득</td><td rowspan="2">사적</td><td rowspan="2">기업연금 (Occupational Pension)과 기타 사적이전 현금소득</td></tr>
<tr><td rowspan="2">이전소득</td><td>사적
(가구외부에서 받은 생활비 등)</td></tr>
<tr><td>공적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정부지원현금)</td><td>공적</td><td>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현금급여</td><td>-</td></tr>
<tr><td rowspan="3">비소비지출</td><td colspan="2">공적연금보험료</td><td colspan="2">공적연금보험료</td><td rowspan="3"></td><td colspan="4" rowspan="2">사회보험료 분담금</td></tr>
<tr><td colspan="2">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td><td colspan="2">사회보험료</td></tr>
<tr><td colspan="2">조세</td><td colspan="2">조세</td><td colspan="4">소득세</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4">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td></tr>
</table>

주1: 정기적인 사적 이전소득, 즉, 부양금, 양육비, 기타 정기적인 현금소득 등
자료: 박찬용 외(2002), 김승래·임병인(2011) 재인용.

나. 2010년 가구 월간 소득 구간 분포

본 조사에서는 소득과 관련한 문항이 가구 조사표에서 월 평균 경상소득을 조사하는 단답식 문항과 가구원 조사표에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에 한 해 동안의 연간 소득을 조사하고 있다. 2010년 응답한 월 경상소득과 각 항목의 합계로 추정한 경상소득의 가구 월간 소득 구간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월 100만원 미만의 응답자들을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로 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에 약 60% 정도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비율도 2% 이상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추정된 경상소득과 단답식으로 응답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표 Ⅵ-22> 2010년 가구 월간 소득 구간 분포

단위(%)	단답식 응답 경상소득	세부항목 합계 경상소득
100만원 미만	14.8	18.7
100~199만원	19.1	20.0
200~299만원	19.2	19.1
300~399만원	16.3	14.7
400~499만원	10.3	10.2
500~599만원	7.6	6.5
600~699만원	4.3	3.9
700~799만원	2.7	2.6
800~899만원	1.9	1.7
900~999만원	0.9	0.8
1000만원 이상	2.8	2.3
전체	100.0	100.0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다. 유형별 가구 소득

유형별 가구 소득의 구성은 앞서 가구 소득 비교표에 따라 1차소득, 민간소득, 경상소득으로 하였다. 1차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소득은 1차 소득에 사적이전 소득을 포함한 것이다. 경상소득은 민간소득에 공적이전 소득을 포함한 개념이다.

2010년 유형별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차소득은 평균 3540만원, 민간소득은 평균 3714만원으로, 사적이전소득으로 인하여 약 17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상소득은 평균 3777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으로 인하여 약 63만원이 증가하였다.

<표 Ⅵ-23> 유형별 가구 소득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차소득	3073.3	3084.8	3187.7	3540.1
민간소득	3224.3	3231.1	3376.1	3714.7
경상소득	3226.1	3258.8	3416.2	3777.7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라. 2010년 소득 유형별 소득분위 분포 변화

기본적으로 유형별 소득의 구성에서의 주요한 차이는 사적·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소득 유형에 따라 이전소득의 소득지위 변화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1차 소득과 민간소득의 분포 변화

사적 이전소득에 의한 차이로 구분된 1차소득과 민간소득의 이행행렬을 바탕으로 이전소득의 효과를 살펴본다. 우선, 1차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분위를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하였을 때 민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

구의 소득분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확인하면, 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2010년 1차소득과 민간소득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1분위 82.5%, 2분위 77.2%, 3분위 83.3%, 4분위 88.5%, 5분위 95.2%로 조사되었다. 소득지위 이동의 변화의 크기는 하위분위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특히 1차소득에서 1분위에 있었던 가구가 사적 이전소득이 포함된 민간소득에서는 약 17.5%의 소득분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는 하위분위에서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24> 1차소득과 민간소득의 분포 이행행렬

단위(%)		민간소득					총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차소득	1분위	82.5	11.6	3.5	1.6	0.8	100.0
	2분위	13.8	77.2	5.9	2.1	1.0	100.0
	3분위	0.0	10.0	83.3	5.2	1.5	100.0
	4분위	0.0	0.0	7.9	88.5	3.6	100.0
	5분위	0.0	0.0	0.0	4.8	95.2	100.0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소득분위는 균등화지수 반영함

<표 Ⅵ-25> 1차소득과 민간소득의 분포 변화 결과

단위(%)		민간소득			총계
		상승	유지	하락	
1차소득	1분위	17.5	82.5	-	100.0
	2분위	9.0	77.2	13.8	100.0
	3분위	6.7	83.3	10.0	100.0
	4분위	3.6	88.5	7.9	100.0
	5분위	-	95.2	4.8	100.0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소득분위는 균등화지수 반영함

2) 민간소득과 경상소득의 분포 변화

민간소득과 경상소득의 분포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를 소득이동성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민간소득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포함되었을 때, 소득지위의 변화가 그대로 유지된 비율은 1분위 95.4%, 2분위 89.7%, 3분위 93.7%, 4분위 95.2%, 5분위 98.3%로 조사되었다. 1분위에 비해 2분위에서 소득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2분위의 하락한 비율이 5.7%로 높게 나타난 것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Ⅵ-26> 민간소득과 경상소득의 분포 이행행렬

단위(%)		경상소득					총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민간소득	1분위	95.4	4.6	0.0	0.0	0.0	100.0
	2분위	5.7	89.7	4.5	0.1	0.0	100.0
	3분위	0.0	3.7	93.7	2.5	0.1	100.0
	4분위	0.0	0.0	3.2	95.2	1.6	100.0
	5분위	0.0	0.0	0.0	1.7	98.3	100.0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소득분위는 균등화지수 반영함

<표 Ⅵ-27> 민간소득과 경상소득의 분포 변화 결과

단위(%)		경상소득			총계
		상승	유지	하락	
민간소득	1분위	4.6	95.4	-	100.0
	2분위	4.6	89.7	5.7	100.0
	3분위	2.6	93.7	3.7	100.0
	4분위	1.6	95.2	3.2	100.0
	5분위	-	98.3	1.7	100.0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소득분위는 균등화지수 반영함

4. 가계 지출 현황

가.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 및 저축

본 조사의 가구 조사표에는 월평균 소비 지출을 단답식 문항이 있다. 조사가구가 직접 소비하여 지출한 비용의 월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부모나 자녀에 대한 용돈, 경조사비, 대출 이자, 정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세금, 투자 등을 제외하고 직접 소비한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2007년 약 152만원, 2008년 약 177만원, 2009년 약 173만원, 2010년 약 183만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지 않아 변화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다른 연도에 비해 2008년과 2009년의 소비지출 변화의 폭이 상당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28>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 및 저축

단위(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월평균 지출금액	152.1	176.8	173.4	183.1
월평균 저축금액	-	-	-	53.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월평균 저축금액은 4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졌음

나. 2010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간 분포

2010년 단답식으로 응답한 월평균 소비지출과 각 세부항목의 합계로 추정한 총 소비지출의 가구 월간 소비 구간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월 100만원 미만 구간과 월 1000만원 이상 구간의 소비지출 분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2010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분포에서 월 300만원 미만에 속해 있는 가구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9> 2010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간 분포

단위(%)	단답식 응답 소비지출	세부항목합계 총소비 지출
100만원 미만	25.1	29.3
100~199만원	33.7	34.2
200~299만원	23.2	20.5
300~399만원	10.9	9.1
400~499만원	4.5	3.5
500~599만원	1.4	1.6
600~699만원	0.5	0.7
700~799만원	0.3	0.2
800~899만원	0.2	0.3
900~999만원	0.1	0.2
1000만원 이상	0.1	0.5
전체	100.0	100.0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다. 2010년 가구 월간 지출 항목 현황

가구의 소비 중 월간으로 지출되는 항목은 주거비, 식료품비, 주류비, 담배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등이 포함된다. 2010년 가구 월간 지출 금액 중에서 식료품비의 지출이 가장 큰 금액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세부지출항목으로는 식료품구입비 41.46만원, 외식비 15.34만원, 휴대폰 통화료 10.28만원, 공공교통비 6.31만원 순으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다른 세부항목에 비해 식료품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30> 2010년 가계 월간 지출 현황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대분류	기준	소분류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주거비	월간	전기료	99.2	4.43	4.40
		수도료	94.1	1.76	1.66
		도시가스요금	77.0	6.25	4.81
		난방용 유류비	26.1	8.07	2.10
		연탄	1.8	4.72	0.08
		LPG	19.8	2.26	0.45
		기타	35.8	7.20	2.58
		소계	99.4	16.19	16.08
식료품비	월간	식료품구입비	99.4	41.70	41.46
		외식비	80.5	19.07	15.34
		소계	99.7	56.97	56.80
주류비	월간	맥주, 소주, 양주	40.1	3.66	1.47
		기타 주류	15.5	2.13	0.33
		소계	42.4	4.24	1.80
담배구입비	월간	소계	35.3	13.64	0.21
교통비	월간	공공교통비	84.3	7.49	6.31
		차량유지비	61.9	8.04	4.98
		소계	95.9	11.78	11.29
통신비	월간	인터넷	73.9	2.96	2.18
		집전화 통화료	66.5	1.56	1.04
		휴대폰 통화료	93.1	11.05	10.28
		유료방송 시청료	68.2	1.03	0.71
		기타	0.2	2.30	0.005
		소계	99.3	14.30	14.21
문화생활비	월간	서적/음반 구입비	48.0	4.67	2.24
		공연/영화 관람료	42.9	2.86	1.23
		경륜/경정/경마	0.1	5.99	0.006
		복권 구입	14.4	1.95	0.28
		신문/잡지 구독	18.8	1.61	0.30
		소계	63.2	6.42	4.06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조사표에서 천원 단위로 조사된 항목(주거비, 주류비, 담배구입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등)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만원 단위로 재계산함
3: 해당 가구의 평균을 구할 경우에는 각 항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출함

라. 2010년 가구 연간 지출 항목 현황

가구의 소비 중 연간으로 지출되는 항목에는 가전제품구입비, 통신장비구입비, 가구구입비, 의류잡화구입비, 화장품비, 여행레저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혼인장례이사비, 기부금, 가사도우미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2010년 연간 지출 항목 중에서 전체가구 기준으로 공교육비·사교육비, 의류/잡화 구입비, 혼인장례이사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으로는 가구원 사교육비 약 192만원, 공교육비 등록금 약 168만원, 의류구입 약 101만원의 순으로 다른 연간 지출 세부항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31> 2010년 가계 연간 지출 현황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대분류	기준	소분류	비율(%)	평균 금액 (만원)	
가전제품구입비	연간	TV	7.8	130.3	10.22
		냉장고, 김치냉장고	7.7	126.7	9.76
		세탁기	4.1	68.04	2.79
		에어컨	2.4	129.52	3.04
		전자레인지	1.9	20.12	0.38
		기타가전제품	8.6	42.96	3.71
		소계	24.7	120.88	29.91
통신장비구입비	연간	휴대폰	13.4	52.15	6.98
		컴퓨터	5.5	95.42	5.29
		기타 장비	1.9	26.35	0.51
		소계	18.0	70.84	12.79
가구구입비	연간	가구	6.8	187.30	12.78
		악기	1.6	44.96	0.73
		소계	8.1	166.73	13.51
의류구입비	연간	의류	95.0	106.54	101.19
		잡화	74.2	41.51	30.80
		장신구	24.3	40.01	9.70
		소계	95.5	148.43	141.69
화장품비	연간	화장품	89.3	36.69	32.76
		이미용비	97.7	29.35	28.66
		소계	98.6	62.27	61.42
여행레저비	연간	여행 및 숙박료	46.0	128.77	59.27
		기타 레저장비구입	6.2	92.33	5.68
		소계	46.8	138.72	64.95

교육비	연간	등록금 등 공교육비	36.5	460.55	168.24
		급식비	28.9	80.88	23.41
		기타 공교육비	22.4	46.16	10.38
		공교육비 소계	44.4	452.51	201.48
		가구원 사교육비	33.7	571.24	192.40
		비가구원 공교육비	0.5	1255.27	5.84
		비가구원 사교육비	0.3	601.53	1.94
		소계	48.2	830.09	400.98
보건의료비	연간	한약재	15.6	59.71	9.30
		성형수술비	0.9	131.75	1.11
		치아교정비	31.0	139.82	43.36
		입원치료비	16.1	217.40	34.90
		외래진료비	85.6	31.09	26.62
		약제비	87.2	25.88	22.58
		소계	91.7	150.39	137.87
혼인장례이사비	연간	혼인비용	2.6	2090.06	54.17
		혼인 주택구입	0.3	8069.16	23.31
		혼인 전세보증금	0.8	7399.06	59.06
		장례비용	1.2	990.45	11.55
		이사비용	9.4	154.12	14.43
		소계	12.6	1174.47	148.12
기부금	연간	소계	34.7	151.92	52.67
가사도우미	연간	소계	1.8	276.79	5.02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해당 가구의 평균을 구할 경우에는 각 항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출함

마. 의료보험 대상 확대 요구 항목

2011년 의료보험 대상 확대에 대해서 치아교정 등 치과진료가 53.9%로 과반이였다. 그 다음 CT 및 MRI 촬영비였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5%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표 Ⅵ-32> 2010년 의료보험 대상 확대 요구 항목(%)

보약 등 한방 진료	ct 및 mri 촬영비	치아 교정 등 치과진료	라식/라섹 등 안과진료	성형수술	기타
4.65	37.01	53.9	1.52	0.51	2.41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5.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가. 경조사 지출 및 소득

1) 경조사 지출 및 소득 분포

경조사 지출 및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경조사지출이 있었던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중 매년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경조사 지출 연간 평균 금액은 약 86.7 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경조사 소득이 있었던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중 5.7%로 과거 조사에서 보다는 다소 적은 비율이었으나, 약 989.8만원으로 과거 보다 많은 경조사 소득이 발생하였다.

<표 Ⅵ-33> 경조사 지출 및 소득 분포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경조사 지출	없음		13.7	11.2	11.0	12.6
	있음		86.3	88.8	89.0	83.4
		평균금액	90.1 만원	81.7 만원	84.62 만원	86.71 만원
경조사 소득	없음		92.5	92.2	93.0	94.3
	있음		7.5	7.8	7.0	5.7
		평균금액	671.7 만원	598.6 만원	807.4 만원	989.8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가구 소득분위별 경조사 지출 및 소득

2010년도 가구 소득분위별 경조사 지출 및 소득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경조사 지출에서는 1분위 약 36만원, 2분위 약 52만원, 3분위 약 75만원, 4분위 약 86만원, 5분위 약 12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지출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경조사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경조사 소득의 금액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34> 2010년 가구 소득분위별 경조사 지출 및 소득

단위(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조사 지출	36.5	52.3	75.4	86.6	127.9
경조사 소득	25.4	42.2	36.8	67.4	109.1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경상소득 기준 소득분위이며 균등화지수 반영함

나. 이전 지출 및 소득 분포

3차년도 조사 이후 가구내 이전 문항은 '금전이나 재산을 주고 받은 경우'로 한정했고, 용돈이나 학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1차~2차년도 조사와는 측정 기준[9]이 달라졌다. 따라서 해당되는 가구의 비율이 대폭 줄어 들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가구내 이전은 전체 가구 중 0.08%만이 이루어 졌으며, 이전된 금액 평균 4908만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보다 상당히 적은 규모로 조사되었다.

9) - 1차년도, 2차년도 문항 : "지난 한 해 동안 귀 가구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간에 용돈이나 학비 지원 용도로 주거나 받은 비용이 있습니까? 단, 함께 사는 부부간에 주고받은 용돈과 생활비는 제외합니다."
- 3차년도 이후 문항 : "지난 한 해 동안 귀 가구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간에 금전이나 재산을 주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간에 주고 받은 용돈과 학비는 제외합니다."

타가구로 이전 지출한 비율은 전체 가구 중 2007년 27.8%, 2008년 39.6%, 2009년 37.1%, 2010년 34.4%로 나타나 2008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지출 금액은 이와는 달리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가구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은 전체 가구 중 2007년 16.2%, 2008년 29.8%, 2009년 25.9%, 2010년 25.3%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소득금액은 약 437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많은 이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35> 가구 이전 지출 및 소득 분포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구내 이전	없음		64.6	48.1	98.9	99.9
	있음		35.4	51.9	1.1	0.1
		평균금액	708.5 만원	943.8 만원	1202.6 만원	4908.3 만원
타가구 이전 지출	없음		72.2	60.4	62.9	65.6
	있음		27.8	39.6	37.1	34.4
		평균금액	458.6 만원	285.9 만원	272.9 만원	324.5 만원
타가구 이전 소득	없음		83.8	70.2	74.1	74.7
	있음		16.2	29.8	25.9	25.3
		평균금액	504.8 만원	351.8 만원	375.5 만원	437.8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1차~2차년도 가구 내 이전 문항 - 용돈, 학비 등의 목적
**: 3차년도 이후 가구 내 이전 문항 - 금전이나 재산 등의 목적(용돈, 학비 제외)

다. 2010년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수급관계

재정패널조사는 타가구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과 타가구로 지출한 이전지출에서 수급자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1) 가구주

2010년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수급관계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타가구로부터 가구주가 받은 이전소득에서 자녀인 경우가 전체 중 84.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모 5.7%, 기타친인척 4.4%, 배우자의 부모 2.0%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금액에서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2536.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의 조부모 743.6만원, 비혈연 603.8만원, 부모 509.1만원 순으로 많은 금액의 이전소득이 발생하였다. 가구주가 타가구로 지출한 이전지출에서는, 가구주가 부모에게 지출한 비율이 전체의 47.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배우자의 부모 20.9%, 기타친인척 11.2%, 손자녀 11.1%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평균금액에서는 배우자로 지출한 금액이 1892.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1265.5만원, 비혈연 344.5만원, 부모 246.1만원 순이었다. 또한 이혼한 전 배우자의 경우에는 수급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Ⅵ-36> 2010년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수급관계(가구주)

타가구 이전지출			해당 가구원	타가구 이전소득		
평균 금액 (만원)	비율 (%)	관계		관계	비율 (%)	평균 금액 (만원)
299.6	0.6	①	← 가구주 ←	①	0.3	282.2
118.6	2.7	②		②	0.2	743.6
246.1	47.3	③		③	5.7	509.1
146.0	20.9	④		④	2.0	382.0
1265.5	4.9	⑤		⑤	84.1	209.2
36.5	11.1	⑥		⑥	0.5	107.2
1892.2	0.6	⑦		⑦	1.2	2536.5
28.0	11.2	⑧		⑧	4.4	258.1
344.5	0.7	⑨		⑨	1.7	603.8
-	-	⑩		⑩	-	-
235.7	100	소 계			100	266.6

주1: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①조부모 ②배우자의 조부모 ③부모 ④배우자의 부모 ⑤자녀 ⑥ 손자녀 ⑦배우자 ⑧기타친인척 ⑨비혈연 ⑩이혼한 전 배우자
3: 연간평균금액임

2)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2010년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수급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배우자가 타가구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에서는 자녀로부터 받은 경우가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배우자의 부모 8.9%, 부모 6.0%, 기타친인척 5.3%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평균금액에서는 조부모가 505.1만원, 배우자의 부모가 380.8만원, 자녀가 184.1만원, 기타친인척이 168.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배우자가 타가구로 지출한 이전지출에서는 부모인 경우가 42.9%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으며, 배우자의 부모도 38.2%로 근소하게 나타났다. 연간 평균금액에서는 자녀 403.5만원, 배우자의 조부모 178.2만원, 배우자의 부모 170.8만원, 부모 161.8만원 순으로 많은 지출금액을 나타냈다. 또한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이전지출과 이전 소득 금액은 4차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Ⅵ-37> 2010년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수급관계(가구주의 배우자)

타가구 이전지출			해당 가구원	타가구 이전소득		
평균 금액 (만원)	비율 (%)	관계		관계	비율 (%)	평균 금액 (만원)
113.4	0.9	①	← 가구주의 배우자 →	①	1.1	505.1
178.2	3.7	②		②	1.4	118.2
161.8	42.9	③		③	6.0	182.1
170.8	38.2	④		④	8.9	380.8
403.5	2.5	⑤		⑤	76.8	184.1
36.4	3.7	⑥		⑥	0.1	120.0
0.0	0.0	⑦		⑦	0.0	0.0
61.1	8.3	⑧		⑧	5.3	168.3
0.0	0.0	⑨		⑨	0.3	30.0
-	-	⑩		⑩	-	-
158.8	100	소 계			100	202.9

주1: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①조부모 ②배우자의 조부모 ③부모 ④배우자의 부모 ⑤자녀 ⑥ 손자녀 ⑦배우자 ⑧기타친인척 ⑨비혈연 ⑩이혼한 전 배우자
3: 연간평균금액임

라. 증여 및 상속

타가구로부터 받은 상속에 대한 조사는 3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졌으며, 시점은 3차년도 조사는 '일생동안', 4차년도 조사는 '작년 한 해'로 조사하였다. 한편 타가구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문항은 4차년도 조사에서부터 이루어 졌으며, 시점은 '일생동안'이다.

3차년도 조사에서 한번이라도 상속을 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전체 중 10.7%였으며, 상속 당시의 금액은 1억 680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 금액은 일생동안이 시점이므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4차년도 조사에서는 2010년 상속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0.9% 였으며, 약 8039만원으로 나타났다.

4차년도 조사에서 한번이라도 증여를 받은 적인 있는 가구는 전체 중 8.03% 였으며, 증여 당시의 금액은 1억 468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시점이 일생동안이므로 해석상 유의하여야 한다.

<표 Ⅵ-38> 가구 상속 및 증여

단위(%, 만원)			3차년도*	4차년도**
상속	없음		89.3	99.1
	있음		10.7	0.9
		평균금액	10680.8 만원	8039.2 만원
증여	없음		-	92.0
	있음		-	8.0
		평균금액	-	14684.0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3차년도 상속은 일생동안 기준의 조사문항임
**: 4차년도 상속은 작년한해(2010년), 증여는 일생동안 기준의 조사문항임

6. 복지현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현황

본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조사하였다. 매년 그 대상 기준이 달라지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2008년 월 1,265,848 만원 이하, 2009년 월 1,326,609원 이하, 2010년은 1,363,091원 이하가 수급 대상 가구 이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전체 가구 중 2007년 4.4%, 2008년 4.1%, 2009년 4.4%, 2010년 4.4%로 조사되었고, 수급 가구 비율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평균 금액은 약 401.7 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3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모름/무응답	0.0	0.0	0.03	0.0
없음	95.6	95.9	95.6	95.6
있음	4.4	4.1	4.4	4.4
평균금액	388.2 만원	406.9 만원	396.8 만원	401.7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2010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현황

2010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무직 가구(무급 가족종사자 포함)가 전체 해당가구 중 약 66.4%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근로자 15.8%, 임금근로자 11.5% 순으로 수급 받은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금액에서 평균 임금근로자는 약 322만원, 일용근로자는 약 453만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약 275 만원,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약 574 만원, 무직 가구는 약 426 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40> 2010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현황

단위(%, 만원)		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무직
수급 비율	(100)	11.5	15.9	4.7	0.6	0.01	66.4
	평균금액	322.18	453.36	274.94	574.80	480.00	426.27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비율은 전체 해당가구 중 종사상지위별 해당가구 임.

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1) 4차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조사대상

4차년도 조사부터 새로 조사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2009년과 2010년에 수급한 대상을 모두 조사하기 위하여 수급당시의 동거가족 여부를 조사한 후, 가구원 여부를 조사하여 가족 내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를 모두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0년 수급 가족 중 가구원인 경우는 2010년에 함께 살았고, 함께 사는 기간 동안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받은 가족 중 6개월 이상 함께 산 '가구원'에 해당하며, 비가구원인 경우에는 2010년에 함께 살았고, 함께 사는 기간 동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았지만, 6개월 미만 함께 산 '비가구원'에 해당된다.

2009년 수급 가족 중 가구원인 경우는 2009년에 함께 살았고, 2009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가족 중 2010년에 6개월 이상 함께 산 '가구원'에 해당되며, 비가구원인 경우는 2009년에 함께 살았고, 2009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가족 중 2010년에 6개월 미만 함께 산 '비가구원'에 해당된다.

<표 Ⅵ-41> 4차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조사대상

	2010년 수급자 조사	2009년 수급자 조사
가구원 조사	2010년에 함께 살았고, 함께 사는 기간 동안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받은 가족 중 6개월 이상 함께 산 '가구원'에 해당	2009년에 함께 살았고, 2009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가족 중 2010년에 6개월 이상 함께 산 '가구원'에 해당
비가구원 조사	2010년에 함께 살았고, 함께 사는 기간 동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았지만, 6개월 미만 함께 산 '비가구원'에 해당	2009년에 함께 살았고, 2009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가족 중 2010년에 6개월 미만 함께 산 '비가구원'에 해당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 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 수급 서비스의 형태는 재가급여가 각각 57.3%, 62.3%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시설급여는 각각 35.7%, 27.7%로 나타났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주로 재가급여의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0)]

<표 Ⅵ-42>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현황

단위(%)	2009년	2010년
재가급여	57.3	62.3
시설급여	35.8	27.7
특별현금급여	6.9	10.0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2009년 가구원 여부는 2010년 6개월 동거 기준임
3: 한 가구에서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받은 경우 모두 포함함

다.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4차년도 부터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수급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2010년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9.9%로, 2008년, 2009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세부 수급 형태를 살펴보면, 보육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체 가구 중 4.7%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비 2.5%, 급식비 2.4% 순으로 조사되었다.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6.11)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2009년 시설 29%, 재가 71%였으며, 2010년에는 시설 33%, 재가 67%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표 Ⅵ-43>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없음		97.2	95.8	90.2
있음		2.8	4.2	9.9
	보육비	-	-	4.7
	교육비	-	-	2.5
	급식비	-	-	2.4
	출산축하	-	-	0.4
	다자녀지원	-	-	0.5
	기타	-	-	0.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2개 이상 항목 수급가구 포함한 결과임

7. 기타 환급금 및 보조금

2차년도 부터 기타 정부 환급금 및 보조금을 가구 조사표에서 조사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환급금 및 보조금의 형태도 차이가 발생하여 조사표의 구조도 변화가 있었다. 2차년도에서는 유가환급금만을 조사하였으며, 3차년도에서는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 유가보조금 등을 조사하였다. 4차년도에는 유가환급금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이를 제외한 기타 정부 환급금 및 보조금을 조사하였다.

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었다. 이에 맞추어 재정패널조사 3차년도 조사부터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수급금액 뿐만아니라, 사용용도, 소비지출항목, 금액 만족도, 지급절차 등 수급 후의 가계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수급자의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4%로

증가하였으며, 근로장려금을 수급 후 사용한 용도에서는 소비지출에서의 비율이 76.8%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Ⅵ-44>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만원)		2009년	2010년
없음		98.6	95.6
있음		1.4	4.4
	평균금액	86.6 만원	86.3 만원
사용 용도 (100)	소비	84.8	76.8
	저축	8.7	10.7
	부채상환	1.8	12.5
	기타	4.6	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

1)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은 매년 2월에 지급이 되며, 전년도의 귀속소득에 대한 세액의 환급금이다.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은 2008년 귀속소득에 대한 것이며, 2010년은 2009년 귀속에 대한 금액이다.

2010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26.0%로 전년도에 비해 약 3%p 증가하였다. 그러나 환급 평균 금액은 약 6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적었다.

2010년 환급을 받은 가구의 환급금 사용용도에서는 소비지출에 사용한 가구가 전체 가구 중 82.4%로 상당히 많이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2009년과 유사하였다.

<표 Ⅵ-45>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 수급 현황

단위(%, 만원)		2009년	2010년
없음		76.9	74.0
있음		23.1	26.0
	평균금액	79.4 만원	68.1 만원
사용 용도 (100)	소비	83.0	82.4
	저축	9.0	8.0
	부채상환	3.4	2.5
	기타	4.6	7.1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종합소득세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매년 5~6월에 지급되며,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환급금이다. 2010년에는 환급금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2.6%로 전년도에 비해 약 1%p 증가하였다. 평균 환급금액은 62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약 2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용도는 소비지출에서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46>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급 현황

단위(%, 만원)		2009년	2010년
없음		98.4	97.4
있음		1.6	2.6
	평균금액	41.5 만원	62.0 만원
사용용도(100)	소비	82.4	76.5
	저축	12.4	5.5
	부채상환	0.0	5.8
	기타	5.2	12.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다.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2006년 6월의 기간 동안 시행된 경유·LPG 등에 부과되는 유류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데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동 기간 중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을 말한다. 이에 지급대상자는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을 보유한 운수사업자 혹은 연료비를 부담한 자 이다.

2010년 수급자는 전체 가구 중 1.5%이며 2009년에 비해 약 1%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금액은 약 3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70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보조금 수급 후 사용용도로는 소비지출이 73.6%, 저축 4.6%, 부채상환 8.7%, 기타 13.1% 로, 소비지출로의 사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조금 수령절차에 대해 모든 차수에 걸쳐 간편하다는 의견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47> 유가보조금 수급 현황

단위(%, 만원)		2009년	2010년
없음		98.4	98.5
있음		1.6	1.5
	금액	300.3 만원	370.5 만원
사용 용도 (100)	소비	89.0	73.7
	저축	3.2	4.6
	부채상환	5.4	8.7
	기타	2.4	13.1
수령 절차 (100)	매우간편	18.7	14.0
	대체로간편	55.1	48.9
	보통	17.7	31.7
	다소불편	8.5	5.5
	매우불편	-	-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8. 가구 자산 및 부채

본 절에서는 1차년도 조사부터 4차년도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 및 부채의 유형에 대한 조사표의 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 결과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자산 조사항목에서 1차년도 조사에서는 '저축성 · 연금성 보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동산 자산 조사항목에서는 전월세와 관련한 항목에서 좀 더 세분화된 조사가 1차년도 이후에 이루어져 결과를 해석함에 유의해야 한다. 부채관련 항목에서는 3차년도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외'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다.

소득분위는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여 순위를 부여하였으며, 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소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구규모에 따른 가구간의 차이를 균등화 하기위하여 제곱근지수($\sqrt{n}$, Square-root)를 사용하여 표준화하였다. 이 외의 'OECD Oxford 지수', 'OECD Modified 지수' 등이 존재하며, 한국에서는 빈곤 측정을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OECD의 기준안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균등화 지수가 존재한다[11]. 본고에서 사용하는 제곱근 지수는 자녀수와 성인수의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에서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계산상의 편리성 및 통계청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제곱근 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였다.

가. 자산 및 부채 유형별 분포

가구의 자산 및 부채 유형의 소득분위별 결과에서 가구의 총 자산은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의 총합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항목별로 항목무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즉,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중 하나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제대로 된 가구의 총자산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의한 평균값인 것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표에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합산하여 도출한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한다.

전반적으로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연도별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다소 차이가 있다. 1분위의 자산 및 부채 유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부동산자산은 2008년에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의 명목 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순자산의 경우 2008년에 감소하였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동산 자산에 의한 총자산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며, 2009년도에 다시 2007년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분위의 결과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2007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1분위의 결과와 비슷하나, 금융자산에서는 2008년에 다소 감소한 후 2009년부터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자산의 규모에 영향을 주었으며, 부채 또한 비슷한 패턴을 보여 순자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분위 결과에서, 부동산자산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금융자

11) 강성진(2010),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2010.03.

산은 지속적으로 명목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은 2008년에 감소하였으나 부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동산 자산의 규모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4분위의 결과에는, 부동산자산은 2008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자산은 2008년에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2007년도 수준을 회복하여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명목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자산의 영향으로 순자산 명목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5분위의 결과에서는 4분위에서와 같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2008년 이후로 감소하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명목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총자산으로 인하여 순자산의 명목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각 자산항목의 명목 금액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부채보다 총자산의 규모에 따라 증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산의 분위가 아닌 소득의 분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하위소득에서도 자산의 규모가 높은 편이었다. 소득분위에 따라 각 항목의 절대적 규모의 구분은 명확히 나타났으며, 상위분위일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Ⅵ-48> 자산 및 부채 유형별 분포

단위(%,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금융자산	805.8 (8.8)	837.0 (9.2)	979.5 (9.1)	1161.5 (10.0)	1114.2 (8.6)	1166.4 (8.3)	1200.0 (9.2)	1253.5 (9.0)	1505.7 (9.0)	1574.2 (9.6)	1786.7 (9.6)	2066.6 (10.2)	2642.7 (11.9)	2399.7 (10.5)	2769.9 (11.8)	3975.7 (15.5)	5439.0 (12.8)	5626.8 (13.1)	6372.8 (14.1)	7259.0 (14.1)
부동산자산	8307.0 (90.7)	8264.6 (90.5)	9798.8 (90.6)	10290.9 (88.5)	11782.0 (91.1)	12748.3 (90.6)	11652.9 (89.7)	12661.8 (90.6)	15091.7 (90.5)	14728.3 (89.8)	16859.8 (90.1)	18003.1 (89.1)	18993.2 (85.8)	20416.2 (89.0)	20536.2 (87.4)	21868.2 (85.1)	36113.6 (85.2)	36877.8 (85.9)	38431.5 (85.3)	43722.5 (85.1)
기타자산	41.1 (0.4)	32.0 (0.4)	40.4 (0.4)	178.0 (1.5)	33.8 (0.3)	160.8 (1.1)	144.8 (1.1)	88.0 (0.6)	79.5 (0.5)	94.3 (0.6)	59.4 (0.3)	146.6 (0.7)	488.5 (2.2)	129.8 (0.6)	191.0 (0.8)	147.9 (0.6)	823.1 (1.9)	410.6 (1.0)	270.9 (0.6)	377.3 (0.7)
총자산	9153.9 (100)	9133.6 (100)	10818.7 (100)	11634.7 (100)	12930.0 (100)	14075.5 (100)	12997.7 (100)	13970.8 (100)	16676.9 (100)	16396.8 (100)	18705.9 (100)	20197.2 (100)	22124.4 (100)	22945.6 (100)	23497.1 (100)	25694.1 (100)	42375.6 (100)	42915.2 (100)	45075.1 (100)	51366.3 (100)
부채	1572.4	1821.0	2020.6	2002.2	2349.3	2576.7	2165.3	2238.2	2674.3	2977.9	3222.1	3483.3	3560.2	4258.0	4017.4	4060.6	6946.0	7024.5	7006.6	8942.6
순자산	7581.4	7312.6	8798.1	9689.5	10580.6	11498.8	10832.4	11726.7	14022.6	13418.9	15483.8	16791.8	18564.2	18687.6	19479.7	21668.8	35429.6	35890.7	38068.5	42727.6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 사용
2: 명목 금액임
3: 기타 자산에는 보유회원권, 농기계 및 가축, 선박 및 건설중장비, 기타자산을 대상으로 함

나. 금융자산 원천별 분포

금융자산 원천별 비중을 가구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결과 중, 금융자산의 원천은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펀드가입금액, 채권보유금액, 주식보유금액, 저축성·연금성 보험, 빌려준 돈, 기타 금융자산, 주택마련저축 및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단, 1차년도의 경우 저축성·연금성 보험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1분위에서는 전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2010년 주식에 대한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약 2.5%p 감소하였다. 빌려준 돈의 경우 2007년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10년에는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적금의 영향으로 총 금융자산의 명목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분위에서는 1분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적금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성·연금성 보험의 비중이 1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총 금융자산의 명목 금액은 2008년을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분위에서는 예적금의 비중이 하위분위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신 펀드가입금액, 주식보유금액과 저축성·연금성 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적금 비중은 2009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가입금액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주식보유금액은 2009년과 2010년에 전녀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3분위에서의 총 금융자산의 명목 금액도 예적금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서는 예적금의 비중이 50%대로 다른 분위에 비해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펀드가입금액, 주식보유금액, 저축성·연금성 보험 등 예적금에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5분위에서는 주식보유금액이 다른 분위에 비해 금융자산 원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0년에는 4분위에서 기타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대값이 222,212만원인 가구가 존재하여 그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산에 대한 분위가 아닌 소득의 분위로 구분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값을 제외하였을 때에는 그 비중의 정도가 예년과 비슷하였다.

<표 Ⅵ-49> 금융자산 원천별 분포

단위(%,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①예적금	585.7 (72.7)	583.6 (69.7)	662.0 (67.6)	874.1 (75.3)	814.1 (73.1)	776.5 (66.6)	808.7 (67.4)	919.9 (73.4)	963.0 (64.0)	1025.1 (65.1)	1049.9 (58.8)	1335.2 (64.6)	1441.6 (54.6)	1324.1 (55.2)	1550.9 (56.0)	2011.3 (50.6)	2706.3 (49.8)	2863.9 (50.9)	3190.3 (50.1)	4154.4 (57.2)
②펀드	12.1 (1.5)	34.1 (4.1)	37.0 (3.8)	37.2 (3.2)	48.8 (4.4)	67.1 (5.8)	41.6 (3.5)	45.4 (3.6)	177.7 (11.8)	162.3 (10.3)	160.6 (9.0)	148.6 (7.2)	305.5 (11.6)	238.8 (10.0)	253.2 (9.1)	297.3 (7.5)	829.4 (15.2)	875.1 (15.6)	789.3 (12.4)	590.1 (8.1)
③채권	0 (0.0)	0 (0.0)	0 (0.0)	0 (0.0)	6.6 (0.6)	1.7 (0.1)	6.9 (0.6)	0.8 (0.1)	0 (0.0)	4.5 (0.3)	3.2 (0.2)	15.8 (0.8)	5.8 (0.2)	5.9 (0.2)	26.2 (0.9)	117.6 (3.0)	50.9 (0.9)	8.8 (0.2)	39.5 (0.6)	34.2 (0.5)
④주식	46.6 (5.8)	81.7 (9.8)	82.6 (8.4)	80.2 (6.9)	75.6 (6.8)	50.7 (4.3)	55.5 (4.6)	73.0 (5.8)	75.5 (5.0)	108.6 (6.9)	94.5 (5.3)	158.9 (7.7)	299.4 (11.3)	224.4 (9.4)	223.7 (8.1)	316.6 (8.0)	794.0 (14.6)	757.1 (13.5)	922.8 (14.5)	961.1 (13.2)
⑤보험	-	71.3 (8.5)	99.1 (10.1)	101.0 (8.7)	-	138.8 (11.9)	172.6 (14.4)	135.6 (10.8)	-	227.1 (14.4)	310.4 (17.4)	307.8 (14.9)	-	460.4 (19.2)	419.2 (15.1)	525.3 (13.2)	-	805.0 (14.3)	1019.8 (16.0)	1121.5 (15.4)
빌려준 돈	113.2 (14.0)	68.2 (8.1)	86.8 (8.9)	26.2 (2.3)	62.5 (5.6)	119.6 (10.3)	87.2 (7.3)	54.7 (4.4)	109.7 (7.3)	46.6 (3.0)	120.0 (6.7)	56.7 (2.7)	183.5 (6.9)	99.2 (4.1)	193.3 (7.0)	247.7 (6.2)	278.5 (5.1)	311.0 (5.5)	250.3 (3.9)	265.4 (3.7)
기타	45.4 (5.6)	2.4 (0.3)	6.76 (0.7)	34.2 (2.9)	93.9 (8.4)	13.2 (1.1)	20.5 (1.7)	4.3 (0.3)	148.0 (9.8)	3.4 (0.2)	32.8 (1.8)	23.5 (1.1)	349.0 (13.2)	37.0 (1.5)	71.1 (2.6)	423.3* (10.6)	670.9 (12.3)	12.7 (0.2)	102.5 (1.6)	56.3 (0.8)
주택마련 저축/펀드	5.7 (0.7)	3.4 (0.4)	5.4 (0.5)	8.6 (0.7)	15.0 (1.3)	8.1 (0.7)	9.5 (0.8)	19.7 (1.6)	40.1 (2.7)	17.8 (1.1)	17.5 (1.0)	20.1 (1..0)	73.1 (2.8)	36.7 (1.5)	36.9 (1.3)	36.6 (0.9)	139.6 (2.6)	55.9 (1.0)	64.0 (1.0)	75.9 (1.0)
총 금융자산	805.8 (100)	837.0 (100)	979.5 (100)	1161.5 (100)	1114.2 (100)	1166.4 (100)	1200.0 (100)	1253.5 (100)	1505.7 (100)	1574.2 (100)	1786.7 (100)	2066.6 (100)	2642.7 (100)	2399.7 (100)	2769.9 (100)	3975.7 (100)	5439.0 (100)	5626.8 (100)	6372.8 (100)	7259.0 (1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 사용
2: ①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②펀드가입금액 ③채권보유금액 ④주식보유금액 ⑤저축성·연금성보험
3: 명목 금액임
*: 최대값 222212만원, 중위값: 0원

다. 부동산 자산 원천별 분포

부동산 자산의 원천별 구성의 결과에서, 부동산 자산의 원천은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거주 주택 전월세 보증금, 비거주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비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주택 외 보유 부동산으로 구성된다. 1차년도에서는 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 만을 조사하였고 2차년도 이후와 같이 세분화된 전월세 항목을 조사하지 않았다.

1분위에서는 거주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이 부동산 자산의 원천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 주택 이외의 보유주택과 보유 부동산의 비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 부동산 자산의 명목 금액은 2008년에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에서는 1분위에서와 같이, 거주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주택 외 보유 부동산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이후로 거주주택 시가 총액의 비중이 2007년과 200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거주주택 외의 보유 부동산의 비율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전월세의 구성에서는 1분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주택 외 보유 부동산의 구성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동산 자산의 경우 2009년에 명목 금액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3분위에서는 거주 주택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200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과 주택 외 보유 부동산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구성의 비중이 전체 중에서 약 30% 정도였으며, 총 부동산의 명목 금액은 2008년을 제외하고 증가하였다.

4분위에서는 거주 주택의 시가총액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폭은 2007년과 2008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3분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과 주택 외 보유 부동산의 비중이 약 3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외 보유 부동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은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총 부동산 자산의 명목 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5분위에서는 거주 주택 시가총액의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분포

를 보이고 있다. 그 비중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 반면, 주택 외 보유 부동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과 주택 외 보유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35%로 다른 분위에 비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동산 자산의 명목 금액의 증가폭은 2008년을 제외하고 높았다.

<표 Ⅵ-50> 부동산 자산 원천별 분포

단위(%,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①거주주택 시가총액	5988.8 (72.1)	5481.8 (66.3)	6150.7 (62.8)	6355.0 (61.3)	7694.5 (65.3)	7737.6 (60.7)	6934.7 (59.5)	7687.4 (60.4)	9422.8 (62.4)	8616.5 (58.5)	9549.1 (56.6)	10401.5 (57.3)	12506.2 (65.8)	11810.4 (57.8)	11880.2 (57.9)	12414.9 (55.2)	19920.0 (55.2)	19268.8 (52.3)	18758.2 (48.8)	20243.4 (45.9)
②전월세	716.4 (8.6)	-	-	-	1086.1 (9.2)	-	-	-	1820.6 (12.1)	-	-	-	2188.0 (11.5)	-	-	-	3548.5 (9.8)	-	-	-
③거주 전월세	-	851.3 (10.3)	909.3 (9.3)	1094.2 (10.6)	-	1097.9 (8.6)	1412.3 (12.1)	1420.7 (11.2)	-	1764.5 (12.0)	1983.0 (11.8)	2245.4 (12.4)	-	2278.9 (11.2)	2463.3 (12.0)	2611.2 (11.6)	-	3506.1 (9.5)	3723.6 (9.7)	4537.0 (10.3)
④비거주 전월세	-	4.7 (0.1)	302.8 (3.1)	275.1 (2.7)	-	76.5 (0.6)	62.2 (0.5)	239.3 (1.9)	-	17.6 (0.1)	178.4 (1.1)	576.5 (3.2)	-	36.2 (0.2)	157.0 (0.8)	637.6 (2.8)	-	193.8 (0.5)	719.2 (1.9)	2007.8 (4.6)
⑤비주택 전월세	-	224.6 (2.7)	38.2 (0.4)	137.2 (1.3)	-	128.1 (1.0)	50.3 (0.4)	157.4 (1.2)	-	44.0 (0.3)	99.7 (0.6)	64.2 (0.4)	-	163.3 (0.8)	88.1 (0.4)	133.4 (0.6)	-	519.4 (1.4)	399.0 (1.0)	369.5 (0.8)
거주주택외 보유주택	793.4 (9.6)	881.6 (10.7)	1071.0 (10.9)	1196.8 (11.5)	821.4 (7.0)	1552.4 (12.2)	1330.5 (11.4)	1047.9 (8.2)	1818.3 (12.0)	2186.8 (14.8)	2225.1 (13.2)	2650.4 (14.6)	2879.2 (15.2)	3740.4 (18.3)	3601.7 (17.5)	3439.8 (15.3)	7687.9 (21.3)	7981.0 (21.6)	7926.6 (20.6)	9357.4 (21.2)
주택 외 보유부동산	1062.8 (12.8)	909.8 (11.0)	1405.5 (14.3)	1364.7 (13.2)	2364.0 (20.1)	2225.4 (17.5)	1982.3 (17.0)	2199.5 (17.3)	2227.1 (14.8)	2149.1 (14.6)	2938.3 (17.4)	2244.8 (12.4)	1745.5 (9.2)	2429.1 (11.9)	2491.4 (12.1)	3327.7 (14.8)	5428.2 (15.0)	5590.7 (15.2)	7429.6 (19.3)	7816.7 (17.7)
총 부동산 자산	8307.0 (100)	8264.6 (100)	9798.8 (100)	10369.0 (100)	11782.0 (100)	12748.3 (100)	11652.9 (100)	12726.2 (100)	15091.7 (100)	14728.3 (100)	16859.8 (100)	18146.1 (100)	18993.2 (100)	20416.2 (100)	20536.2 (100)	22481.7 (100)	36113.6 (100)	36877.8 (100)	38431.5 (100)	44106.2 (1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 사용
2: ①거주 자가 주택 시가총액 ②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 ③거주 주택 전월세 보증금 ④비거주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⑤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3: 명목 금액임.

다. 부채 원천별 분포

부채 원천별 구성을 가구 소득분위별로 나타낸 결과에서, 부채의 구성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대출,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보증금, 기타 부채 등으로 되어 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에서는 금융기관대출을 세분화하지 않았고, 3차년도 이후부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대출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결과표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와의 일관성을 위하여 두 구성의 합을 금융기관대출로 나타내었다.

1분위에서 각 연도별로 금융기관대출의 비중이 50%이상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보증금이 큰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조사이후, 세부적인 금융기관대출의 구성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주택담보와 관련된 금융기관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대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금융기관대출의 비중이 2009년을 제외하고 증가하고 있으나, 명목 금액 총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보증금의 비율은 2009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 감소하였다. 총부채는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주택과 관련한 대출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에서는 1분위에서와 같이 금융기관대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금 및 보증금이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7년에 비해 다른 연도의 금융기관대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보증금 비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전세금 및 보증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을 때 금융기관대출의 총합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의 명목 금액도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보증금의 증가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분위에서도 역시 하위의 분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금융기관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0년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보증금의 비율은 감소하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 증가의 원인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4분위에서는 금융기관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른

소득분위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보증금은 2008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부채는 다른 분위와 달리, 2008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에서도 역시 금융기관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 및 보증금의 비중도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부채는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부채 구성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및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부채의 규모도 주로 이와 관련된 항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51> 부채 원천별 분포

단위(%,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	129.3 (8.2)	204.8 (11.2)	15.8 (0.8)	39.0 (1.9)	187.7 (8.0)	193.1 (7.5)	72.7 (3.4)	126.2 (5.5)	237.7 (8.9)	386.5 (13.0)	107.2 (3.3)	202.5 (5.8)	486.4 (13.7)	503.1 (11.8)	180.3 (4.5)	194.1 (4.8)	412.6 (5.9)	625.7 (8.9)	203.0 (2.9)	208.8 (2.3)
학자금 대출	18.1 (1.2)	26.1 (1.4)	18.9 (0.9)	17.9 (0.9)	34.4 (1.5)	38.6 (1.5)	84.5 (3.9)	37.8 (1.7)	35.1 (1.3)	38.2 (1.3)	33.5 (1.0)	33.3 (1.0)	22.6 (0.6)	21.6 (0.5)	22.3 (0.6)	44.1 (1.1)	34.2 (0.5)	73.1 (1.0)	53.3 (0.8)	61.1 (0.7)
금융 기관 대출 ①+②	874.8 (55.6)	1020.0 (56.0)	1251.2 (62.0)	1306.9 (65.3)	1554.1 (66.2)	1469.5 (57.0)	1325.6 (61.2)	1334.3 (58.4)	1536.6 (57.5)	1712.8 (57.5)	2159.1 (67.0)	2158.5 (62.1)	1980.9 (55.6)	2320.6 (54.5)	2516.4 (62.7)	2543.4 (62.5)	4545.6 (65.4)	3873.1 (55.1)	4398.3 (62.9)	5004.8 (56.0)
① 주택	-	-	751.0 (37.2)	752.0 (37.6)	-	-	721.7 (33.3)	834.3 (36.5)	-	-	1275.4 (39.6)	1424.9 (41.0)	-	-	1711.3 (42.6)	1789.5 (44.0)	-	-	2978.3 (42.5)	3678.2 (41.1)
② 비주택	-	-	501.2 (24.8)	554.9 (27.7)	-	-	603.9 (27.9)	500.0 (21.9)	-	-	883.7 (27.4)	733.6 (21.1)	-	-	809.5 (20.1)	753.9 (18.5)	-	-	1428.4 (20.4)	1330.2 (14.9)
전세금/ 보증금	352.4 (22.4)	515.8 (28.3)	664.0 (32.9)	602.2 (30.1)	382.7 (16.3)	819.1 (31.8)	593.6 (27.4)	611.1 (26.8)	754.6 (28.2)	795.1 (26.7)	822.9 (25.5)	1026.8 (29.6)	903.1 (25.4)	1392.6 (32.7)	1240.1 (30.9)	1242.7 (30.6)	1826.6 (26.3)	2419.2 (34.4)	2386.6 (34.1)	3571.9 (39.9)
기타	198.9 (12.6)	54.4 (3.0)	76.0 (3.8)	35.3 (1.8)	190.5 (8.1)	57.3 (2.2)	92.3 (4.3)	176.9 (7.7)	111.1 (4.2)	46.5 (1.6)	106.4 (3.3)	56.2 (1.6)	170.3 (4.8)	20.9 (0.5)	76.4 (1.9)	48.3 (1.2)	140.0 (2.0)	38.4 (0.5)	58.6 (0.8)	125.3 (1.4)
총부채	1572.4 (100)	1821.0 (100)	2020.6 (100)	2001.0 (100)	2349.3 (100)	2576.7 (100)	2165.3 (100)	2283.4 (100)	2674.3 (100)	2977.9 (100)	3222.1 (100)	3473.0 (100)	3560.2 (100)	4258.0 (100)	4017.4 (100)	4064.6 (100)	6946.0 (100)	7024.5 (100)	7006.6 (100)	8947.3 (1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 사용
2: ①+②금융기관대출총합 ①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②금융기관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3: 2009년 이후 금융기관대출 총합의 비율은 '①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과 '②금융기관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의 비율의 합임.
4: 명목 금액임.

9. 가구 설문 종료

가구 설문의 종료에 앞서 응답자들에게 조사 응답방식 변경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재정패널 조사 설문방식을 종이에 기입하는 방식에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조사의 정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것인데, 응답가구의 70%이상이 변함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부분은 추후 재정패널조사의 조사 방식 변경 논의시 고려될 부분이다.

<표 Ⅴ-52> CAPI 도입 시 조사 정확도 상승 여부

매우 상승	조금 상승	변함없음	조금 하락	매우 하락
3.4	13.1	70.3	11.5	1.7

주1: 횡단면 가중치 사용

소득이 있는 가구원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문항으로 2011년도 한해 동안 1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거나 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은 1가구에 평균 1.4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구조사 앞단에서 조사한 가구원 경제활동 상태의 응답결과(1.36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Ⅴ-53>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가구원수 및 가구원 정보

평균 가구원수 (단위:명)	소득활동여부 (단위:%)	가구원 소득 유무 (단위:%)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 (단위:%)	가구원 설문지 조사대상 여부 (단위:%)
1.4	41.7	47.9	20.6	54.8

주1: 횡단면 가중치 사용

Ⅶ. 가구원 조사표 조사 결과 요약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소득은 연금·보험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 순으로 조사했다. 기타소득에는 이전소득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특별현금급여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이 소득의 전부인 가구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종의 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세금 납부나 정부 지원과 같은 국가 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이며 이미 가구 조사표에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조사하지 않았다. 총 4,778가구에서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사람은 7,876명으로 가구당 평균 1.5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년도 조사에서는 20, 30대 기혼여성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을 추가로 조사하였는데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원 설문지를 조사했다.

1. 조사시점 5월 기준 경제활동상태

가. 소득활동 현황

1) 소득활동 현황 분포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2011년 5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55.5%,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6.1%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비율이 81.6%로 나타났다. 무직자나 고령자도 외부에서 받는 소득이 있을 경우도 포함되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의 비율은 약 18.4%로 나타났다.

전년도 소득활동 분포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약 2.8%p 증가한 만큼 임금근로자의 분포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Ⅶ-1> 소득활동 현황 분포(조사시점 5월 기준)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임금 근로자		57.0	57.1	55.5
	상용직	42.3	42.4	42.8
	임시직	6.7	7.2	5.8
	일용직	8.0	7.4	6.9
비임금 근로자		24.1	23.8	26.1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9.0	19.4	18.8
	고용원둔 사업주	4.4	3.8	3.9
	무급가족 종사자	0.7	0.6	3.4
소득 활동 없음		18.9	19.1	18.4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1차년도 조사의 경우 가구원의 경제활동 현황을 조사하지 않음

4차년도 조사 시점 당시(2011년도) 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요일별 근무 여부를 살펴보면 10명중 9명이 주중에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약 절반 가량 토요일에 근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요일 근무의 경우 1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일별 근로자 대상 근로 시간의 경우 평균적으로 8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9시간 이상 일해 다른 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많았다.

<표 Ⅶ-2> 경제활동자의 평균 근무 시간(조사시점 5월 기준)

	근무여부	시간
월요일	95.1	8.8
화요일	92.6	8.6
수요일	94.3	8.8
목요일	92.3	8.7
금요일	94.1	8.8
토요일	49.4	8.3
일요일	15.8	9.4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평균 근무시간의 경우 각 요일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2011년 5월 종사상지위별 소득활동자 인구학적 특성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조사된 종사상지위별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상용직인 사람들의 성비는 남성이 약 68.3%, 여성이 약 31.7%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구성을 나타냈으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약 75%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었다. 최종학력에서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인 경우, 여성이 약 58.1% 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약 63%였다. 연령에서는 주로 30대와 40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약 43%,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는 약 34.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용직인 경우, 남성의 비율이 약 57.5%, 여성이 42.5% 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약 58.9%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 40대, 50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최종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46.8%로 가장 많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는, 남성이 66.1%로 여성보다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기혼상태의 비율이 약 78.8%였다. 연령은 40대, 50대, 6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약 42.9%,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가 26.8% 순

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원을 둔 사업주는 남성이 약 76.4%로 여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인 비율이 91% 이상으로 대부분 여기에 속했다. 연령은 40대가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약 51.7% 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고용원을 둔 사업주와는 달리, 여성의 비율이 약 83.2%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절대 다수였다. 연령대는 주로 50대와 6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38.6%, 초등학교 졸업자 26.1%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의 성비는 남성이 약 39.6%, 여성이 60.4%로 여성인 경우가 더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약 56.0%,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기혼자는 약 38.3%로 다른 종사상지위의 사람들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령대에서도 보듯이,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약 79%로 나타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력 또한 고등학교 이하의 비율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3> 2011년 5월 종사상지위별 소득활동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상용직 (100)	임시직 (100)	일용직 (1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0)	고용원둔 사업주 (100)	무급가족 종사자 (100)	소득활동 없음 (100)
성별	남성	68.3	42.0	57.5	66.1	76.4	16.8	39.6
	여성	31.7	58.1	42.5	33.9	23.6	83.2	60.4
혼인상태	기혼 (배우자있음)	74.9	62.7	58.9	78.8	91.2	93.3	56.0
	기혼 (사별, 이혼)	4.1	13.51	23.2	14.2	3.2	2.8	38.3
	미혼	21.0	23.81	17.9	7.0	5.6	3.9	5.7
연령	20대 이하	15.8	15.71	7.4	2.8	4.3	1.4	2.7
	30대	38.5	26.21	22.3	16.5	22.0	8.2	4.8
	40대	27.4	28.5	23.9	30.4	41.4	27.5	5.5
	50대	15.3	14.61	28.0	27.9	26.7	30.3	7.9
	60세 이상	3.0	15.0	18.4	22.5	5.6	32.6	79.1
최종학력	미취학 (안받음)	0.3	1.5	6.3	4.8	0.0	8.2	26.3
	초등학교	2.0	6.3	11.9	11.6	2.2	26.1	27.8
	중학교	3.9	11.3	17.9	12.8	3.0	16.8	13.3
	고등학교	32.3	43.3	46.8	42.9	40.1	38.6	19.4
	전문대/ 4년제대학교	55.9	34.3	16.4	26.8	51.7	10.2	12.0
	대학원석사	4.7	3.2	0.2	0.9	2.3	0.0	1.1
	대학원박사	0.9	0.2	0.6	0.3	0.4	0.0	0.2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3) 소득활동자 대상 사업 내용 및 주로 하는 일

연도별 소득 활동자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차수에 걸쳐 제조업이 약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순이였다.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종사자는 2%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Ⅶ-4> 소득활동자 대상 사업 내용

	2008	2009	2010
농업, 임업 및 어업	7.4	6.6	7.7
광업	0.1	0.1	0.1
제조업	17.7	17.6	17.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9	1.8	1.7
건설업	7.4	8.2	7.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1.8	11.3	12.4
숙박 및 음식점업	5.0	5.1	5.1
운수업	4.8	4.8	4.2
통신업	1.7	2.0	2.6
금융 및 보험업	3.8	3.4	3.9
부동산임대업	1.0	0.7	0.7
사업서비스업	5.5	3.7	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9	5.4	5.7
교육서비스업	7.0	7.7	7.4
보건 및 사회복지업	3.2	3.8	4.0
오락, 방송 및 공연사업	0.9	1.1	1.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3	12.1	11.7
기타사업	5.7	4.5	3.6

주1: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소득활동자 주로 하는 일의 경우,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종사 비율이 각 20%이상으로 과반 이상이 이 세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행정관료직, 전문직, 노무직, 농립어업의 경우 10%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Ⅶ-5> 소득활동자 주로 하는 일

	2008	2009	2010
행정관료직	1.7	2.0	1.3
전문직	7.8	7.9	7.0
사무직	25.8	26.4	26.6
판매/서비스직	25.9	23.7	26.7
기능직	20.3	20.6	20.1
노무직	9.1	10.2	8.7
농림어업	6.9	5.9	7.3
기타	2.7	3.3	2.4

주1: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나. 비소득 활동자 현황

1) 비소득 활동자 구직 현황

비소득활동자의 최근 1개월간 구직 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비소득활동자 중 2011년 약 90.3%, 2010년 약 91.0%, 2009년 약 89.4%로 나타나 대부분의 비소득활동자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 사유를 보면, 건강상의 이유, 은퇴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차 미취학아동의 육아로 인한 사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비소득활동자 중 2011년 약 9.7%, 2010년 약 9.0%, 2009년 약 10.6%로 나타났다. 그 사유별로는 생활비를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기발전에 의한 사유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찾는 일자리의 형태는 임금근로 형태가 가장 많았고, 찾는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가 매년 2배 이상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세전 기대 월평균 소득에서는 2009년 약 137만원, 2010년 약 164만원, 2011년 약 136만원으로 2010년을 제외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Ⅶ-6> 비소득 활동자 구직 현황

단위(%, 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찾지 않음			89.4	91.0	90.3
	학업		2.5	1.2	0.8
	미취학아동육아		1.4	2.5	3.3
	가사		11.0	14.4	12.4
	은퇴		23.2	20.2	20.6
	건강상의 이유		55.5	56.2	57.4
	가구소득이 충분함		1.4	1.4	1.6
	기타		5.0	4.2	4.0
찾고 있음			10.6	9.0	9.7
	구직사유	생활비	87.6	79.9	91.9
		가족실직	0.0	0.0	0.0
		자기발전	9.3	17.4	8.1
		기타	3.0	2.7	0.0
	찾는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	80.5	71.9	81.3
		비임금근로	19.5	28.1	18.7
	찾는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68.1	68.8	74.7
		시간제	31.9	31.2	25.3
	기대 월평균 소득(세전)		137.6 만원	164.1 만원	136.3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2011년 구직 활동자 인구학적 특성

2011년 5월 기준 최근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약 62.7%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약 54.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기혼자는 약 41.3%로 조사되었다.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이 약 8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최종 학력에서는 미취학 및 초등학교 졸업자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7> 2011년 구직 활동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2011년 (100)
성별	남성	37.3
	여성	62.7
혼인상태	기혼 (배우자있음)	54.1
	기혼 (사별, 이혼)	41.3
	미혼	4.6
연령	20대 이하	1.9
	30대	3.8
	40대	4.1
	50대	6.3
	60세 이상	83.9
최종학력	미취학 (안받음)	28.6
	초등학교	28.5
	중학교	13.8
	고등학교	17.2
	전문대 / 4년제 대학교	10.7
	대학원석사	1.1
	대학원박사	0.2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연간 소득(개인)

가. 연금보험 소득

재정패널조사에서 공적 연금보험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금과 보험에 대한 대부분의 세부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4차년도 부터 정부지원현금을 가구원 조사표에서 추가하였다. 따라서 4차년도 조사이전에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연금을 연금보험소득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4차년도 이전 자료에서는 보훈연금 부분을 제외한 공적 연금보험 소득 수급여부를 재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 공적 연금 소득 현황

2010년 공적 연금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도 보다 국민연금 0.3%p, 특수직연금 0.4%p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이 전체 중 약 6.2%로 조사되었으며, 특수직연금은 전체의 1.8%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전체 중 노령연금이 약 5.4%, 유족연금 약 0.6%, 장애연금 약 0.2%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공무원연금의 세부항목에서는 전체 중 퇴직연금 약 1.2%, 유족연금 약 0.1%, 장애연금 약 0.03%, 퇴직일시금은 약 0.01%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금액은 360.5 만원이며, 공무원연금은 1993.4 만원, 사학연금은 2466.2 만원, 군인연금은 1718.8 만원, 별정우체국지원연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매우 적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적 연금 소득의 전체 평균은 약 56.8 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Ⅶ-8> 공적 연금 소득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민연금	없음			95.7	95.0	94.1	93.8
	있음			4.3	5.0	5.9	6.2
		노령연금		3.8	4.3	5.0	5.4
		장애연금		0.2	0.3	0.2	0.2
		유족연금		0.3	0.4	0.5	0.6
		분할연금		0.0	0.05	0.4	0.0
		반환일시금		0.07	0.03	0.0	0.02
		평균 금액		318.6 만원	339.4 만원	334.7 만원	360.5 만원
특수직연금	없음			98.5	98.6	98.6	98.2
	있음			1.5	1.4	1.4	1.8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1.0	0.9	0.8	1.2
			장애연금	0.04	0.04	0.0	0.03
			유족연금	0.06	0.05	0.1	0.1
			퇴직일시금	0.1	0.02	0.01	0.01
		평균금액		1567.2 만원	1987.5 만원	2009.5 만원	1993.4 만원
		사학연금	퇴직연금	0.1	0.07	0.1	0.1
			장애연금	0.0	0.0	0.02	0.02
			유족연금	0.02	0.0	0.02	0.03
			퇴직일시금	0.0	0.0	0.0	0.0
		평균금액		1767.9 만원	3255.0 만원	1750.9 만원	2466.2 만원
		군인연금	퇴직연금	0.1	0.2	0.2	0.2
			장애연금	0.02	0.02	0.05	0.05
			유족연금	0.1	0.05	0.04	0.05
			퇴직일시금	0.0	0.01	0.0	0.0
		평균금액		1310.3 만원	1566.0 만원	1624.2 만원	1718.8 만원
		별정우체국직원연금	퇴직연금	0.02	0.03	0.01	0.0
			장애연금	0.0	0.0	0.0	0.0
			유족연금	0.0	0.0	0.0	0.0
			퇴직일시금	0.0	0.0	0.0	0.0
		평균금액		420.0 만원	2987.8 만원	470 만원	0.0 만원
전체 평균 금액				36.3 만원	44.7 만원	45.8 만원	56.8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공적 보험 소득 현황

공적 보험 소득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 보험 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전체의 2007년 0.4%, 2008년 0.8%, 2009년 1.0%, 2010년 0.5%로 전반적으로 소득이 있었던 응답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산재보험의 세부항목에서는 산재휴업급여가 전체의 0.03%, 산재장애연금은 0.05%, 산재유족연금은 0.03%, 산재일시금은 0.04% 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들의 평균금액은 약 999.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보험에서는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2008년과 2009년에 0.6%로 다른 연도의 비율보다 약 2배가량 높았고, 수급자들의 평균금액은 439.9 만원 이었다.

<표 Ⅶ-9> 공적 보험 소득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적 보험	없음			99.6	99.2	99.0	99.5
	있음			0.4	0.8	1.0	0.5
		산재 보험	산재휴업급여	0.08	0.07	0.1	0.03
			산재장애연금	0.08	0.08	0.1	0.05
			산재유족연금	0.01	0.03	0.03	0.03
			산재일시금	0.02	0.03	0.01	0.04
		평균 금액		1765.7 만원	2158.5 만원	1403.2 만원	999.9 만원
		고용 보험	구직(실업)급여	0.2	0.6	0.6	0.3
			육아휴직급여	0.01	0.02	0.06	0.1
		평균 금액		454.4 만원	413.2 만원	407.0 만원	439.9 만원
전체 평균 금액				4.1 만원	7.0 만원	6.8 만원	2.9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3) 민간 연금보험 소득 현황

민간 연금보험 소득의 구성은 퇴직연금, 연금신탁/연금펀드/연금저축,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항목으로 되어있다. 2010년 연금보험소득이 있었던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약 3.5%로 전년도에 비해 약 0.5%p 증가하였다.

소득이 발생한 연금보험 항목 중에서 질병, 상해, 사망시 받는 보장보험금이 전체의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보험 0.6%, 연금보험 0.3%, 퇴직연금 0.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2007년 이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연금보험 소득이 있는 평균 금액은 2010년 576.7 만원으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응답 가구원의 평균금액은 2010년 20.3만원으로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0> 민간 연금보험 소득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없음		98.2	96.9	97.0	96.5
있음		1.8	3.1	3.0	3.5
	퇴직연금	0.07	0.2	0.2	0.2
	연금신탁/연금펀드/연금저축	0.04	0.02	0.06	0.02
	연금보험	0.2	0.2	0.2	0.3
	보장보험	1.4	2.3	2.3	2.6
	저축보험	0.07	0.1	0.04	0.02
	자동차보험	0.1	0.5	0.4	0.6
	기타	-	-	-	0.01
	평균 금액	371.8 만원	572.1 만원	358.5 만원	576.7 만원
전체 평균 금액		6.7 만원	12.2 만원	10.9 만원	20.3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2개 이상 항목 수급 가구원 포함한 결과임

4) 2010년 주요 연금보험 수급자 인구학적 특성

2010년 주요 연금보험 소득자 인구학적 특성은 앞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공적연금보험 및 민간 연금보험의 주요 항목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이 약 62.4%, 여성이 약 37.6%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 상태는 약 70.5%로 조사되었다. 연령에서는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급 받은 사례가 많은 것이 반영되어 60세 이상자가 약 89.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종학력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수급자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에서 남성 수급자가 약 81.7%로, 여성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비율도 약 87.0%로 혼인의 주요 형태였다. 연령대는 퇴직연금의 비율이 대부분이었던 결과를 반영하여 50대와 60세 이상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이 약 82.8%로 고학력층에 속한다.

보장보험 수급자 중 남성이 약 61.7%, 여성이 약 38.3% 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상태가 약 76.5%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에서는 30대, 40대, 50대에서 각각 32.7%, 34.5%, 21.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이 약 89.5%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보험 수급자 중, 남성은 약 80.1%로 여성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상태가 87.5%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각각 33.8%, 49.7% 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와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비율이 약 95.4%로 나타났다.

<표 Ⅶ-11> 2010년 주요 연금보험 수급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공적 연금보험 수급자		민간 연금보험 수급자	
		국민연금 (100)	공무원연금 (100)	보장보험 (100)	자동차보험 (100)
성별	남성	62.4	81.7	61.7	80.1
	여성	37.6	18.3	38.3	19.9
혼인상태	기혼 (배우자있음)	70.5	87.0	76.5	87.5
	기혼 (사별, 이혼)	29.5	10.6	16.8	8.2
	미혼	0.0	2.4	6.7	4.3
연령	20대 이하	0.0	0.0	2.7	0.0
	30대	0.0	0.8	32.7	33.8
	40대	1.7	1.4	34.5	49.7
	50대	8.5	17.6	21.5	10.9
	60세 이상	89.9	80.3	8.6	5.6
최종학력	미취학 (안받음)	11.2	2.0	2.7	0.0
	초등학교	28.0	5.6	3.9	2.2
	중학교	23.3	9.6	3.8	2.4
	고등학교	26.9	33.0	43.0	46.6
	전문대/ 4년제대학교	10.0	39.1	41.1	38.4
	대학원석사	0.5	8.4	4.9	7.3
	대학원박사	0.0	2.3	0.5	3.1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4) 정부지원현금 소득 현황

본 조사에서 보훈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부지원현금 소득은 3차년도까지 가구조사표에서 조사되어졌으며, 수급 받은 가구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 가구원 자료에 병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3차년도 조사 이전의 결과는 가구조사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2010년 정부지원현금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수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 응답가구원 중 16.8%로 나타났다. 세부 수급 항목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전체의 약 14.2%로 가장 많은 수급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뒤로 농어업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보훈수당 순으로 많았다. 2010년 분포와 평균 금액은 전년도와 유사하였다.

<표 Ⅶ-12> 정부지원현금 소득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없음		96.0	85.2	82.0	83.2
있음		4.0	14.8	18.0	16.8
	국가유공자보훈연금	0.7	0.8	0.7	0.4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노인교통비 등	2.3	11.8	14.6	14.2
	농어업정부보조금	0.2	0.4	1.0	1.2
	장애수당	-	0.7	0.6	1.0
	보훈수당	-	0.4	0.4	0.7
	기타	1.0	1.5	1.9	0.5
	평균 금액	105.0 만원	102.0 만원	144.2 만원	149.6 만원
전체 평균 금액		4.2 만원	15.1 만원	20.6 만원	25.0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2009년 이전의 자료는 가구조사표에서 조사됨.
3: 2개 이상 항목 수급 가구원 포함한 결과임.

나. 가구원 연간 소득

1) 가구원 연간 소득 원천별 현황

4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원 연간 소득의 원천은 연금/보험 소득 및 정부지원현금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노인요양특별급여, 그 외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전 조사와의 차이점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세분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삭제, 정부지원현금의 문항 이전 등 이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기타소득에서 '용돈, 생활비, 학비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정부지원 현금'에 대한 설문을 세부화하지 않아 기타소득에 대한 결과가 다른 조사와 다르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유산, 포상금, 당첨금, 증여, 정부지원금/보조금, 복지단체 지원금 등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연도별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수의 비율에서 2007년도에는 98.8%로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이는 2차년도부터 가구원의 신규와 분가 등의 영향으로 가구원 조사 대상수가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2010년 연금/보험 소득 및 정부지원현금을 제외한 가구원 연간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원천별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전체의 약 58.1%, 사업소득 약 23.3%, 부동산 임대소득 소계 약 5.9%, 이자 및 배당소득 약 3.8%, 타가구 이전소득 약 13.8, 노인요양특별급여 약 0.01%, 그리고 그 외 기타소득은 약 5.3% 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기타소득의 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분포의 비율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2010년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해당자들의 근로소득 평균 금액은 2856.7만원, 사업소득 2712.4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986.0만원, 이자 및 배당 소득은 467.7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보면, 근로소득 평균 금액은 점차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8년에 다소 감소하였던 것과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8년 이후로 점차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표 Ⅶ-13> 가구원 연간 소득 원천별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없음			1.2	8.4	8.8	10.5
있음			98.8	91.6	91.2	89.4
	근로소득		57.2	59.6	59.6	58.1
		평균 금액	2670.2 만원	2629.8 만원	2666.0 만원	2856.7 만원
	사업소득		22.9	24.1	22.7	23.3
		매출(수입)	-	9233.1 만원	8410.3 만원	9538.4 만원
		소득	2771.2 만원	2269.6 만원	2473.9 만원	2712.4 만원
	부동산 임대 소득	소계*	4.2	5.4	5.3	5.9
		평균 금액	1072.5 만원	929.0 만원	1026.5 만원	986.0 만원
		토지	-	-	-	0.5
		평균 금액	-	-	-	387.3 만원
		주택	-	-	-	3.6
		평균 금액	-	-	-	713.3 만원
		상가/사무실	-	-	-	1.7
		평균 금액	-	-	-	1554.7 만원
		기타	-	-	-	0.07
		평균 금액	-	-	-	1006.4 만원
	이자 및 배당 소득		2.8	3.0	2.4	3.8
		평균 금액	559.5 만원	606.9 만원	601.7 만원	467.7 만원
	기타 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	15.4	16.0	13.8
		평균 금액	-	339.6 만원	379.1 만원	406.5 만원
		노인요양 특별급여	-	-	-	0.01
		평균 금액	-	-	-	360 만원
		그 외 기타소득**	31.3	6.2	2.8	5.3
		평균 금액	401.1 만원	941.0 만원	767.3 만원	896.2 만원
전체 평균 금액			2328.1 만원	2272.0 만원	2292.8 만원	2466.5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1~3차년도 결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정부지원현금은 제외함.
*: 2010년 부동산임대소득 소계는 세부 항목의 합산임.
**: 2007년 그 외 기타소득은 유산, 포상금, 당첨금, 증여, 정부지원금/보조금, 복지단체 지원금 등 기타 소득이 포함됨

2) 2010년 개인 소득분위별 인구학적 특성

개인 소득분위의 구성은 연금/보험 소득, 정부지원현금 등을 포함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 경상소득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경조사소득 등, 그 외 기타소득은 제외하였다.

성별에서 남성의 비율은 1분위 약 32.3%, 2분위 약 40.1%, 3분위 약 57.6%, 4분위 약 78.9%, 5분위 약 85.8% 로 소득분위가 상승할수록 남성인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에서는 1분위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약 62.0% 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기혼자가 약 30.6%로 다른 소득분위보다 높았다. 2분위에서는 약 63.2%, 3분위에서는 약 62.0%, 4분위 약 78.4%, 5분위 약 92.1% 로 4분위와 5분위에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혼의 비율은 3분위 > 4분위 > 2분위 > 5분위 > 1분위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분위는 각각 1분위 60세 이상, 2분위 60세 이상, 3분위 30대, 4분위 30대, 5분위 40대로 조사되었다. 1분위의 경우 주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고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가장 소득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30~50대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였다.

최종학력에서는 학력 차에 의한 소득분위의 분포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율이 1분위 약 12.9%, 2분위 약 25.5%, 3분위 약 41.6%, 4분위 약 50.5%, 5분위 약 70.0%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졸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4> 2010년 개인 소득분위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1분위 (100)	2분위 (100)	3분위 (100)	4분위 (100)	5분위 (100)
성별	남성	32.3	40.1	57.6	78.9	85.8
	여성	67.7	59.9	42.4	21.2	14.2
혼인상태	기혼 (배우자있음)	62.0	63.2	62.0	78.4	92.1
	기혼 (사별, 이혼)	30.6	20.3	12.1	4.7	2.5
	미혼	7.4	16.5	25.8	16.9	5.4
연령	20대 이하	4.2	13.4	15.6	11.7	2.6
	30대	7.7	16.9	30.3	38.9	30.1
	40대	13.2	20.8	23.8	23.9	39.9
	50대	13.4	18.0	18.0	17.7	22.9
	60세 이상	61.5	30.8	12.2	7.8	4.5
최종학력	미취학 (안받음)	24.4	7.4	0.9	0.2	0.3
	초등학교	27.0	14.8	5.9	2.9	0.5
	중학교	12.6	15.1	10.4	4.8	2.3
	고등학교	23.2	37.3	41.2	41.7	26.9
	전문대/ 4년제대학교	12.4	24.7	40.2	46.9	60.1
	대학원석사	0.2	0.8	1.0	3.2	8.1
	대학원박사	0.3	0.0	0.4	0.3	1.8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3. 연간 연금보험 지출

가. 공적 연금보험 관련 지출

1) 공적 연금 지출 현황

본 조사에서 공적 연금 지출에 대한 조사는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 등으로 되어있으며, 특수직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표에서는 가입자 기준이 아닌 실제로 납부한 응답자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공적 연금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있는 납부자는 전체의 약 44.4%로 나타났으며, 사업장가입자는 34.9%, 지역가입자는 9.6%,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0.03%로, 대부분의 납부형태는 사업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 53.7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특수직연금 지출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4.8%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연금은 3.4%, 사학연금은 0.8%, 군인연금은 0.5%,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0.2%로 조사되었고, 공무원연금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수직연금의 전체 평균 납부금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표 Ⅶ-15> 공적 연금 지출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민연금	없음		56.2	53.4	55.9	55.6
	있음		43.8 (126.4 만원)	46.6	44.1	44.4
		사업장가입	-	112.4 만원	111.8 만원	116.2 만원
		비율	-	36.4	34.9	34.9
		지역가입	-	140.4 만원	143.0 만원	137.8 만원
		비율	-	10.1	9.3	9.6
		임의가입	-	88.2 만원	37.5 만원	135.2 만원
		비율	-	0.08	0.06	0.03
	전체 평균 금액		55.1 만원	53.6 만원	52.8 만원	53.7 만원
특수직연금	없음		96.3	94.9	94.7	95.2
	있음		3.7	5.1	5.3	4.8
		공무원연금	200.7 만원	218.1 만원	232.9 만원	262.3 만원
		비율	2.9	3.6	3.7	3.4
		사학연금	207.1 만원	214.1 만원	205.6 만원	272.3 만원
		비율	0.5	0.9	0.9	0.8
		군인연금	169.6 만원	187.5 만원	220.7 만원	219.5 만원
		비율	0.3	0.5	0.5	0.5
		별정우체국	207.8 만원	213.6 만원	225.6 만원	234.4 만원
		비율	0.05	0.05	0.08	0.2
	전체 평균 금액		7.4 만원	10.9 만원	11.9 만원	12.5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비율은 전체 가구원 중 각 항목별 해당 가구원 비율임
3: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함

2) 공적 보험 지출 현황

공적 보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사람은 2010년 62.3%, 2009년 65.2%, 2008년 85.5%, 2007년 66.5%로, 2008년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 높은 지출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건강보험의 납부형태는 사업자가입자가 전체의 46.6%로 지역가입자 15.8%보다 높았으며, 평균금액도 각각 46.6만원, 15.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평균 납부금액은 64.2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고용보험 납부자는 전체의 33.4%로 전년도보다 약 1.7%p 낮았다. 해당 납부 평균금액은 13.7만원이었고, 전체 평균 납부금액은 4.6만원이다

<표 Ⅶ-16> 공적 보험 지출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강보험	없음		33.5	14.4	34.8	37.7
	있음		66.5 (84.9 만원)	85.5	65.2	62.3
		사업장가입	-	86.0 만원	84.3 만원	94.1 만원
		비율	-	42.8	47.3	46.6
		지역가입	-	90.8 만원	108.1 만원	129.4 만원
		비율	-	23.6	17.0	15.8
	전체 평균 금액		56.2 만원	57.8 만원	58.2 만원	64.2 만원
고용보험	없음		66.79	63.9	64.9	66.6
	있음		33.21	36.1	35.1	33.4
		해당 평균 금액	14.8 만원	14.9 만원	12.8 만원	13.7 만원
	전체 평균 금액		4.6 만원	5.0 만원	4.2 만원	4.6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비율은 전체 가구원 중 각 항목별 해당 가구원 비율임
3: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함

나. 민간 연금·보험 관련 지출

2010년도 민간 연금보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71.4%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약 3.6%p 증가하였다. 세부항목별로는 퇴직연금에서는 전체의 0.4%로 평균 254.7만원, 연금저축/연금펀드/연금신탁에서는 전체의 4.9%로 평균 346.1만원, 연금보험에서는 전체의 11.6%로 평균 327.8만원, 보장보험에서는 전체의 59.8%로 평균 338.3만원,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전체의 42.7%, 평균 71.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전체 민간 연금보험 지출 평균 납부금액은 216.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명목금액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보장보험과 자동차보험 납부자의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7> 민간 연금보험 지출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없음		36.2	35.8	32.2	28.6
있음		63.8	64.2	67.8	71.4
	퇴직연금	492.2 만원	302.9 만원	222.5 만원	254.7만원
	비율	0.8	0.9	0.4	0.4
	연금저축/연금펀드/연금신탁	561.4 만원	267.9 만원	271.6 만원	346.1 만원
	비율	7.1	5.2	6.1	4.9
	연금보험	552.7 만원	296.4 만원	306.5 만원	327.8 만원
	비율	6.9	10.1	10.2	11.6
	보장보험	306.1 만원	186.4 만원	187.8 만원	187.2 만원
	비율	50.8	53.2	56.6	59.8
	저축보험	601.7 만원	283.8 만원	380.5 만원	338.3 만원
	비율	3.3	6.4	4.8	5.4
	자동차보험	307.4 만원	70.7 만원	67.2 만원	71.0 만원
	비율	39.9	35.5	37.3	42.7
전체 평균 금액		176.3 만원	187.6 만원	197.9 만원	216.2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비율은 전체 가구원 중 각 항목별 해당 가구원 비율임
3: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함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1)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 현황

본 조사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보유현황 및 사용금액을 합쳐서 조사하고 있어, 각각의 현황을 구분하여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로 전체 중 보유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 명목 금액도 2008년을 제외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보유자의 비율은 전체의 62.7%로 조사되었고, 사용 평균 금액은 1098.9 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보유자의 비율과 사용금액이 증가하였다.

<표 Ⅶ-18>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없음	54.3	39.5	38.3	37.3
있음	45.7	60.5	61.7	62.7
사용금액	1020.3 만원	988.1 만원	1018.1 만원	1098.9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자 인구학적 특성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2007년 남성의 비율은 전체의 71.3%, 2008년 69.6%, 2009년 67.6%, 2010년 67.1%로 남성 보유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는 기혼인 보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80%이상으로 대부분 기혼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서는 주로 소득활동이 활발한 30대, 40대의 비율이 2010년에 전체의 62.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에서도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가 2010년 전체의 55.3%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Ⅶ-19>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보유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2007년 (100)	2008년 (100)	2009년 (100)	2010년 (100)
성별	남성	71.3	69.6	67.6	67.1
	여성	28.7	30.4	32.4	32.9
혼인상태	기혼 (배우자있음)	82.8	82.0	83.2	76.7
	기혼 (사별, 이혼)				6.1
	미혼	17.2	18.0	16.8	17.2
연령	20대 이하	15.1	14.6	12.6	11.1
	30대	34.1	33.8	34.5	34.7
	40대	30.5	28.8	29.0	28.2
	50대	14.3	16.2	17.7	18.8
	60세 이상	6.0	6.6	6.3	7.2
최종학력	미취학 (안받음)	0.5	0.3	0.4	0.2
	초등학교	2.9	2.6	2.5	2.3
	중학교	6.0	5.6	6.1	5.8
	고등학교	37.1	37.8	37.2	36.4
	전문대/ 4년제대학교	48.3	48.4	48.8	50.2
	대학원석사	4.4	4.4	4.4	4.2
	대학원박사	0.8	1.0	0.7	0.9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카드사용액 영향

본 조사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문항이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6% 이상을 나타냈었다. 매우 증가나 다소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 20.5%, 2008년 21.5%, 2009년 21.9%, 2010년 21.2%로 조사되었다.

<표 Ⅶ-2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카드사용액 영향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모름/무응답	4.0	1.4	0.05	0.02
매우 증가	3.3	2.3	3.0	2.8
다소 증가	17.2	19.2	18.9	18.4
별다른 영향 없음	74.4	76.2	77.3	76.3
다소 감소	0.8	0.8	0.5	1.8
매우 감소	0.3	0.1	0.3	0.7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나.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 등록 현황

현금영수증 등록 현황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단, 2007년도의 결과는 국세청 등록 여부에 대한 문항이 없어, 사용금액이 0원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조사하였다. 현금영수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전체의 31.0%, 2009년 33.8%, 2010년 34.0% 로 점차적으로 등록한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용금액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1> 현금영수증 등록 현황

단위(%, 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없음		72.0	69.0	66.2	66.0
있음		28.0	31.0	33.8	34.0
	사용금액	411.3 만원	378.2 만원	355.4 만원	341.6 만원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현금영수증 등록자 인구학적 특성

현금영수증 등록자 및 사용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각 항목별 전반적인 분포의 형태는 유사하였다. 성별에서는 2007년 남성의 비율은 전체의 73.9%, 2008년 73.7%, 2009년 73.1%, 2010년 72.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혼인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기혼이 응답자가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 전체의 83.2%, 2008년 81.8%, 2009년 84.7%, 2010년 배우자가 있는 기혼인 비율이 전체의 80.2%, 사별 또는 이혼인 기혼자 2.8%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2007년 37.5%, 2008년 39.8%, 2009년 42.8%, 2010년 4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최종학력에서는 전문대/4년제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57.3%, 2008년 58.5%, 2009년 58.5%, 2010년 61.5%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2> 현금영수증 등록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		2007년 (100)	2008년 (100)	2009년 (100)	2010년 (100)
성별	남성	73.9	73.7	73.1	72.8
	여성	26.1	26.3	26.9	27.2
혼인상태	기혼 (배우자있음)	83.2	81.8	84.7	80.2
	기혼 (사별, 이혼)				2.8
	미혼	16.8	18.2	15.3	17.0
연령	20대 이하	17.6	17.1	12.6	11.9
	30대	37.5	39.8	42.8	44.0
	40대	29.8	28.9	28.7	27.8
	50대	11.2	12.7	13.6	14.6
	60세 이상	3.9	1.6	2.3	1.7
최종학력	미취학 (안받음)	0.4	0.0	0.2	0.1
	초등학교	1.9	1.2	0.6	0.6
	중학교	4.1	2.3	2.7	2.3
	고등학교	30.7	30.9	31.1	29.0
	전문대/ 4년제대학교	57.3	58.5	58.5	61.5
	대학원석사	4.4	5.8	5.7	5.4
	대학원박사	1.2	1.3	1.1	1.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5. 소득 공제 내역

가. 소득세 납부 유형

1) 소득세 납부 유형 현황

소득세 납부 유형은 크게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두 유형 모두 신고한 대상자도 포함되었다. 전체 가구원 응답자 중, 2010년 귀속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비율은 36.8%,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1.5%, 두 유형 모두 신고한 비율은 0.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고자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각 연도별 소득세 납부 유형 중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3> 소득세 납부 유형 현황

단위(%)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34.6	36.9	37.3	36.8
종합소득세 신고	9.7	10.8	11.8	11.5
모두 신고	0.04	0.05	0.02	0.1
해당없음	55.6	52.3	50.9	51.6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각 귀속년도에 대한 신고 기준임

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본 조사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비,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장기주식형저축 등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의 공제내역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각 공제 내역이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2008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어 시행되었으며, 혼인/장례/이사비 공제는 2009년 귀속소득부터 폐지되었다.

결과표에서 비율 및 평균금액은 전체 가구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2010년 귀속에 대한 공제내역 중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 항목은 보험료 공제로 약 81.2% 였다.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응답자 중 보험료 항목에서 공제를 받은 해당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공제 항목에서 59.7%로 높았다. 평균 공제 금액은 각 항목별 한도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교육비 공제에서 약 308.3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나타냈다.

연도별 소득공제 내역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보험료는 2007년 92.8%, 2008년 98.0%, 2009년 79.8%, 2010년 81.2%로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비 공제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등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해당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해당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4>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내역

단위(%, 만원)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보험료		175.1 만원	171.9 만원	183.1 만원	192.7 만원
	비율	92.8	98.0	79.8	81.2
의료비		148.9 만원	188.7 만원	194.9 만원	199.9 만원
	비율	27.8	27.2	25.2	27.0
교육비		274.9 만원	277.3 만원	325.6 만원	308.3 만원
	비율	31.5	35.2	32.5	34.4
주택자금		187.0 만원	158.5 만원	182.7 만원	196.1 만원
	비율	12.5	17.5	16.3	17.1
기부금		132.8 만원	138.8 만원	135.4 만원	116.9 만원
	비율	26.4	27.6	30.4	33.3
혼인/장례/이사비		110.2 만원	100.0 만원	-	-
	비율	1.7	0.9	-	-
개인연금저축		58.8 만원	50.4 만원	45.9 만원	51.7 만원
	비율	6.5	4.3	4.1	3.2
연금저축		197.7 만원	212.4 만원	221.0 만원	232.9 만원
	비율	9.8	9.7	11.8	14.3
투자조합출자		50.0 만원	431.3 만원	310.7 만원	0.0 만원
	비율	0.03	0.2	0.3	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65.8 만원	236.9 만원	231.6 만원	189.5 만원
	비율	62.4	65.9	57.8	59.7
우리사주조합		288.9 만원	281.8 만원	314.8 만원	213.6 만원
	비율	0.4	0.3	0.9	0.5
장기주식형 저축		-	21.3 만원	48.6 만원	40.0 만원
	비율	-	0.3	1.6	1.4
기타		300.0 만원	103.9 만원	178.3 만원	203.7 만원
	비율	0.1	0.8	0.3	0.7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각 귀속년도에 대한 신고 기준임
3: 해당자의 비율 및 평균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각 항목별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들의 결정세액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2007년 귀속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평균 108.1만원, 2008년 88.3만원, 2009년 88.2만원, 2010년 91.8만원으로 2007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0년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분위별로 나타낸 결과에서는 상위소득자일수록 높은 결정세액을 보였으며, 5분위와 그 이하 분위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2010년 귀속 평균 결정세액은 1분위에서는 3.5만원, 2분위 7.0만원, 3분위 17.0만원, 4분위 49.3만원, 5분위 20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모든 소득분위에서 결정세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5>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

단위(만원)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1분위	7.2	0.2	1.0	3.5
2분위	13.0	9.1	6.3	7.0
3분위	34.5	20.4	12.2	17.0
4분위	80.7	40.5	41.9	49.3
5분위	201.5	186.1	200.1	208.0
전체 평균	108.1	88.3	88.2	91.8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각 귀속년도에 대한 신고 기준임

다.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

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내역

본 조사에서는 연금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장기주식형저축, 표준공제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구원의 공제내역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008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어 시행되었다.

결과표에서 비율 및 평균금액은 전체 가구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2010년 귀속에 대한 공제내역 중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 항목은 표준공제로 약 95.3%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서 30.1%로 높았다. 평균 공제 금액은 각 항목별 한도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연금저축 공제에서 약 240.1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나타냈다.

연도별 소득공제 내역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금보험료는 2007년 28.9%, 2008년 30.7%, 2009년 28.3%, 2010년 30.1%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외의 항목에서도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준공제의 경우 2008년 귀속에 비해 2010년 귀속에는 약 33.4%p 차이로 상당히 높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표준공제의 평균금액은 점차 감소하였다.

<표 Ⅶ-26> 종합소득세 공제 내역

단위(%, 만원)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연금보험료		133.2 만원	146.9 만원	141.4 만원	142.0 만원
	비율	28.9	30.7	28.3	30.1
기부금		178.0 만원	130.0 만원	141.4 만원	144.1 만원
	비율	12.4	8.7	8.1	7.1
개인연금저축		66.3 만원	65.5 만원	61.3 만원	54.0 만원
	비율	4.2	1.6	1.7	1.1
연금저축		226.9 만원	163.5 만원	226.2 만원	240.1 만원
	비율	2.8	3.3	4.2	4.7
투자조합출자		200.0 만원	0.0 만원	24 만원	0.0 만원
	비율	0.3	0.0	0.1	0.0
장기주식형 저축		-	0.0 만원	0.0 만원	0.0 만원
	비율	-	0.0	0.0	0.0
표준공제		-	65.6 만원	63.0 만원	60.9 만원
	비율	-	61.9	71.0	95.3
기타		61.8 만원	341.0 만원	142.6 만원	169.4 만원
	비율	99.0	2.8	2.0	1.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각 귀속년도에 대한 신고 기준임
3: 해당자의 비율 및 평균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각 항목별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2)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평균 결정세액을 살펴보면, 2007년 귀속에서는 125.0 만원, 2008년 57.5만원, 2009년 78.0만원, 2010년 63.9만원으로 매년 결정세액의 규모에 변동이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귀속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67.5 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개인 소득분위별 결정세액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위소득분위일수록 높은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2008년 귀속에는 전년도에 비해 4분위와 5분위에서 평균 결정세액

이 1/2로 감소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2009년 귀속 5분위의 경우 2007년 귀속소득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0년 귀속에 다시 감소하였다. 4분위에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전년도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7>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단위(만원)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1분위	11.8	8.0	3.4	6.3
2분위	38.9	32.0	52.9	15.4
3분위	72.4	63.0	52.2	38.7
4분위	119.2	54.6	38.6	39.6
5분위	230.1	105.7	208.2	174.6
전체 평균	125.0	57.5	78.0	63.9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각 귀속년도에 대한 신고 기준임
3: 비율 및 평균금액은 전체 가구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함

6.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

4차년도 조사에서 2011년 5월 조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20 ~ 30대 (1972년 ~ 1991년 출생) 기혼여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출상 장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영역을 부가조사의 형태로 신설하였다.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인식은 결혼년수, 현재 자녀수 및 이상적 자녀수, 자녀계획,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그 내용이며 응답자 대상에 해당 하는 가구원이라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이 영역에는 응답하였다.

가. 출산장려정책 대상자 기본정보

1) 출산장려정책 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에서 대상으로 한 20~30대 기혼여성과 그 배우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기혼여성들은 결혼기간이 평균 7.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들의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평균 나이가 32.9세로 나타났으며, 그 배우자인 남성들의 평균 연령은 35.6세로 많았다. 최종학력의 분포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은 전체의 40.8%,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는 54.3%로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미취학자는 없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33.4%,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는 60.1%로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에서는 기혼여성들은 무직인 사람이 전체의 62.4%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임금근로자는 27.7%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77.7%로 가장 많은 종사상지위의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대부분의 기혼여성의 배우자인 남성들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Ⅶ-28> 출산장려정책 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단위(년, 세, %)		2010년	
		기혼 여성 [1025]	그 배우자(남성) [986]
결혼년수(년)		7.6 년	7.6 년
평균연령(세)		32.9 세	35.6 세
최종학력	미취학 (안받음)	0.01	0.0
	초등학교	0.9	0.2
	중학교	1.0	0.4
	고등학교	40.8	33.4
	전문대/ 4년제대학교	54.3	60.1
	대학원석사	2.5	4.8
	대학원박사	0.5	1.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7.7	77.7
	일용근로자	2.2	3.0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5.8	13.2
	고용원을 둔 사업주	0.9	4.4
	무급가족종사자	0.9	0.2
	무직	62.4	1.6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대괄호는 응답자 수

2)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분포의 차이가 크지 다르지 않았다. 가족수입과 여가생활,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만족한다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가족관계나 친인척관계에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표 Ⅶ-29>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가족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매우 만족	2.9	3.2	2.7	4.0	5.3	5.1	14.0	13.5	7.4	7.1
대체로 만족	33.2	33.4	34.2	31.6	42.2	44.3	64.5	66.7	59.2	63.1
보통	34.8	34.7	33.3	36.3	34.0	35.9	18.3	17.7	28.8	26.4
별로 만족하지 않음	25.1	25.1	26.6	25.4	16.7	13.7	2.9	2.0	4.1	3.1
매우 만족하지 않음	4.0	3.6	3.1	2.7	1.7	0.9	0.2	0.1	0.5	0.4
전체 평균	2.9	2.9	2.9	2.9	2.7	2.6	2.1	2.1	2.3	2.3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여성은 기혼여성, 남성은 기혼여성의 배우자임

3) 출산장려정책 대상자 자녀 계획

본 조사에서는 출산장려정책 대상자들의 현재 자녀수 및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 설문하였다.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일부 결과에서는 표본수가 극히 적어 해석상에 유의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 대상자 자녀계획에 대한 결과표를 살펴보면, 현재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상적인 자녀수와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의 이상적인 자녀수에서는 공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즉,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현재의 자녀수의 차이가 현실을 고려했을 때의 차이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현재보다는 많은 수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Ⅶ-30> 출산장려정책 대상자 자녀계획

단위(명)		2010년					
		기혼 여성 [1025]			그 배우자(남성) [986]		
		현재	현실미고려	현실고려	현재	현실미고려	현실고려
연령	20대	1.0	2.2	1.7	1.1	2.1	1.9
	30대	1.6	2.3	1.9	1.5	2.3	1.9
	40대	-	-	-	1.8	2.3	1.9
	50대	-	-	-	2.0*	2.0*	2.0*
최종학력	미취학 (안받음)	0.0* [1]	2.0* [1]	2.0* [1]	-	-	-
	초등학교	1.4* [6]	1.8* [6]	1.8* [6]	2.5* [2]	2.0* [2]	2.5* [2]
	중학교	1.4	1.8	1.6	2.2* [5]	2.8* [5]	2.5* [5]
	고등학교	1.7	2.3	1.9	1.7	2.2	2.0
	전문대/ 4년제대학교	1.5	2.3	1.9	1.5	2.3	1.9
	대학원석사	1.3	2.3	2.0	1.4	2.3	2.0
	대학원박사	1.5* [6]	2.6* [6]	2.2 [6]	1.6	2.4	2.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3	2.3	1.8	1.6	2.3	1.9
	일용근로자	1.5	2.5	1.9	1.7	2.2	2.0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5	2.2	1.8	1.6	2.3	2.0
	고용원을 둔 사업주	1.5	2.2	1.8	1.8	2.3	1.9
	무급가족종사자	2.1	2.5	2.4	2.0*	2.5*	2.2*
	무직	1.7	2.3	1.9	1.5	2.3	1.8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대괄호는 응답자 수
3: *는 매우 적은 표본수의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함. 대괄호는 표본수.

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1) 출산지원정책 만족도

각 항목별 현재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수혜자를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혜자 중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큰 출산지원정책은 난임부부지원이 85.1%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보육·교육비지원 80.9%,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100%절감이 74.0%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자녀 우대카드, 의료기관외 출산비 지급, 다자녀가정 주거 안정 지원 등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Ⅶ-31> 출산지원정책 만족도

단위(%)	매우 도움	대체로 도움	보통	도움되지 않음	전혀 도움 안됨
난임부부지원	2.9	82.2	8.2	6.7	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7.7	53.2	31.8	6.8	0.5
의료기관외 출산비 지급	10.6	42.1	33.2	13.3	0.8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5.6	56.0	26.8	11.7	0.0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16.5	52.9	19.8	9.4	1.4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지원	14.5	52.8	29.1	3.0	0.5
보육·교육비지원	26.1	54.8	15.3	3.1	0.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	12.7	48.5	28.6	9.7	0.6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5.4	48.8	32.4	13.4	0.0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8.4	51.6	31.8	6.1	2.1
다자녀 우대카드	5.5	36.1	42.8	13.6	2.0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100% 절감	9.7	64.3	24.0	2.0	0.0

주1: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각 항목별 해당자를 대상으로 결과 도출함

Ⅷ. 소득근거자료 제출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재정패널조사는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역을 모든 응답자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소득공제 내역은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재정패널조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소득공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1~2월 경에 근무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대상이 되었다. 반면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2가지 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매년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서류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각 연도별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그 개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단,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단순히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1. 인구학적 특성

소득근거자료의 제출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신고자와 종합소득신고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각 연도별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주요 변수로는 가구주여부, 가구원수, 성별, 나이, 결혼여부, 교육년수 등 이다. 특히 교육년수의 경우 졸업을 하였을 때 최종교육기관의 총 교육기간을 모두 적용하였으며 재학, 수료, 중퇴 등은 최종교육기관의 총 교육기간 중 절반의 기간만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4차년도 부터는 혼인상태에 대한 조사내용이 일부 세분

화되었다. 이전 조사에서는 기혼과 미혼으로만 조사하였으나, 4차년도는 기혼(배우자 있음), 기혼(사별, 이혼), 미혼(결혼한적 없음)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과거년도와의 일치를 위해 기혼과 미혼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의 결과는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항목무응답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나타내었다. 2010년 귀속자료의 수집율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신고를 한 사람 중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표본수는 1245명이며 미제출한 사람은 777명이다. 제출한 사람 중 가구주인 비율은 약 74%이고, 미제출한 사람 중 가구주인 비율은 약 61%로 나타나,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가구주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제출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약 3.41명이었으며, 제출하지 않은 사람의 가구원수는 평균 3.44명으로 제출한 경우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제출한 사람들 중 여성인 경우는 약 29% 였고, 미제출한 사람들 중 여성인 경우는 약 32%로, 미제출한 사람들 중 여성인 비율이 제출한 사람들 중 여성인 비율보다 높았다. 연령에서는 미제출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약 39.8세로 제출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보다 많았다. 제출한 사람 중 기혼인 비율은 약 87%, 미제출한 사람은 71%로 나타났고, 교육년수는 제출자와 미제출자가 약 14년 정도로 비슷하였다. 제출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귀속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2007년 귀속자료에 비해 123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제출한 표본수에서 2009 년 귀속에는 2008년 귀속의 표본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010년 귀속 결과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이 가구주인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제출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미제출한 사람들인 경우 제출한 사람들보다 약간 높았고, 대부분 평균 가구원수는 3명 이상이었다. 성별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25~30% 이내로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패널자료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표본의 나이도 증가하는 연령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연도가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인 평균 연령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출한 사람들이 기혼

상태인 비율이 미제출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년수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근로소득)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제출 [690]	미제출 [1697]	제출 [1122]	미제출 [1088]	제출 [1126]	미제출 [989]	제출 [1245]	미제출 [777]
가구주(=1)	0.74 (0.44)	0.71 (0.45)	0.75 (0.43)	0.65 (0.47)	0.75 (0.43)	0.63 (0.48)	0.74 (0.43)	0.61 (0.49)
가구원수(명)	3.37 (1.18)	3.44 (1.15)	3.34 (1.18)	3.48 (1.11)	3.38 (1.10)	3.48 (1.21)	3.41 (1.11)	3.44 (1.18)
여성(=1)	0.28 (0.45)	0.25 (0.43)	0.28 (0.45)	0.30 (0.46)	0.27 (0.44)	0.31 (0.46)	0.29 (0.45)	0.32 (0.47)
연령	37.77 (8.68)	39.15 (27.91)	38.39 (9.05)	38.84 (9.83)	38.93 (8.86)	39.30 (10.19)	39.79 (8.83)	38.98 (10.12)
기혼(=1)	0.81 (0.39)	0.78 (0.41)	0.82 (0.38)	0.76 (0.43)	0.85 (0.36)	0.75 (0.43)	0.87 (0.34)	0.71 (0.45)
교육년수	14.23 (2.48)	14.23 (2.63)	14.26 (2.53)	14.44 (2.43)	14.38 (2.42)	14.34 (2.63)	14.26 (2.56)	14.55 (2.5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대괄호는 표본수, 소괄호는 표준편차 값임.
3: 각 연도는 수집자료의 귀속년도임.

나.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의 결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신고자의 비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보다 낮았으며,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한 비율이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부를 제외한 다른 특성에서는 미제출한 사람들의 특성과 일관되게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제출여부의 행태가 다음 연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구성 표본에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2] 따라서 전년도에

12) 1-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의 조건부 전이확률($\Pr[X_{it+1}=s_k|X_{it}=s_h]$)를 확인한 결과, 제출하였던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제출할 확률은 85.8%, 미제출한 사람이 미제출할 확률은 73.8%, 제출한 사람이 미제출할 확률은 14.2%, 미제출한 사람이 제출할 확률은 26.2%로 나타났

다른 행태를 보인 표본이 유입이 되더라도 전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2010년 귀속 자료를 제출한 사람들 중 가구주인 경우는 약 71%, 미제출한 사람 중 가구주인 비율은 약 77%로, 미제출한 사람들 중 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출한 사람이 속한 가구와 미제출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제출한 사람 중 여성인 비율이 약 38%로 미제출한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약 45.9세, 미제출한 사람들은 평균 약 46.0세로 나타나, 미제출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상태에서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기혼인 비율은 90%이상으로 비슷하였으며, 교육년수는 약 13년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귀속과 2008년 귀속의 제출자수의 변화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표 Ⅷ-2>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종합소득)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제출 [86]	미제출 [636]	제출 [203]	미제출 [496]	제출 [216]	미제출 [523]	제출 [268]	미제출 [459]
가구주(=1)	0.76 (0.43)	0.82 (0.38)	0.73 (0.44)	0.80 (0.40)	0.73 (0.44)	0.77 (0.42)	0.71 (0.45)	0.77 (0.42)
가구원수(명)	3.47 (1.08)	3.43 (1.17)	3.50 (1.08)	3.47 (1.19)	3.48 (1.11)	3.49 (1.09)	3.50 (1.08)	3.43 (1.18)
여성(=1)	0.45 (0.50)	0.26 (0.44)	0.41 (0.49)	0.27 (0.45)	0.39 (0.49)	0.27 (0.44)	0.38 (0.49)	0.29 (0.45)
연령	42.72 (9.45)	45.81 (9.52)	44.63 (9.56)	46.34 (9.25)	45.64 (9.12)	45.41 (9.32)	45.98 (9.96)	46.07 (9.46)
기혼(=1)	0.97 (0.18)	0.94 (0.23)	0.94 (0.24)	0.95 (0.22)	0.95 (0.22)	0.94 (0.23)	0.93 (0.24)	0.94 (0.24)
교육년수	13.27 (2.86)	12.88 (3.01)	13.09 (2.15)	13.07 (2.82)	13.05 (2.44)	13.05 (2.60)	13.07 (2.57)	13.39 (2.5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대괄호는 표본수, 소괄호는 표준편차 값임
3: 각 연도는 수집자료의 귀속년도임

다.

2. 소득 및 경제상태 특성

본 절에서는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의 가구소득 및 경제상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소득은 개인의 소득과 가구 내에서의 개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소득으로 구성하였다. 연간 가구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구성하였으며 가구 내 가구원들의 연간 경상소득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가구의 경제상태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과 그 합으로 총자산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부채를 제외하여 순자산을 산출하였다. 모두 평균 금액이며, 단위는 만원이다. 각 연도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고, 항목 무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결과에 포함시켰다.

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1) 가구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가구소득을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귀속 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의 개인근로소득은 평균 약 3671.8만원, 미제출자의 경우 평균 약 3519.8만원으로 제출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개인근로소득 이외의 가구소득에서는 미제출자의 소득이 평균 약 2419.9만원으로 제출자보다 높았으며, 가구소득에서도 미제출자가 속한 가구소득이 평균 약 5936.9만원으로 제출자보다 높았다. 다른 연도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근로소득, 개인근로소득 이외의 가구소득, 가구소득에서 2010년 귀속 자료 제출여부 특성과 유사하였다. 이 결과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개인근로소득이 가구소득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제출자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Ⅷ-3>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가구소득(근로소득)

단위(만원)	2007		2008		2009		2010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개인근로소득	3537.7 (2102.8)	3433.3 (2074.7)	3537.1 (2154.1)	3314.2 (2228.0)	3572.2 (2560.1)	3340.3 (3245.1)	3671.8 (2319.6)	3519.8 (2317.9)
개인근로소득 이외의 가구소득	1237.3 (1788.9)	1497.5 (2189.9)	1376.1 (1924.5)	1792.8 (2428.6)	1476.5 (3046.2)	1932.6 (2618.4)	1639.9 (2289.9)	2419.9 (3202.5)
가구소득	4768.1 (2672.5)	4931.5 (2895.6)	4927.0 (2792.5)	5099.6 (3090.2)	5050.9 (4009.6)	5277.6 (4119.9)	5310.8 (3098.3)	5936.9 (3831.2)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대괄호는 표본수, 소괄호는 표준편차 값임
3: 각 연도는 수집 자료의 귀속년도임

2) 가구자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가구자산의 현황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귀속 자료를 제출한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금융자산은 평균 약 3916.5만원, 미제출한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금융자산은 평균 3950.0만원으로, 미제출한 사람들의 평균 금융자산 규모가 컸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제출한 사람들의 가구는 평균 약 23638.4만원, 미제출한 사람들의 가구는 평균 약 28633.6만원으로 미제출한 사람들의 부동산자산 규모가 더 컸다. 총자산의 규모에서는 부동산자산 규모의 영향으로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부채의 경우에도 역시 미제출한 사람들이 속한 가구가 더 많았으며, 순자산에서도 제출자들의 가구는 평균 약 22870.7만원, 미제출자들의 가구는 평균 약 27503.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2008년, 2009년 귀속 자료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가구 자산 특성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목 금액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표 Ⅷ-4>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가구자산(근로소득)

단위(만원)	2007		2008		2009		2010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금융자산	3338.3 (5390.2)	3250.1 (5802.6)	3428.7 (6070.5)	3244.2 (6122.8)	3771.1 (6528.2)	3486.8 (6309.2)	3916.5 (6908.1)	3950.0 (6616.2)
부동산자산	19887.4 (26669.4)	24135.0 (32544.6)	20820.7 (26193.0)	26069.2 (34805.0)	22142.6 (41113.4)	25827.5 (46291.8)	23638.4 (40548.1)	28633.6 (52761.2)
기타자산	46.6 (665.2)	773.0 (15990.4)	182.9 (1947.7)	130.6 (1725.3)	47.5 (737.6)	91.5 (868.1)	116.4 (1100.8)	71.6 (787.6)
총자산	23272.3 (28862.5)	28158.1 (39650.7)	24432.2 (29086.7)	29444.0 (37153.6)	25961.2 (43317.0)	29405.9 (48424.1)	27671.3 (43172.1)	32655.2 (54905.7)
부채	4118.1 (8659.0)	3852.5 (8075.8)	4415.5 (9230.6)	4331.9 (8350.3)	4763.4 (7881.5)	4349.1 (8460.4)	4800.6 (8174.1)	5151.5 (9801.9)
순자산	19154.1 (27214.8)	24305.6 (36871.2)	20016.7 (25295.5)	25112.1 (33998.1)	21197.8 (40831.4)	25056.7 (46042.3)	22870.7 (39970.7)	27503.8 (51142.8)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대괄호는 표본수, 소괄호는 표준편차 값임.
3: 각 연도는 수집 자료의 귀속년도임.

나. 종합소득세 신고자

1) 가구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가구자산의 특성을 나타낸 결과표에서, 개인사업소득은 가구원 조사표에서 '사업소득'으로 명시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사업소득 이외의 가구소득의 산출방법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결과표에서의 구성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결과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제출자·미제출자의 유사한 특성과는 달리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귀속 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의 사업소득은 평균 약 1402.0만원, 미제출한 사람들은 평균 약 4673.1만원으로, 미제출한 사람의 개인사업소득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의 차

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개인사업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근거자료를 미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2007년 귀속 자료 제출자·미제출자의 결과는 표본수의 차이가 매우 커서 이러한 추정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8년 귀속 이후, 서류를 제출한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귀속 자료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업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근거자료를 미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각 연도별 결과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Ⅷ-5>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가구소득(종합소득)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개인종합소득	1884.1 (2300.7)	3916.5 (3320.0)	1145.4 (1609.4)	3675.3 (3446.9)	1156.6 (1583.8)	3862.0 (4102.7)	1402.0 (2291.0)	4673.1 (4478.5)
개인종합소득 이외의 가구소득	1633.1 (2968.3)	1208.4 (2262.1)	1513.2 (2077.0)	1599.9 (2673.4)	1540.1 (2665.2)	1541.9 (2582.7)	1893.1 (2867.6)	1849.2 (2927.6)
가구소득	3494.7 (3873.5)	5139.4 (3750.9)	2646.0 (2686.4)	5209.9 (4357.6)	2696.7 (3351.1)	5404.0 (4541.5)	3305.8 (3721.2)	6522.3 (5396.4)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대괄호는 표본수, 소괄호는 표준편차 값임
3: 각 연도는 수집 자료의 귀속년도임

2) 가구자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가구자산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귀속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금융자산은 평균 약 4850.6만원, 미제출한 사람의 경우 평균 약 5037.6만원으로 나타나, 미제출한 사람의 가구금융자산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제출한 사람은 평

균 약 34369.3만원, 미제출한 사람은 평균 약 38478.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융자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제출한 사람들의 가구에서 더 큰 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 총자산에도 비슷한 차이를 보이며, 부채의 경우 미제출한 사람의 가구가 더 작았다. 따라서 가구 순자산은 미제출한 사람들이 속한 가구의 경우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자산에서는 2007 ~ 2009년 귀속의 결과와는 반대였으며, 부동산자산, 총자산, 순자산에서는 2007년 귀속의 결과를 제외하고 유사하였다.

<표 Ⅷ-6>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가구자산(종합소득)

단위(만원)	2007		2008		2009		2010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금융자산	4153.6 (6147.1)	3261.8 (6960.6)	3703.5 (6658.9)	3302.3 (6518.3)	3545.7 (5205.2)	3389.0 (6963.1)	4850.6 (14894.0)	5037.6 (15644.3)
부동산자산	37130.2 (66550.2)	31765.2 (50820.5)	316058.7 (50195.8)	35292.4 (55465.4)	30257.5 (45375.3)	32906.5 (54697.5)	34369.3 (52298.1)	38478.2 (59778.0)
기타자산	391.1 (2697.2)	429.9 (7529.7)	580.6 (3788.4)	251.0 (1863.5)	209.3 (1176.7)	350.7 (2381.7)	223.6 (1764.2)	386.2 (2250.0)
총자산	41674.8 (69689.7)	35456.9 (54379.3)	35889.8 (53735.4)	38845.7 (58226.4)	34012.5 (47940.6)	36646.2 (56708.9)	39443.6 (57002.7)	43902.1 (67749.8)
부채	8543.8 (14865.1)	7585.4 (16999.6)	6968.2 (11245.4)	8083.4 (19337.3)	7108.1 (10994.5)	7181.8 (13756.0)	8645.1 (15388.5)	7343.4 (15457.1)
순자산	33131.0 (68647.6)	27871.5 (50431.0)	28921.6 (46837.8)	30762.3 (53695.0)	26904.3 (43510.0)	29464.5 (52184.7)	30798.5 (48945.9)	36558.7 (63904.7)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대괄호는 표본수, 소괄호는 표준편차 값임
3: 각 연도는 수집 자료의 귀속년도임

3. 소득분위별 소득근거자료 제출 특성

본 절에서는 소득분위별 소득근거자료 제출여부 특성을 살펴본다. 소득분위는 개인소득분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 귀속년도별 결과의 비교를 위한 소득근거자료 제출 분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가. 각 소득분위별 소득근거자료 제출 비교

각 개인소득분위별 제출여부 비율을 나타낸 결과는 귀속년도별 소득세를 신고한 응답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2010년 귀속 결과에서는 1분위 87.8%, 2분위 63.2%, 3분위 57.4%, 4분위 54.9%, 5분위 50.4%로 상위분위일수록 제출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각 귀속년도별 자료의 제출자 비율은 1분위에서 2007년 52.0%, 2008년 75.5%, 2009년 76.7%, 2010년 87.8%로 크게 증가하였다. 2분위에서는 2007년 28.7%, 2008년 45.8%, 2009년 50.9%, 2010년 63.2%로 나타났으며, 3분위, 4분위, 5분위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07년 귀속 자료 제출 결과에 비해 2010년에는 각 분위에서 대략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Ⅷ-7> 각 소득분위별 소득근거자료 분포 비교

단위(%)	2007		2008		2009		2010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1분위(100)	52.0	48.0	75.5	24.5	76.7	23.3	87.8	12.5
2분위(100)	28.7	71.3	45.8	54.2	50.9	49.1	63.2	36.8
3분위(100)	24.8	75.2	42.7	57.3	49.0	51.0	57.4	42.6
4분위(100)	23.6	76.4	46.4	53.6	43.3	56.7	54.9	45.1
5분위(100)	25.5	74.5	45.3	54.7	45.9	54.1	50.4	49.6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분석대상은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 기준임
3: 각 연도는 수집 자료의 귀속년도임

나. 각 소득분위별 소득근거자료 제출자 분포 변화(2007 기준)

각 개인소득분위별로 2007년 귀속 소득근거자료 제출자들을 기준으로하여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귀속 결과에서는 1분위에서 52.0%를 차지하였고, 2분위 28.7%, 3분위 24.8%, 4분위 23.6%, 5분위에서는 25.5%로 나타나, 하위분위로 갈수록 소득신고를 한 사람들이 소득근거자료를 제출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귀속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2008년 귀속 제출자의 분포 변화의 결과에서는 1분위 54.8%, 2분위 31.5%, 3분위 26.6%, 4분위 25.0%, 5분위 25.7%로 조사되었으며, 각각 2.8%p, 2.8%p, 1.8%p, 1.4%p, 0.2%p 증가하였다. 주로 하위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증가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2007 - 2008년 귀속의 결과에서의 증가폭은 1분위 0.5%p 감소, 2분위 4.0% 증가, 3분위 1.0%p 감소, 4분위 1.1%p 증가, 5분위 0.5%p 증가로 나타나, 2007 - 2008년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2007- 2010년 귀속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근거자료의 제출율의 증가로 인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Ⅷ-8> 각 소득분위별 소득근거자료 제출자 분포 변화(2007 기준)

단위(%)		2007	2007 - 2008	2007 - 2009	2007 - 2010
1분위		52.0	54.8	51.5	60.8
	증감	-	2.8	-0.5	8.8
2분위		28.7	31.5	32.7	36.0
	증감	-	2.8	4.0	7.3
3분위		24.8	26.6	23.8	26.2
	증감	-	1.8	-1.0	1.4
4분위		23.6	25.0	24.7	26.3
	증감	-	1.4	1.1	2.7
5분위		25.5	25.7	26.0	27.9
	증감	-	0.2	0.5	2.4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분석대상은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 기준임
3: 각 연도는 수집 자료의 귀속년도임

Ⅸ. 주요 항목 동태적 이동성 분석

본 장에서는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되어지는 주요 항목들의 시점간의 이동성 측정방법을 통하여,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거주형태, 소득, 자산 등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본다. 이 방법은 구간 설정에 따라 추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계산상의 편의성과 용이성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행행렬의 특징[13]은 첫째, 대각원소는 두 시점간의 변화가 없었던 것을 의미하며 잔존할 확률을 나타낸다. 소득에 대한 이행행렬에서 대각원소 상위의 부분은 소득이 상위분위로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하위의 부분은 소득이 하위분위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소득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상하의 개념보다는 변동에 대한 확률로 해석되어, 해당 결과에서 행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최하위 소득분위와 최상위 소득분위의 잔존확률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끝점효과(endpoint effect)이다. 이는 최하위와 최상위에서는 하한과 상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째, 평균이상으로 나타난 소득분위가 다음 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가 될 확률이 높으며, 반면 평균이하로 나타난 소득분위에서는 다음 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는 평균지향효과(mean reversion effect)이다. 성명재(2011)에 따르면, 이러한 특징들은 재정패널자료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 종사상지위

종사상지위의 이행행렬은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점은 2007년의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2010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며, 구분은 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무직(학생, 주부 포함) 등 총 6가지로 나누었다.

13) 성명재(2011),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03. 참조.

가. 가구주 종사상지위 변화

1) 가구주 종사상지위 이행행렬

가구주의 2007년 기준 2010년의 종사상지위의 이행행렬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임금근로자였던 가구주가 2010년에도 그대로 유지된 비율은 82.5%로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 임금근로자가 된 비율은 36.5%, 유지될 비율은 34.2%, 무직인 상태로 된 비율은 15.4%로 다른 종사상지위(2007년 무직 제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11.7%, 4.3%, 66.9%, 6.8%, 0.8%, 9.5%로 2010년 무직으로 된 비율이 9.5%로 일용직 근로자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0년 임금근로자로 변화된 비율이 17.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8.6%로 변동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2010년에는 임금근로자 22.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3.8%로 변화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직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로 변경된 비율은 14.0%, 일용직근로자 8.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8%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직자의 구성에 자발적·비자발적 실업자, 학생, 주부 등이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일용직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보다 종사상지위의 변동 비율이 낮았다.

<표 IX-1> 가구주 종사상지위 이행행렬

단위(%)		2010						총계
		임금	일용	자영	사업주	무급	무직	
2007	임금	82.5	4.6	6.9	2.2	0.04	3.7	100.0
	일용	36.5	34.2	12.3	1.3	0.3	15.4	100.0
	고용없는 자영업자	11.7	4.3	66.9	6.8	0.8	9.5	100.0
	고용원있는 사업주	17.6	0.0	28.6	48.4	1.9	3.5	100.0
	무급가족 종사자	22.3	7.0	23.8	6.2	34.8	5.9	100.0
	무직	14.0	8.4	6.8	0.7	0.4	69.7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가구주 종사상지위 변화 결과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17.4%, 무직자 30.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3.1%, 고용원 있는 사업주 51.6%, 무급가족종사자 65.2%, 일용직근로자 65.8% 순으로 변동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용직 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변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IX-2> 가구주 종사상지위 변화 결과

단위(%)		2010		총계
		변동	유지	
2007	임금	17.4	82.5	100.0
	일용	65.8	34.2	100.0
	고용없는 자영업자	33.1	66.9	100.0
	고용원있는 사업주	51.6	48.4	100.0
	무급가족 종사자	65.2	34.8	100.0
	무직	30.3	69.7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나. 가구원 종사상지위 변화

1) 가구원 종사상지위 이행행렬

가구원 종사상지위 변화는 가구주를 포함한 개인들의 종사상지위를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임금근로자였던 가구원이 그대로 유지될 비율은 7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2010년에 임금근로자로 종사상지위가 변동된 비율이 39.1%로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종사상지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직자로 변동된 비율이 21.6%에 달해 고

용상태가 지속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그대로 유지될 비율은 65.8%로 조사되었으며, 임금근로자로 변동될 비율은 10.9%, 무직자는 11.6%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될 비율이 28.5%, 임금근로자로 될 비율이 16.6%로 높게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무직자로 될 비율이 30.3%로 종사상지위가 원래 무직자를 제외하고 일용직 근로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직자는 2010년에 그대로 유지될 비율이 87.0%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X-3> 가구원 종사상지위 이행행렬

단위(%)		2010						총계
		임금	일용	자영	사업주	무급	무직	
2007	임금	78.9	4.4	6.6	1.9	0.2	8.0	100.0
	일용	39.1	27.9	10.6	0.4	0.4	21.6	100.0
	고용없는 자영업자	10.9	4.0	65.8	6.4	1.3	11.6	100.0
	고용원있는 사업주	16.6	0.0	28.5	49.2	2.8	2.8	100.0
	무급가족 종사자	5.0	3.3	7.8	2.5	51.1	30.3	100.0
	무직	7.7	1.8	2.1	0.3	1.0	87.0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가구원 종사상지위 변화 결과

가구원 종사상지위 변화의 요약 결과를 살펴보면, 변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종사상지위는 일용직근로자 72.1%,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 50.7%, 무급가족종사자 48.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4.2%, 임금근로자 21.1%, 무직자 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비슷하게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나, 특히 무직자의 변동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가구내 취업자가 가구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X-4> 가구원 종사상지위 변화 결과

단위(%)		2010		총계
		변동	유지	
2007	임금	21.1	78.9	100.0
	일용	72.1	27.9	100.0
	고용없는 자영업자	34.2	65.8	100.0
	고용원있는 사업주	50.7	49.2	100.0
	무급가족 종사자	48.9	51.1	100.0
	무직	12.9	87.0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거주 주택

본 조사에서 거주주택에 대한 형태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복합용도 주택 등으로 나누어지며, 점유방식은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재정패널조사에서 나타난 가구의 거주주택의 형태 및 점유방식에 대한 변화 행태를 살펴볼 수 있다.

가. 거주주택 형태 변화

1) 거주 주택 형태 이행행렬

거주주택 형태의 변화에 대한 결과에서는 2007년 거주 형태가 단독주택이었던 가구에서 2010년에도 단독주택으로 변동이 없었을 비율은 87.7%였으며, 다른 형태로 변동된 비율은 아파트 7.4%, 연립주택 5.7%, 복합용도 주택 1.9%, 오피스텔 0.2%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아파트 거주형태에서는 변화가 없는 비율은

92.2%, 연립주택으로 변동된 비율은 3.5%, 단독주택 3.1%, 오피스텔 0.6%, 복합용도 주택은 0.5% 순으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연립주택은 그대로 유지된 비율이 69.5%, 변동된 비율이 아파트는 17.4%, 단독주택은 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피스텔 거주형태에서는 그대로 유지된 비율이 34.5%였고, 변화된 비율은 아파트 35.5%, 오피스텔 34.5%, 단독주택 10.0% 순으로 조사되었다. 복합용도 주택에서는 유지된 비율이 58.5%, 단독주택은 20.8%, 아파트 13.5%, 연립주택 5.8%, 오피스텔 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X-5> 거주 주택 형태 이행행렬

단위(%)		2010					총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복합용도	
2007	단독주택	87.8	7.4	5.7	0.2	1.9	100.0
	아파트	3.1	92.2	3.5	0.6	0.5	100.0
	연립주택	9.5	17.4	69.5	2.7	0.9	100.0
	오피스텔	10.0	35.5	16.5	34.5	3.5	100.0
	복합용도 주택	20.8	13.5	5.8	1.4	58.5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거주 주택 형태 변화 결과

거주 주택 형태에 대한 변동 결과 요약에서는 오피스텔이 65.5%로 가장 높은 변동율을 나타냈으며, 그 뒤로 복합용도 주택 41.5%, 연립주택 30.5%, 단독주택 15.2%, 아파트 7.7%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업무 및 영업 용도인 주택 형태에서 높은 변동 비율이 나타났다.

<표 Ⅸ-6> 거주 주택 형태 변화 결과

단위(%)		2010		총계
		변동	유지	
2007	단독주택	15.2	87.8	100.0
	아파트	7.7	92.2	100.0
	연립주택	30.5	69.5	100.0
	오피스텔	65.5	34.5	100.0
	복합용도 주택	41.5	58.5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나. 거주주택 점유형태 변화

1) 거주 주택 점유형태 이행행렬

거주주택의 점유형태 변화에서는 2007년 자가였던 가구가 2010년에도 자가인 경우는 88.3%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세로 변동한 가구의 비율은 5.4%, 보증부 월세 1.4%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전세였던 가구에서는 2010년 그대로 유지될 비율이 67.6%, 자가로 변동된 비율이 18.8%, 보증부월세 10.2%, 무보증 월세 1.0%로 나타났다. 보증부 월세에서는 유지된 비율이 62.9%, 전세로 변동된 비율이 19.6%, 자가 11.9%로 조사되었으며, 무보증 월세에서는 보증부 월세로 변화된 비율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X-7> 거주 주택 점유형태 이행행렬

단위(%)		2010					총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기타	
2007	자가	88.3	5.4	1.4	0.2	4.7	100.0
	전세	18.8	67.6	10.2	1.0	2.4	100.0
	보증부 월세	11.9	19.6	62.9	1.9	3.7	100.0
	무보증 월세	14.3	11.5	33.9	31.2	9.1	100.0
	기타	16.0	19.2	11.4	4.3	49.2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거주 주택 점유형태 변화 결과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변화 결과 요약을 살펴보면, 무보증 월세의 경우에서 68.8%로 가장 큰 변동 비율이 나타났으나, 변동의 대부분은 보증부 월세의 전환인 것으로 나타나 점유형태에서 사실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로 보증부 월세 37.1%, 전세 32.4% 순으로 변동 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X-8> 거주 주택 점유형태 변화 결과

단위(%)		2010		총계
		변동	유지	
2007	자가	11.7	88.3	100.0
	전세	32.4	67.6	100.0
	보증부 월세	37.1	62.9	100.0
	무보증 월세	68.8	31.2	100.0
	기타	50.9	49.2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3. 정부지원현금

정부지원현금의 장기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조사한 항목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장려금, 유가보조금 등이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생계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으며, 매년 대상기준은 최저생계비의 조정으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수급가구에서 2010년 수급가구로 변화가 없었던 가구은 68.6%, 비수급가구로 변화된 가구는 31.4%로 나타났으며, 2007년 비수급가구에서는 변화가 없는 가구는 98.5%로 나타나 거의 변화는 없었다.

<표 IX-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이행행렬

단위(%)		2010		총계
		수급	비수급	
2007	수급	68.6	31.4	100.0
	비수급	1.5	98.5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나. 근로장려금 수급 변화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3차년도부터 조사를 실시하

였다. 근로장려금 수급 변화는 2009년 근로장려금 수급여부와 2010년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가구를 파악한 후, 이들 중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예를들어, 2009년 수급여부에서 '아니오'로 응답하였으나 2010년 수급여부에서 '예'로 응답한 경우, '비수급→수급'으로 처리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수급했던 가구가 2010년에도 수급한 비율은 96.6%, 비수급으로 변화한 가구는 3.4%에 불과하였다. 2009년 비수급가구에서 2010년 수급가구로 변화한 비율은 94.9%로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가 없었던 가구의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표 IX-10> 근로장려금 수급 이행행렬

단위(%)		2010		총계
		수급	비수급	
2009	수급 [22]	96.6 [21]	3.4 [1]	100.0
	비수급 [34]	94.9 [32]	5.1 [2]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대괄호는 사용된 표본수

다. 유가보조금 수급 변화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3차년도부터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2001년부터 2006년 6월의 기간 동안 시행된 경유·LPG 등에 부과되는 유류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데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동 기간 중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을 보유한 운수사업자 혹은 연료비를 부담한자이다.

유가보조금 수급 변화에 대한 결과는 해당 신청가능자가 있는 가구를 유효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수급가구가 2010년에도 수급한 비율은 15.4%였고, 비수급으로 변화한 가구는 84.6%로 상당히 많은 수의 가구가 변동이 있었다. 2009년 비수급가구에서 2010년 수급가구로 변화된 가구는 2.1%, 그대로 비수급가구로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97.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IX-11> 유가보조금 수급 이행행렬

단위(%)		2010		총계
		수급	비수급	
2009	수급	15.4	84.6	100.0
	비수급	2.1	97.9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4. 소득 및 자산 이동성 분석

본 절에서는 가구가 속한 특정 소득분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태적 변화를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득분포를 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구의 생애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득의 상대순위 및 절대수준이 가변적인 특성을 소득이동성[14]이라고 하며, 수많은 연구에서 동태적 측면에서 살펴본 소득이동성의 변화는 소득의 불평등 및 분배구조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첫 번째로, 표본의 연령 상승효과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소득지위가 고착될 수 있으며, 둘째로, 본 절에서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는 재정패널조사는 시계열이 짧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동성의 변동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득지위를 구분함에 있어 5개 분위 또는 10개 분위로 나타내는 상대적 소득수준이 있고, 전체 소득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소득지위를 구분하는 절대적 소득수준으로 나누어진다. 본 절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균등화 지수를 반영한 상대적 순위이다. 강신욱 외(2010)에 따르면, 상대적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결정할 경우, 전체 소득분포 내에서의 한 가구의 상대적 순위이므로 자신의 소득이 변함

14) 성명재(2007),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7.04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위가 변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인 상대적 소득수준 측정방법으로 결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 사용한 소득은 경상소득[15]이며, 가구원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공적연금보험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지원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보험), 민간연금보험소득(퇴직연금, 연금신탁/펀드/저축,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자동차보험), 정부지원현금, 가구간 이전소득(생활비, 용돈, 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차년도 이후 정부지원현금의 세부적인 조사를 목적으로 기존 가구에서 조사하였던 일부 항목을 가구원 조사표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따라서 가구소득을 구성함에 있어 1-3차년도 조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정부지원현금은 가구 조사표에서 조사된 부분을 가져와 구성하였다. 즉, 가구 조사표에서는 받은 가구원이 누구인지 명시를 하고 있어 가구원 자료와 병합이 가능하다. 1차년도부터 4차년도 조사까지 정부지원현금의 조사표 구성이 많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였다. 단, 국민생활기초보장급여와 자녀양육비는 가구가 받는 지원금으로 가구의 경상소득에 포함하였다. 가구의 경상소득은 앞서 구성된 가구원소득의 합계와 국민생활기초보장급여와 자녀양육비의 합계로 구성한다.

가. 2007 - 2010년 가구소득이동성

1) 가구소득이동성 이행행렬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0년도의 가구 소득이동성 변화를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도 소득분위가 1분위였던 가구가 2010년도에도 1분위로 변동이 없는 비율은 63.5%였고, 2007-2010년 2분위의 비율은 38.7%, 3분위의 비율은 33.2%, 4분위의 비율은 37.6%, 5분위의 비율은 63.2%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끝점효과와 평균지향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기준 분위의 인접한 분위로의 이동성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 2007-2010년도

1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경상소득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이 노동을 제공, 사업활동 또는 재산 등을 제공한 대가로써 받는 현금, 현물(상품 및 서비스)을 포함하고 정부, 비영리단체 및 타가구로부터 경상적으로 이전되는 이전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의 소득변동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즉, 2007년도 기준 2분위의 1단계 하락은 22.6%이고, 1단계 상승은 24.5%로 전체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도 3분위의 1단계 하락 비율은 22.7%이고, 1단계 상승 비율은 25.7%로 역시 이동성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도 4분위에서는 1단계 하락한 비율은 23.3%, 1단계 상승한 비율은 21.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X-12> 가구소득이동성 이행행렬

단위(%)		2010					총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7	1분위	63.5	23.6	9.5	2.5	0.8	100.0
	2분위	22.6	38.7	24.5	11.0	3.2	100.0
	3분위	10.0	22.7	33.2	25.7	8.4	100.0
	4분위	4.5	12.8	23.3	37.6	21.8	100.0
	5분위	3.7	4.2	8.6	20.3	63.2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가구소득이동성 결과

2007-2010년 소득지위 이동성을 요약한 결과를 살펴보면,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하락과 상승할 구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된 비율이 각각 63.5%, 63.2%로 높게 나타났다. 2007년도 기준 2분위에서 하위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22.6%였으며, 상위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38.7%로, 소득의 상향이동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2007년도 기준 3분위에서는 하위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32.7%였고, 상위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34.1%로 전체적으로 소득의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기준 4분위에서는 하위분위로 하락한 비율은 40.6%였고, 상위분위로 상승한 비율은 21.8%로 소득지위가 하락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의 확률과 상승

할 수 있는 구간의 확률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는 평균지향효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2007-2010년 결과에서는 소득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된 비율보다 이동성이 있었던 가구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X-13> 가구소득이동성 변화 결과

단위(%)		2010			총계
		하락	유지	상승	
2007	1분위	-	63.5	36.4	100.0
	2분위	22.6	38.7	38.7	100.0
	3분위	32.7	33.2	34.1	100.0
	4분위	40.6	37.6	21.8	100.0
	5분위	36.8	63.2	-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나. 2009 - 2010년 가구소득이동성

1) 가구소득이동성 이행행렬

2009년도 가구소득분위를 기준으로 2010년도에 나타난 소득이동성에 대한 분석결과의 경우, 2009-2010년 소득이동성에 대한 기간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분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09년도 기준 1분위에서 2010년도 1분위로 소득지위에 변동이 없었던 비율은 71.6%로 나타났다. 2009년도 기준 2분위에서는 50.9%, 3분위 43.8%, 4분위 49.5%, 5분위 70.9%로 2007-2010년의 결과보다 소득의 변동이 없었던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 기준 1분위와 5분위의 소득변동이 없었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3분위의 유지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점은 앞의 결과와 유사한 모습이었다. 또한 각 소득지위의 변동이 없었던 분위의 인접 분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9년 1분위 기준에서 1단

계 상승한 가구의 비율은 18.8%였으며, 2분위에서 1단계 상승한 비율은 21.6%, 3분위에서 1단계 상승한 비율은 43.8%, 4분위에서 1단계 상승한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반면, 분위별로 1단계 하락한 비율은 2분위 16.0%, 3분위 19.8%, 4분위 21.6%, 5분위 20.0%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상승한 비율과 하락한 비율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상승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X-14> 가구소득이동성 이행행렬

단위(%)		2010					총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9	1분위	71.6	18.8	5.7	2.3	1.6	100.0
	2분위	18.4	50.9	21.6	6.6	2.5	100.0
	3분위	7.6	21.8	43.8	21.4	5.4	100.0
	4분위	2.9	6.4	22.8	49.5	18.3	100.0
	5분위	1.3	1.9	5.0	20.1	71.7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가구소득이동성 결과

2009-2010년 가구소득이동성의 요약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 1분위에서 상승한 비율은 28.4%로, 유지된 비율보다 매우 낮았다. 2분위에서 하락한 비율은 18.4%, 상승한 비율은 30.7%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지된 비율과 변동된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분위에서는 하락한 비율은 29.4%, 상승한 비율은 26.8%로 하락한 비율과 상승한 비율이 비슷함을 보였으며, 다른 분위에 비해 3분위에서 소득지위의 이동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4분위에서는 하락한 비율은 32.1%, 상승한 비율은 18.3%로 하락한 비율이 상승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5분위에서는 하락한 비율은 28.3%로 1분위와 마찬가지로, 소득지위의 변동이 낮게 이루어졌다.

2009-2010년의 소득이동성의 결과에서, 소득지위의 변동이 없었던 가구의 비율

이 변동이 발생한 가구의 비율보다 많아, 이 기간 동안의 소득이동성은 낮았던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분석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2007-2010년의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였다. 그러나 각 분위별로 소득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던 비율의 모습과 인접 단계의 변동의 비율 행태에서는 그 규모의 차이가 다소 있었으나 거의 유사하였다.

<표 IX-15> 가구소득이동성 변화 결과

단위(%)		2010			총계
		하락	유지	상승	
2009	1분위	-	71.6	28.4	100.0
	2분위	18.4	50.9	30.7	100.0
	3분위	29.4	43.8	26.8	100.0
	4분위	32.1	49.5	18.3	100.0
	5분위	28.3	71.7	-	10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다. 가구주 연령별 소득이동성

연령에 따른 소득이동성은 연간소득의 경우 생애주기관점에서의 소득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시점에서는 연령별 인구분포구조의 차이·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16] 따라서 연령별 소득이동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가구주의 소득이동성을 파악해 보았다. 단, 2007년을 기준으로 2010년의 소득이동성을 살펴본 결과이므로 시계열이 상당히 짧고, 세부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동성을 설명하는 가구주의 수가 적은 경우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

16) 성명재(2010), 인구구조가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0.04.

1) 2007년도 소득분위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이동성 이행행렬

2007년도 가구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이동성을 나타낸 결과는 2007년도 각 분위와 연령대를 기준으로 2010년도에 어느 분위로 소득지위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 20대 이하 가구주 그룹을 살펴보면, 2007년 1분위에서 2010년에도 1분위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은 10.2%로 나타났으며, 2분위 37.6%, 3분위 35.6%로의 소득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2007년 2분위를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된 비율은 35.5%와 상위단계로 상승한 비율 3분위 38.5%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7년 3분위를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된 비율은 27.5%, 소득이동이 발생한 2분위와 3분위는 20.5%, 32.4%로 높았다. 2007년 4분위 기준에서는 그대로 유지된 비율은 30.4%, 한단계 하락한 비율은 33.7%로 나타났다. 2007년 5분위에서는 그대로 유지된 비율이 57.8%로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의 결과에서는 2007년 1분위였던 가구주에서 가장 활발한 소득이동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30대 가구주 그룹을 살펴보면, 2007년 1분위에서 2010년 1분위로 유지된 비율은 43.5%로 나타났다. 그 뒤로 2분위 40.4%, 3분위 38.9%, 4분위 41.0%, 5분위 60.2%로 5분위에서 가장 소득이동성이 낮았으며, 다른 소득분위의 이동성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7년 40대 가구주 그룹을 살펴보면, 2007년 1분위에서 2010년 1분위로 유지된 비율은 51.2%, 2분위 42.4%, 3분위 34.2%, 4분위 42.2%, 5분위 72.4%로 5분위에서 소득이동성이 가장 낮았고 3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7년 50대 가구주 그룹을 살펴보면, 2007년 1분위에서 2010년 1분위로 유지된 비율은 42.2%, 2분위 36.9%, 3분위 30.2%, 4분위 31.8%, 5분위 62.7%로 40대의 가구주 그룹보다는 다소 높은 소득이동성을 나타냈지만, 비슷한 모습의 분포를 보였다.

2007년 60세 이상 가구주 그룹을 살펴보면, 2007년 1분위에서 2010년 1분위로 유지된 비율은 79.3%, 2분위 36.1%, 3분위 23.6%, 4분위 30.8%, 5분위 46.9%로 최하위분위와 최상위분위에서 소득이동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X-16> 2007년도 소득분위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이동성 이행행렬

2007 \ 201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총계(%)
20대 이하	1분위	10.2	37.6	35.6	11.5	5.2	100
	2분위	10.7	35.5	38.5	11.8	3.4	100
	3분위	12.1	20.5	27.5	32.4	7.6	100
	4분위	1.7	16.0	33.7	30.4	18.1	100
	5분위	0.0	2.2	10.6	29.5	57.8	100
30대	1분위	43.5	40.4	8.5	7.6	0.0	100
	2분위	15.9	40.4	25.9	15.0	2.8	100
	3분위	6.2	20.0	38.9	24.5	10.4	100
	4분위	5.1	11.2	23.9	41.0	18.8	100
	5분위	5.2	2.8	7.4	24.4	60.2	100
40대	1분위	51.2	33.9	13.5	0.7	0.7	100
	2분위	15.6	42.4	27.8	11.1	3.2	100
	3분위	8.6	22.4	34.2	26.8	8.1	100
	4분위	5.5	7.2	20.5	42.2	24.6	100
	5분위	3.8	2.9	7.2	13.7	72.4	100
50대	1분위	42.2	31.8	17.4	7.0	1.6	100
	2분위	18.8	36.9	27.2	13.5	3.6	100
	3분위	12.1	22.8	30.2	26.1	8.8	100
	4분위	2.0	17.7	18.7	31.8	29.7	100
	5분위	2.1	4.5	10.5	20.2	62.7	100
60세 이상	1분위	79.3	15.6	4.5	0.2	0.4	100
	2분위	43.9	36.1	11.9	4.7	3.4	100
	3분위	20.1	35.1	23.6	18.9	2.3	100
	4분위	8.4	24.2	24.8	30.8	11.8	100
	5분위	4.7	20.2	12.5	15.7	46.9	100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2007년도 소득분위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이동성 결과

2007년도 소득분위기준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이동성을 요약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20대 이하에서 유지된 비율은 1분위 10.2%, 2분위 35.5%, 3분위 27.5%, 4분위 30.4%, 5분위 57.8%로 상위분위일수록 소득이동성이 낮았다. 특히 1분위에서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분위와 3분위에서는 하락한 비율보다 상승한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30대에서 유지된 비율은 1분위 43.5%, 2분위 40.4%, 3분위 38.9%, 4분위 41.0%, 5분위 60.2%로 나타났으며, 5분위를 제외하고 유지된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2분위와 3분위에서는 하락한 비율보다 상승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4분위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40대에서 유지된 비율은 1분위 51.2%, 2분위 42.4%, 3분위 34.2%, 4분위 42.2%, 5분위 72.4%로 나타났다. 30대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며, 2분위와 3분위의 하락한 비율과 상승한 비율의 차이는 다소 낮아졌다.

50대에서 유지된 비율은 1분위 42.2%, 2분위 36.9%, 3분위 30.2%, 4분위 31.8%, 5분위 62.7%로 나타났다. 2분위에서만 하락과 상승의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분위와 4분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60세 이상에서는 유지된 비율은 1분위 79.3%, 2분위 36.1%, 3분위 23.6%, 4분위 30.8%, 5분위 46.9%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2, 3, 4분위에서 하락한 비율이 상승한 비율보다 높았다. 특히 최하위분위의 소득이동이 고착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첫째로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하위분위로의 소득이동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수의 60세 이상 가구주가 1분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노동시장의 진입이 매우 활발한 20대의 경우 소득이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셋째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30대, 40대 50대의 가구주 그룹에서는 상위분위로 이동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40대의 경우 2007년 기준 5분위에서 유지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과 30대, 40대, 50대의 2007년 4분위 기준에서 상위단계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인접한 단계로의 소득이동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가구주 연령별 소득이동성 결과의 특징

중 하나이다.

<표 IX-17> 2007년도 소득분위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이동성 결과

단위(%)		2010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하락	유지	상승	하락	유지	상승	하락	유지	상승	하락	유지	상승	하락	유지	상승
2007	1분위	-	10.2	89.9	-	43.5	56.5	-	51.2	48.8	-	42.2	57.8	-	79.3	20.7
	2분위	10.7	35.5	53.7	15.9	40.4	43.7	15.6	42.4	42.1	18.8	36.9	44.3	43.9	36.1	20.0
	3분위	32.6	27.5	40.0	26.2	38.9	34.9	31.0	34.2	34.9	34.9	30.2	34.9	55.2	23.6	21.2
	4분위	51.4	30.4	18.1	40.2	41.0	18.8	33.2	42.2	24.6	38.4	31.8	29.7	57.4	30.8	11.8
	5분위	42.3	57.8	-	39.8	60.2	-	27.6	72.4	-	37.3	62.7	-	53.1	46.9	-

주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라. 가구소득분위 기준 자산 구조 변화

2007년 가구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한 동태적 자산구조의 변화 결과에서는,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여 1차년도와 비교를 위한 각 분위별 자산의 비중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동태적 분석을 한다. 전반적으로 시계열이 상당히 짧아 구성비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점차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가구소득분위 기준 동태적 자산 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모든 항목의 자산의 명목금액도 높았다. 즉, 금융자산의 비중은 5분위, 부동산자산은 2분위, 기타자산은 4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7기준 소득분위의 2008년 자산 구조에서는, 금융자산의 경우, 1분위 0.2%p 증가, 2분위 0.1%p 감소, 3분위 0.1%p 감소, 4분위 0.4%p 증가, 5분위 0.6%p 감소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4분위 1.6%p 감소, 5분위 1.4%p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금융자산의 변동은 대부분 기타자산 규모의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기준 소득분위의 2009년 자산 구조에서는, 금융자산의 경우, 1분위 0.5%p 감소, 2분위 0.4%p 증가, 3분위 0.2%p 증가, 4분위 0.4%p 증가, 5분위 0.6%p 감소를 보였으며, 부동산자산의 경우, 1분위 0.8%p 감소, 2분위 0.4%p 감소, 3분위 0.7%p 감소, 4분위 0.5%p 감소, 5분위 0.3%p 증가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2007년에 비해 높은 소득분위일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07기준 소득분위의 2010년 자산 구조에서는, 금융자산의 경우 1분위 0.9%p 감소, 2분위 1.8%p 증가, 3분위 1.0%p 증가, 4분위 3.5%p 증가, 5분위 0.4%p 증가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에서는 1분위 1.9%p 감소, 2분위 2.0%p 감소, 3분위 1.6%p 감소, 4분위 1.7%p 감소, 5분위 0.9%p 증가로 조사되었다. 상위 소득분위의 경우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비중의 증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2007년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들의 금융자산의 비중이 점차 증가한 반면에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항목별 자산의 명목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X-18> 2007년도 가구소득분위 기준 자산 구조 변화

단위 (만원, %)		2007				2008				2009				2010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	총자산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	총자산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	총자산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	총자산
2007	1분위	805.8 (8.8)	8307.0 (90.7)	41.1 (0.4)	9153.9 (100)	754.3 (9.0)	7560.7 (90.7)	21.8 (0.3)	8336.8 (100)	732.1 (8.3)	8056.5 (91.5)	16.7 (0.2)	8805.3 (100)	876.6 (9.7)	8058.7 (88.8)	138.9 (1.5)	9074.2 (100)
	2분위	1114.2 (8.6)	11782.0 (91.1)	33.7 (0.3)	12930.0 (100)	1093.1 (8.5)	11693.3 (91.1)	53.6 (0.4)	12840.0 (100)	1286.3 (9.0)	12932.4 (90.7)	39.6 (0.3)	14258.3 (100)	1610.8 (10.4)	13743.5 (89.1)	76.7 (0.5)	15430.9 (100)
	3분위	1505.7 (9.0)	15091.7 (90.5)	79.5 (0.5)	16676.9 (100)	1508.5 (8.9)	15310.1 (90.5)	103.9 (0.6)	16922.4 (100)	1593.3 (9.2)	15496.6 (89.8)	159.4 (0.9)	17249.3 (100)	1926.2 (10.0)	17044.0 (88.9)	196.4 (1.0)	19166.6 (100)
	4분위	2642.7 (11.9)	18993.2 (85.8)	488.5 (2.2)	22124.4 (100)	2719.0 (12.3)	19380.4 (87.4)	86.1 (0.4)	22185.6 (100)	3103.0 (13.0)	20666.1 (86.3)	172.9 (0.7)	23942.0 (100)	4014.2 (15.4)	21958.0 (84.1)	143.2 (0.5)	26115.3 (100)
	5분위	5439.0 (12.8)	36113.6 (85.2)	823.1 (1.9)	42375.6 (100)	5453.3 (12.2)	38534.9 (86.6)	530.5 (1.2)	44518.7 (100)	6127.1 (13.8)	37836.1 (85.5)	308.4 (0.7)	44271.6 (100)	6895.1 (13.2)	45127.7 (86.1)	384.1 (0.7)	52407.0 (100)
총계		2321.3 (11.1)	18349.2 (87.5)	294.5 (1.4)	20965.0 (100)	2336.0 (11.0)	18767.9 (88.2)	163.8 (0.8)	21267.7 (100)	2627.6 (11.8)	19581.4 (87.6)	140.7 (0.6)	22349.6 (100)	3143.0 (12.6)	21614.2 (86.6)	187.4 (0.8)	24944.6 (100)

주1: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2: 명목 금액임

참고 문헌

강성진,『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10.

강신욱·이병희·장수명·김민희, 『고용·복지·교육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안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2010-7, 2010.

김승래·임병인,『친환경 자동차세제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원, 2011. 11.

박찬용·강석훈·김태완,『소득분배와 빈곤의 동향 및 변화 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02-12, 2002.

방하남·황수경·김기헌·김지경·박시내·이상호,『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Ⅳ)』, 한국노동연구원, 2001.

보건복지부,『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보도자료, 2012. 6. 11자.

성명재,『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연구보고서 1-03, 한국조세연구원, 2011.

_____,『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7.

_____,『인구구조가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0.

송헌재,『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특성 분석』,『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 2012, pp. 97-133.

유경준,『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KDI 정책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92호), 2003.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연구보고서 2005-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재정패널조사, 『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8.

재정패널조사, 『2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

재정패널조사, 『3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0.

통계개발원, 『한국의 인구, 주택: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보고서』, 통계개발원, 200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2005.

_____, 『가계금융자산 보고서 2010』, 통계청, 2011.

Burniaux et 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1998, No. 189.

Shorrocks, A. F., "The Measurement of Mobility," *Econometrica*, Vol. 46, No. 5, 1978, pp. 1013-1024.